

발간등록번호

11-1420000-000384-10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기관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기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중소기업종합상담은 국번없이 ☎1357



목 차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12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21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25
1-1-③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9
1-1-④ 신성장기반자금	31
1-1-⑤ 재도약지원자금	36
1-1-⑥ 긴급경영안정자금	41
1-2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	45
1-3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47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50
1-5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Gobizkorea]	53
1-6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55
1-7 HIT500(중기제품 거래활성화)	57
1-8 글로벌협력지원	60
1-9 남북협력지원	62
1-10 외국전문인력 채용지원	64
1-1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67
1-12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73
1-13 R&D성공과제 사업화 지원사업	77
1-14 연수사업	80
1-15 청년창업사관학교	83
1-1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88

2장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92
2-2 사업조정제도	94
2-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98
2-4 기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102
2-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104
2-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107
2-7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	109
2-8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111
2-9 코업비즈(Coupbiz)	115
2-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117
2-11 중소기업 중요성 바로 알리기 사업	119
2-1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121
2-13 장년취업인턴제 사업	123
2-14 외국인력지원	125
2-15 해외동포(H-2) 고용 지원	128
2-16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130
2-17 중소기업 공제사업자금 지원	133
2-18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 운영	138
2-19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지원	141
2-20 중소기업 손해공제제도(파란우산공제)	143

3장 신용보증기금

3-1 신용보증	151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155
3-3 보증연계투자	157
3-4 유동화회사보증	160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65

3-6 매출채권보험	168
3-7 Job Cloud	172
3-8 창업지원제도	173

4장 기술보증기금

4-1 2015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76
4-2 기술보증	177
4-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180
4-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83
4-5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187
4-6 전자상거래보증	190
4-7 유동화회사보증	192
4-8 R&D 보증	195
4-9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200
4-10 지식재산(IP) 보증	203
4-11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207
4-12 문화산업완성보증	210
4-13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214
4-14 기술평가	218
4-15 벤처확인평가	222
4-16 이노비즈 인증평가	226
4-17 기술이전 및 M&A	230
4-18 녹색인증평가	233
4-19 보증연계투자	250
4-20 경영개선지원제도	253
4-21 재기지원보증제도	256

5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1 소상공인 사관학교	260
5-2 소상공인 창업교육	262
5-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264
5-4 소상공인방송	266
5-5 상권정보시스템	269
5-6 소상공인 경영교육	272
5-7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274
5-8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276
5-9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278
5-10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281
5-1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283
5-12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285
5-13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287
5-14 희망리턴패키지	289
5-15 재창업패키지	291
5-16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293
5-17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295
5-18 상권활성화 사업	298
5-19 시장경영혁신지원	301
5-2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304
5-21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306
5-22 소상공인창업자금	308
5-23 일반경영안정자금	310
5-24 소공인특화자금	312
5-25 긴급경영안정자금	314
5-26 전환대출자금	316
5-27 사업전환자금	318
5-28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320

6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325
6-2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328
6-3 시니어창업 특례보증	331
6-4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334
6-5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	337
6-6 성실실패자 재도전자원 특례보증	340
6-7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343
6-8 햇살론 신용보증	346

7장 기업은행

7-1 2015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356
7-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358
7-3 IP사업화자금대출	360
7-4 IBK창조기업대출	362
7-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364
7-6 기술형창업기업대출	366
7-7 IBK수출준비자금대출	368
7-8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369
7-9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371
7-10 IBK문화콘텐츠대출	372
7-11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375
7-12 IBK시설투자대출	377
7-13 토지분양협약대출	379

8장 한국산업은행

8-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382
-------------------	-----

9장 한국수출입은행

9-1 2015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410
9-2 수출초보기업 육성프로그램	411
9-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412
9-4 기술금융 프로그램	415
9-5 상생금융 프로그램 ①	417
9-6 상생금융 프로그램 ②	419
9-7 상생금융 프로그램 ③	421
9-8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424
9-9 수출금융① - 수출촉진자금	426
9-10 수출금융② - 수출성장자금	429
9-11 수출금융③ - 수출이행자금	431
9-12 해외투자금융	433
9-13 수입금융 - 수입자금	436
9-14 이행성보증	439
9-15 무역금융	441

10장 한국무역보험공사

10-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447
10-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450
10-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452
10-4 단기수출보험	453
10-5 중소중견Plus+보험	457
10-6 환변동보험	458
10-7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461
10-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462
10-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464

11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11-1 수출 애로 상담 센터	466
11-2 ICT-SW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	468
11-3 이동 KOTRA	470
11-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472
11-5 수출상담회	473
11-6 무역사절단	475
11-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477
11-8 세계 일류 한국상품전	479
11-9 해외 시장 조사	480
11-10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482
11-11 KOTRA Global Brand	484
11-12 대전국제농업기술전(TAMAS)	486
11-13 대전국제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TAMAS)	488
11-14 buyKOREA	490
11-15 수출첫걸음지원사업(Export Gateway)	492
11-16 지사화사업	494
11-17 월드챔프	495
11-18 세계 일류 상품 육성 사업	497
11-19 K-TECH	499
11-20 서비스 문두스(Service Mundus)	501
11-21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502
11-22 메디스타 이니셔티브(Medi-Star Initiative)	503
11-23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파트너링	504
11-24 마·EU 정부 조달 선도기업 육성	505
11-25 국제기구 조달 선도기업 육성	506
11-26 Global Partnering	507
11-27 해외 시장 설명회	508
11-28 Trade Doctor	510

11-29	열린무역관	512
11-30	수출인큐베이터	514
11-31	해외 IT 지원 센터	516
11-32	자동차부품 공동 사무소	518
11-33	공동 물류 지원	520
11-34	해외 투자 진출 상담	522
11-35	투자 진출 기업 현지 지원	524
11-36	해외 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525
11-37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526
11-38	국내복귀기업 지원	528
11-39	글로벌 M&A 지원	530

12장 한국무역협회

12-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533
12-2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534
12-3	TradeSOS 해외마케팅 자문	535
12-4	TradeSOS 통번역 지원 서비스	537
12-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539
12-6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541
12-7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543
12-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545
12-9	Kmall24를 통한 B2C해외직판 지원사업	547
12-10	K+(K plus) 인증 제도	550
12-11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553
12-12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ABTC) 발급	555
12-13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558
12-14	무역기금 융자	560
12-15	특허청 공동 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	562
12-16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565

13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1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568
13-2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570
13-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573
13-4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576

14장 대한상공회의소

14-1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580
14-2 중소기업경영자문단	584
14-3 원스탑경영상담센터	586
14-4 제조물책임보험(PL) 중소기업 지원	588

15장 대한상사중재원

15-1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제도, 중재	591
15-2 중재조항 작성 지원	594
15-3 분쟁해결 무료알선	596
15-4 분쟁예방을 위한 무료상담	598
15-5 분쟁예방을 위한 무료교육	600

중소기업청



01

중소기업진흥공단

-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12
 -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 21
 -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25
 - 1-1-③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29
 - 1-1-④ 신성장기반자금 / 31
 - 1-1-⑤ 재도약지원자금 / 36
 - 1-1-⑥ 긴급경영안정자금 / 41
- 1-2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 / 45
- 1-3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47
-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50
- 1-5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Gobizkorea) / 53
- 1-6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 55
- 1-7 HIT500(중기제품 거래활성화) / 57
- 1-8 글로벌협력지원 / 60
- 1-9 남북협력지원 / 62
- 1-10 외국전문인력 채용지원 / 64
- 1-1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67
- 1-12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 73
- 1-13 R&D성공과제 사업화 지원사업 / 77
- 1-14 연수사업 / 80
- 1-15 청년창업사관학교 / 83
- 1-1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88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용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우선 지원
 -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기업당 용자한도 45억원까지(비수도권은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 공지
 -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일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일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 * 금리우대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지금은 적용제외
- * 시설자금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가능

용자 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로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을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 절차

- ①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www.sbc.or.kr) 자금신청
 - 용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 용자신청 내용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하며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정식 접수

〈사전상담 필수기업〉

청년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자

〈건강진단신청서 및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용자상환금조정형),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별 용자신청서 제출〉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 지역분(지)부장은 온라인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②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 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반영비중을 최소화
 -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③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 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결정
- ④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융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 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상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가 1,000억원 초과인 기업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함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개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용자제의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⑨ 용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⑩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⑪ 용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 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접수 시기

- (정기 접수) 1회차는 2015. 1. 5(월)부터 접수, 2회차 이후(3월, 5월, 7월, 9월, 11월)부터는 매 격월별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 재창업자금 중 용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2월, 4월, 6월, 8월, 10월)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질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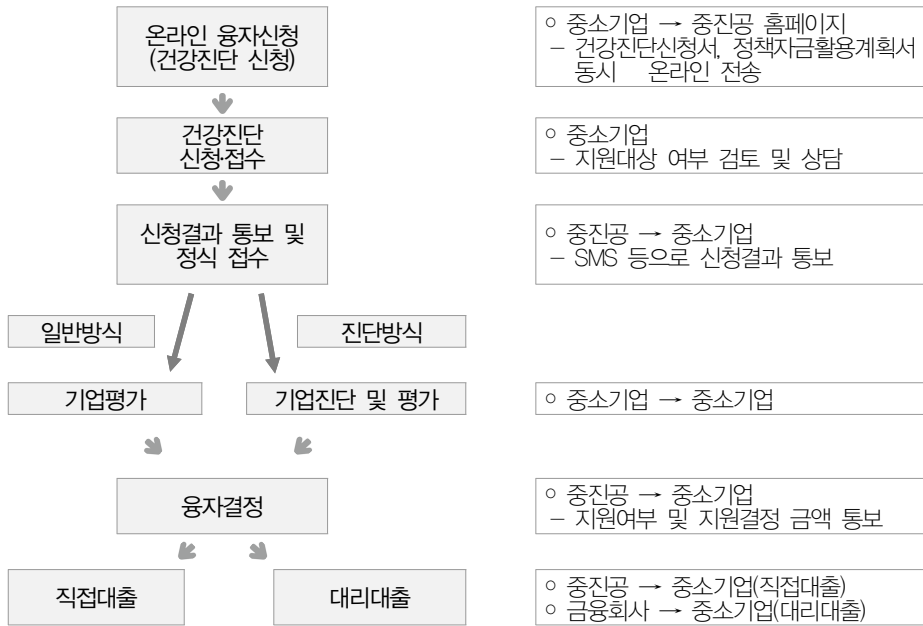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 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점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목동)	02) 6678-4127	경북(구미시)	054) 476-9340
서울동남부(서초구)	02) 2156-2200	경북동부(포항시)	054) 223-2059
서울북부(여의도)	02) 769-6436	경북남부(경산시)	053) 212-3300
인천(연수구)	032) 450-0500	강원(춘천시)	033) 259-7600
인천서부(서구)	032) 450-0560	강원영동(강릉시)	033) 655-8870
경기(수원시)	031) 259-7900	광주(광주시)	062) 600-3000
경기동부(성남시)	031) 628-6888	전남(무안군)	061) 280-8000
경기서부(시흥시)	031) 496-1081	전남동부(순천시)	061) 724-1045
경기북부(고양시)	031) 920-6700	부산(사상구)	051) 630-7400
대전(대전시)	042) 8660-114	부산동부(해운대구)	051) 712-9670
충남(천안시)	041) 621-3687	울산(울산시)	052) 703-1100
충북(청주시)	043) 230-6800	경남(창원시)	055) 212-1350
충북북부(충주시)	043) 841-3600	경남동부(김해시)	055) 310-6600
전북(전주시)	063) 210-9900	경남서부(진주시)	055) 756-3060
전북서부(군산시)	063) 460-9800	제주(제주시)	064) 751-2070
대구(대구시)	053) 601-5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세종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정책자금 공통 용어설명

- (용자잔액)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 (대위변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 (대지급)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자금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 (화의)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 (기업회생신청)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 (청산절차)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 (용자제한 부채비율)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서 최근연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 (거치기간)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용자 규모 1조 3,000억원

- * 2013년 신청기업 9,272개사 중 5,65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원
- * 2014년 11월말 신청기업 9,608개사 중 6,04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이내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용자 방식

-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용자상환금 조정형)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정기 접수) 1회차는 2015. 1. 5(월)부터 접수, 2회차 이후(3월, 5월, 7월, 9월, 11월)부터는 매 격월별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 재창업자금 중 용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2월, 4월, 6월, 8월, 10월)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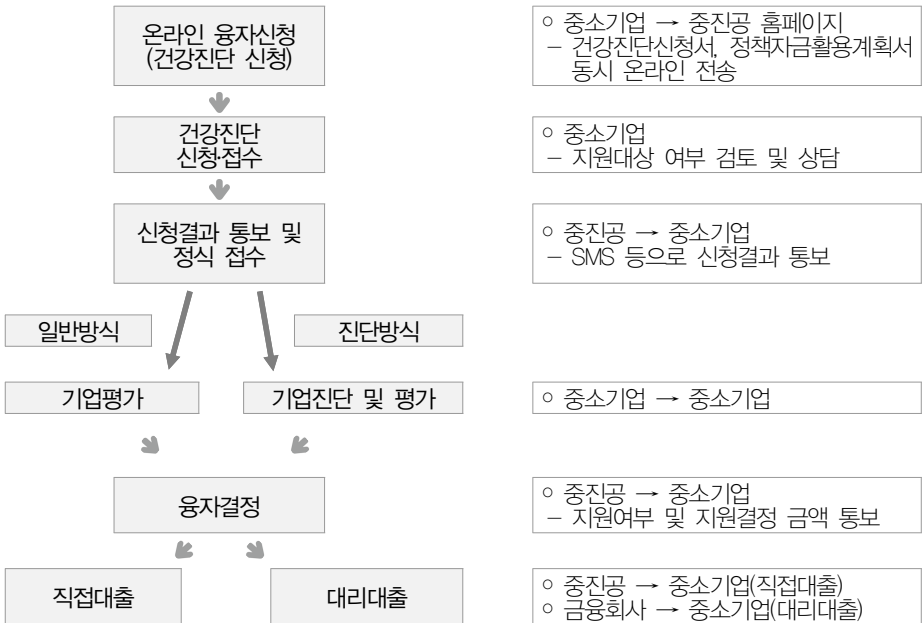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1,000억원

- 이익공유형 대출
 - 2013년 신청기업 637개사 중 57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 2014년 신청기업 755개사 중 56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0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2013년 신청기업 80개사 중 5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8.0억원
 - 2014년 신청기업 93개사 중 4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7억원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2014년 신청 프로젝트 21개 중 9개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5억원

지원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이익공유형 대출)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즉 고정금리로 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로 이익연동이자를 후취(단,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 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

구 분	내용	비고
고 정 이 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금리에서 2%p를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이 익 연 동 이 자	영업이익 × 3% (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 이자 면제)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회차를 부과(다만, 이익연동이자는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성장공유형 대출)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
-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PO)가능성 정도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원금상환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만기보장금리 4%로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PB)를 중진공이 인수
-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프로젝트 별로 협의

● **대출기간**

- 이익공유형 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 대출: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단,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대출)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프로젝트 당 10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후 온라인신청(수시 접수)
-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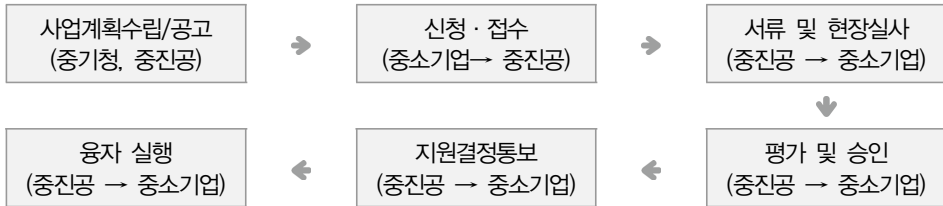
- 향후 지원기업의 성장가능성, 영업이익 발생 및 추정금액 등을 심사 및 평가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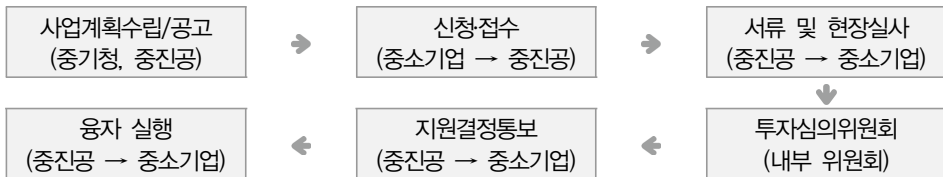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처리 절차

- 이익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및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55-751-9583~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 중기맨

- 투융자복합금융은 임의상환이 가능한가요?
 - ☞ 임의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임의상환을 허용할 경우 기업성장 시점에 임의상환으로 “성장가치의 공유”가 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익공유형 대출의 이익연동이자는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요?
 - ☞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기 때문에 원금상환 종료 다음년도에 마지막 이익연동이자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14년 대출업체의 경우 ‘20년에 ‘19년 재무제표에 의해 납부금액이 결정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장공유형 대출의 표면금리와 만기보장금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표면금리(1%, 단리)는 대출기간 중 이자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금리이며, 만기보장금리(4%, 복리)는 중진공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되는 이자(상환 할증금, 기 수령한 1%표면금리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용어설명

-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1-1-③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시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3,000억원

- * 2013년 신청기업 1,705개사 중 1,33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5억원
- * 2014년 신청기업 1,863개사 중 1,48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4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1-1-④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용자 규모 10,270억원

- * 2013년 신청기업 2,655개사 중 1,98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4.7억원
- * 2014년 11월말 신청기업 2,034개사 중 1,64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2억원

지원 대상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 전용자금,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기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중소기업

* 기초소재형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가공조립형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업력 4년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11~'1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 * 단,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성장기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제외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확보자금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30% 이내)
 - *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품 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 시설자금(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
 -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운전자금 2억원)
 - * 가젤형기업 전용자금 : 기업당 7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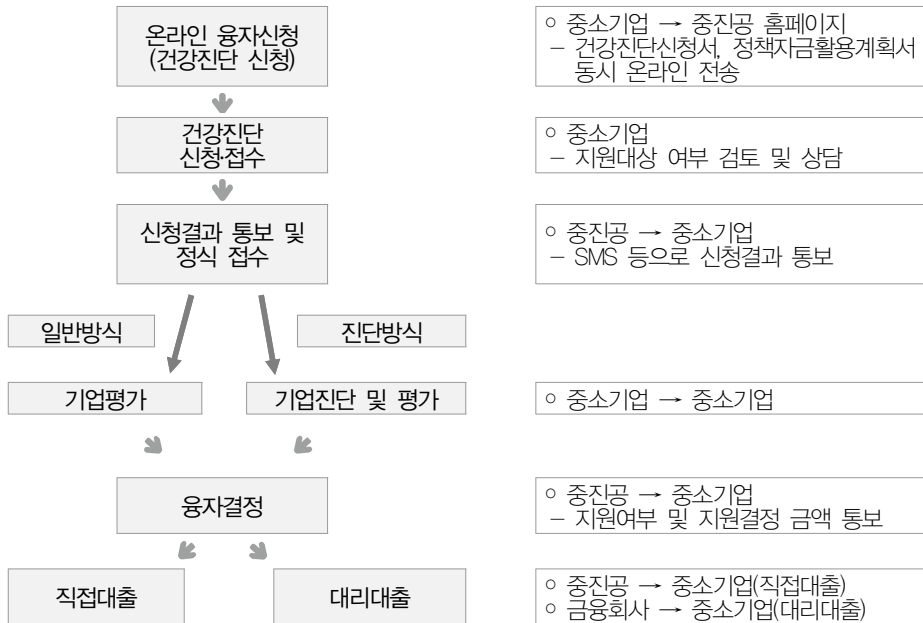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정기 접수) 1회차는 2015. 1. 5(월)부터 접수, 2회차 이후(3월, 5월, 7월, 9월, 11월)부터는 매 격월별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2월, 4월, 6월, 8월, 10월)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절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절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1-⑤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 · 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용자 규모 1,990억원

- * 2013년 신청기업 385개사 중 35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4.8억원
- * 2014년 11월말 신청기업 392개사 중 35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4.8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 (사업전환자금)
 - ①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현재 영위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며, 사업전환의 대상일 것
 -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① 국세 및 지방세 미납기업이 아닐 것 ② 무역조정지원기업 부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만 경과기업이 아닐 것 ③ 휴 · 폐업중인 기업이 아닐 것
- (재창업자금)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① 중기청 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자(기업)
-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 단,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은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⑥항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 ③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업당 10억원 이내(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 : 직접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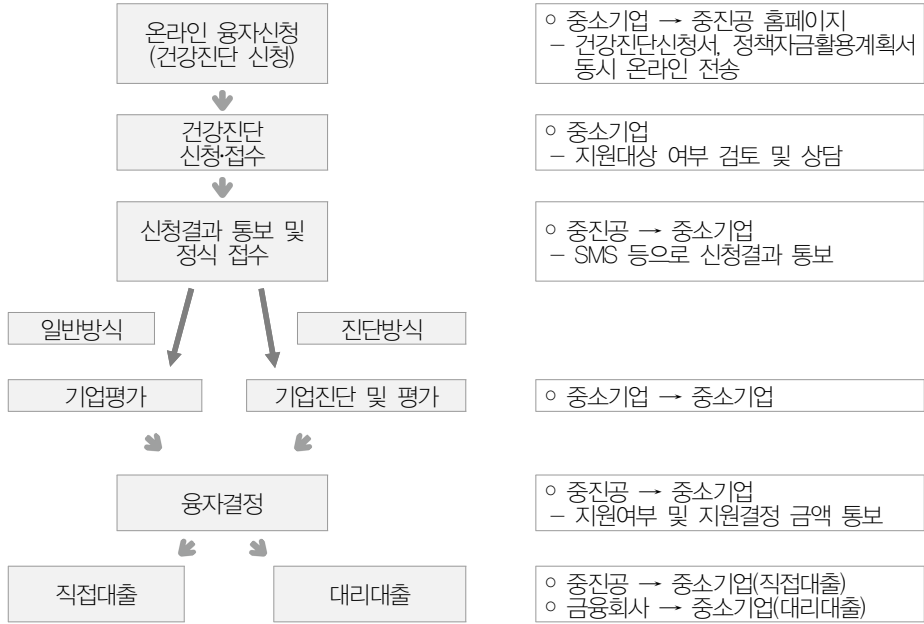
-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정기 접수) 1회차는 2015. 1. 5(월)부터 접수, 2회차 이후(3월, 5월, 7월, 9월, 11월)부터는 매 격월별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2월, 4월, 6월, 8월, 10월)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 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절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1-⑥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수출품 생산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용자 규모 1,000억원

- * 2013년 신청기업 1,178개사 중 1,06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0억원
- * 2014년 11월말 신청기업 536개사 중 49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1억원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 지원 제외(단, 해외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용자 범위

구 분	내 용
긴급경영안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p>*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용자제한기업(세금체납,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정보가 등록된 기업,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적용에서 제외(단,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정보가 등록된 기업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용자제한)</p>
<p>수출금융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응자 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한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기업 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정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 수출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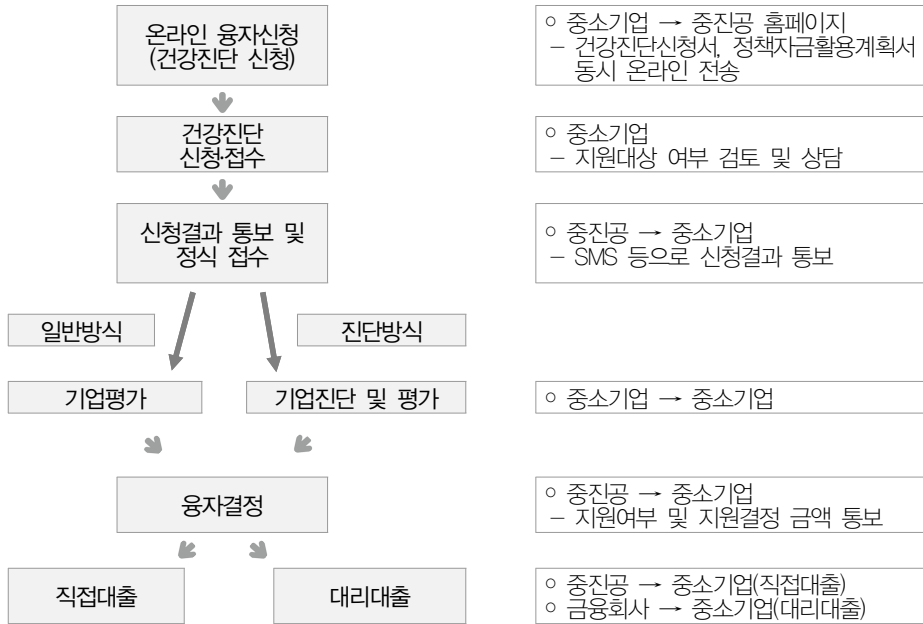
-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정기 접수) 1회차는 2015. 1. 5(월)부터 접수, 2회차 이후(3월, 5월, 7월, 9월, 11월)부터는 매 격월별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2월, 4월, 6월, 8월, 10월)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철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 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절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2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

| 진단 → 처방 → 치료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업종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기업애로)을 분석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위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4,0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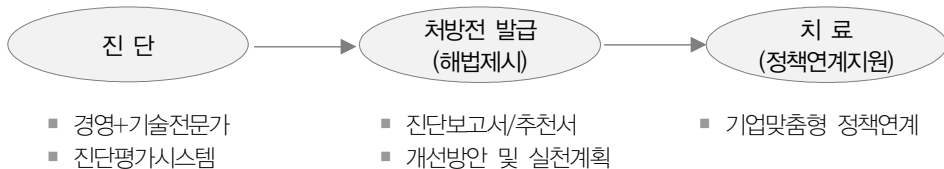
* '14년 지원현황 : 4,082건 지원(11.30기준)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치형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용정보관리 규약상 연체·부도 등으로 신용거래정보에 등록된 기업

지원 내용

• 진단 및 처방

- 업종전문가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기업현장 방문, 외부 경영환경과 기업 내부능력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치료를 위한 사업연계 추천서를 발급

● 정책연계지원을 통한 치료

- 사업연계 추천서에 의해 정책자금 융자, 연수, 수출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정책을 해당 기업에 맞추어 연계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건강진단 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서 양식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각종 서식에 게재

처리 절차

구 분	내 용
신청	· 건강진단 신청서 접수(기업현황표, 정보제공동의서 등 포함) · 애로 분야 파악
진단평가	· 업체방문/실태조사 · 정책자금 지원 필요시 기업평가등급 산출
처방	· 진단평가 결과통보(보고서 송부/프레젠테이션) · 사업연계 추천서 발급(중진공 내부사업) · 타기관 사업은 사업정보 제공 · 연계지원 안내 및 상담
치료	· 연계지원 실시 ①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 소요금액 사정 후 대출실시 ② 자금이외 사업 - 사업별 신청, 심사 - 사업연계지원 ③ 타기관 사업 : 정보제공 및 안내
사후관리	· 고객만족도 조사 · 지속적인 성장 관리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진단처 : 055-751-9525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1-3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해외전시회(32회), 무역사절단(123회), 수출상담회(6회), 지역 특화사업(18회) 등

*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지원 대상 각 지자체 관내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해외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 개최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 및 편도 항공료 등 지원
무역사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 구성 및 파견 •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수출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무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산업별 · 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각 사업에 따라 추진비용 일부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기타 수출 관련 증빙자료

처리 절차



주1) 카탈로그 수집송부, 항공예약, 출장자확정,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주2)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원 배정 등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4, 9718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사업 신청 및 일정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bc.or.kr



궁금해요! 중기맨

-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해외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통역비, 편도 운송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되며, 무역사절단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해외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됩니다.



용어설명

- 사후관리 해외마케팅지원사업(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진공이 수행하는 타사업(정책자금, 컨설팅, 연수 등)으로 연계함으로써 해외마케팅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세계 12개국 20개 지역 276개 입주실 및 수출사랑방 운영

지원 대상 제조업(전업률 30%)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 * 제출처 : (우) 660-03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 심사·평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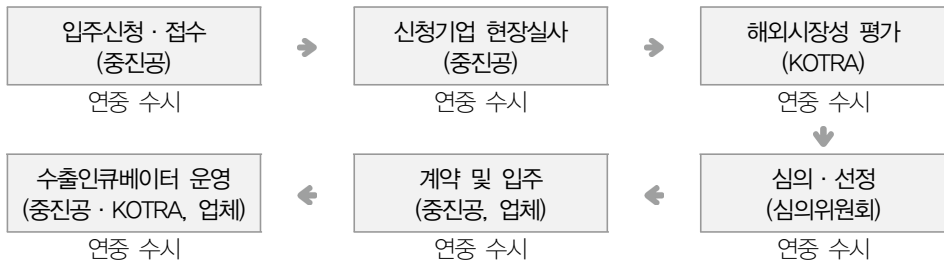
- 경영평가(20%), 제품의 시장성(30%), 현지진출지원 인프라 구축(35%), 수출인큐베이터 지원효과(15%)

- * 수출유망중소기업, 혁신형 기업(Inno-Biz, 벤처기업 등) 등은 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파견자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6, 9719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www.sbc-kbdc.com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출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나요?
 - ☞ 수출사랑방은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PC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 입주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입주 후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연장승인여부를 검토합니다.



용어설명

- 수출사랑방 중소기업자가 수출상담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내에 단기간 출장하는 경우, 세계 12개국 20개소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동 사무공간을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1-5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Gobizkorea)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마케팅비용 및 노하우 부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부터 홍보마케팅, 해외 구매오피 발굴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도와 드립니다.

지원 규모 2,200개사(전체 예산 28.94억원)

* '14년 지원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120개사, 검색엔진마케팅 80개사, 글로벌 홍보 마케팅 1,235개사, 온라인수출관 800개사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받은 기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글로벌 홍보 마케팅	• 영문 e-상품페이지 제작 및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제품 해외홍보 지원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대응, 무역상담 등 후속관리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택일)
검색마케팅	• 지원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글, 야후 등 해외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사이트 최적화 및 홍보 지원
온라인수출관(7개권역)	• 운영권역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 현지어 기반의 상품페이지, 거래제약서 제작 등 해외 구매오피 발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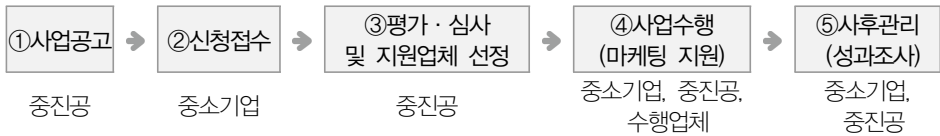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수출관 운영권역 확대(6개 권역 → 7개 권역)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gobizkorea.or.kr) 신청 게시판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www.gobizkorea.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2-769-6443



궁금해요! 중기맨

- 별도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기업부담금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22만원, 검색엔진마케팅 100만원이며,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온라인수출관 지원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용어설명

- 검색엔진마케팅 중소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가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Google, Yahoo 등 글로벌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일정기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이트 분석, 키워드 선정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1-6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 해외바이어에 대한 맞춤형 국내업체 알선 및 수출지원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를 접수받아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중소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사업으로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전문가가 알선 이후에도 해외바이어와 알선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 성사율을 높이고 있는 바이어 맞춤 서비스입니다.

지원 규모 2,000건 내외(전체 예산 8.35억원)

* '14년 지원현황 : 해외바이어알선지원 1,908건, 방한바이어 지원 130건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바이어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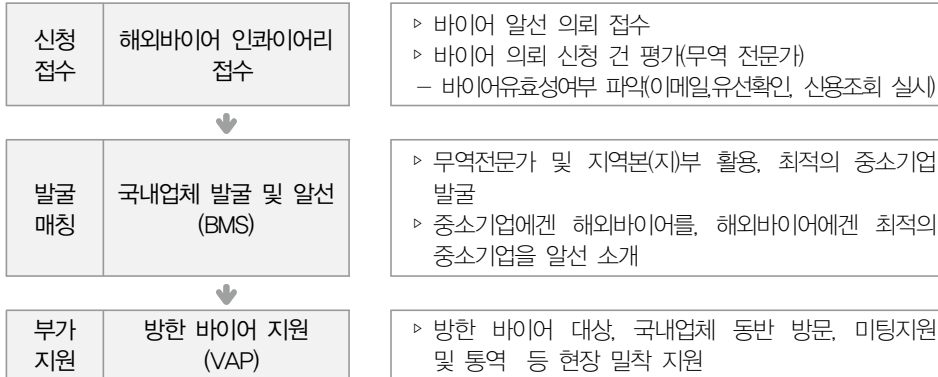
- 해외바이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 알선(BMS) 및 방한바이어 지원(VAP)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신 청
바이어알선 지원 (BMS)	•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및 검수 • 최적의 중소기업 발굴 및 매칭	해외바이어
방한바이어 지원 (VAP)	• 업체 동방방문 및 미팅 스케줄 조정, 미팅지원 • PT 대행 및 통역지원, 무역상담 등 정보제공	국내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2-769-6443
-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팀 : 02-3667-7997



궁금해요! 중기맨

-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는 것에 대한 기업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방한바이어 지원(VAP)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은 후 그 이후 발생하게 되는 바이어와의 거래진행사항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방한바이어 지원(VAP)사업은 바이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에서부터 방한 이후 수출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줍니다.
- 지원자격이 있나요?
☞ 해외바이어를 개별적으로 국내에 초청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통역이나 무역상담지원만 필요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 해외바이어 알선(BMS : Business Matching Service) 해외 바이어의 인콰이어리를 받아 최적의 국내업체 발굴하여 알선
- 방한바이어 지원(VAP : Visitor Assistance Program) 해외바이어가 중소기업 업체방문을 위하여 방한하는 경우 업체동반방문, 통역 등을 지원하여 사후관리 지원

1-7

HIT500(중기제품 거래활성화)

| 창업초기 아이디어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홍보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홍보에서 판로지원까지 제품의 원활한 내수시장 진입을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300개 제품 내외 (전체 예산 3.30억원)

* '14년 지원현황 : 선정지원 제품수 327개 제품 마케팅 홍보 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 <소비재 시제품 이상을 보유(생산)한 기업>

| 지원자격 |

- 3년 미만 창업기업(사업자 등록증상 설립년월일 기준)
- 새롭게 출시한 소비재 완성품을 보유(생산)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등

| 우선선정 |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사관학교” 선정 또는 졸업 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 홍보 전시장, 소비자평가단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HIT500 PLAZA 등) HIT500 웹사이트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Tool 제공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지원비율)	내용	정부지원한도
Step1 온라인 홍보전시장	• 온라인 홍보 전시장 구성 + HIT500사이트 내 제품홍보페이지 제작 및 등록	무상 지원
Step2 온라인 입소문 마케팅지원	• 소비자(사이트 회원) 제품평가 및 온라인 홍보 • 홍보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이트 회원 대상)	선정제품 모두 지원
	• 무료제품 체험단 운영 (소비자 직접체험) • SNS 연계 홍보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이벤트 등)	체험단 신청 제품
Step3 제품 판로지원	• 판로 확보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지원 * 목동 행복한백화점 4층매장 HIT500PLAZA 입점 *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기획관 입점 • 유통사 MD 마케팅 · 판로 코칭 (유통사 선정 제품) 연계	참여제품중 전문가평가단 선정 우수 제품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HIT500 선발 회수 변경

기 존		→	변 경	
상반기/하반기 선정	총 4 회	→	상반기 선정	총 3 회

신청·접수 '15. 3. 1 ~ 6. 30(3회차 매회 100개 상품 선정)

- HIT500 홈페이지(www.hit500.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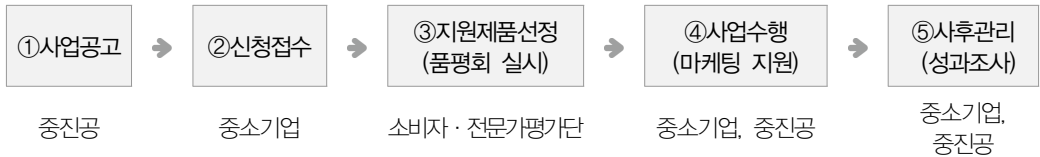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1단계) 소비자평가단 선호도조사, (2단계) 유통전문가상품성평가, (3단계) 제품 실물 품평회

제출 서류

온라인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 신청양식은 HIT500 홈페이지(www.hit500.or.kr) 신청계시판에 게재된 온라인 사업신청 양식 참조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55-751-9753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HIT500 사이트(www.hit500.or.kr)

**궁금해요! 증기맨**

- HIT500 신청방법과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증기제품HIT500 (www.hit500.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HIT500 하위메뉴 중 HIT500 신청계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유통사 MD) 온라인평가 및 제품 실물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평가단이 쉽게 제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시 제품 이미지, 설명, 장점 등을 자세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IT500 선정 후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HIT500은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참여업체의 활동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되는 쌍방향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HIT500사이트에 제품홍보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사이트 회원들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품 체험단, HIT500PLAZA 입점, 각종 타 사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신청(증기제품홍보지원, 마케팅 판로 코칭, Gobizkorea 상품 등록) 등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더 큰 마케팅·홍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1-8 글로벌협력지원

| 해외진출 및 현지화 지원, 기업간 산업협력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해외진출지원, 기업간 산업협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국제협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정부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에 해외 산업정보 제공, 합작투자 및 기술 협력 등 산업협력 지원 - 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협력 등)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지원(진출일정, 법인설립, 법률·세무·회계 등) - 현지 진출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및 연수 지원 - 해외 산업기술정보 발굴 및 제공 등
기업간 산업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무역희망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및 방한 지원, 투자 무역환경 세미나 개최 등 • 한·이태리 산업협력사업, 한·스페인 기술협력사업등을 통해 산업기술협력관을 초청하여 기업간 비즈니스 지원, 진출희망국에 대한 상담지원 * 중진공 상주 산업기술협력관 : 스페인 산업기술센터(CDTI, Jordi Espulga Bach),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ITCCK, Roberto Martorana)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상담회, 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APEC 회원국으로의 진출 및 글로벌화 기반 구축 도모 - 비즈니스 상담회 : 년 1회 개최, 수출유망 중소기업 10여개사 대상(행사사업비, 통역, 홍보자료 제작 등 지원) - 혁신 컨설팅 : 신흥국 중소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 사절단,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sbc.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기술협력관, 코리아데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글로벌사업처로 문의

지원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33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홈페이지 참조)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중진공 상주 산업기술협력관과 개별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별상담은 산업기술협력관 담당자(스페인, 이태리: 055-751-9735)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즈니스 매칭,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용어설명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 APEC 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 지원을 위해 중진공 글로벌사업처 내 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로서, APEC 역내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해외업체와의 상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음

1-9 남북협력지원

| 북한 진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 지원

북한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현지 기업의 컨설팅, 주재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 컨설팅 : 10개사, 50백만원
- 교육 및 워크숍 : 20명, 30백만원
-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 : 각 1회, 20백만원

지원 대상

 개성공단 입주 가동기업

- '14.11월 말 현재, 125개사
- '10.5.24 조치로 인하여 신규 대북 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 북한에 기 진출한 개성공단 입주 가동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남북 관계 호전시 지원 대상 확대 예상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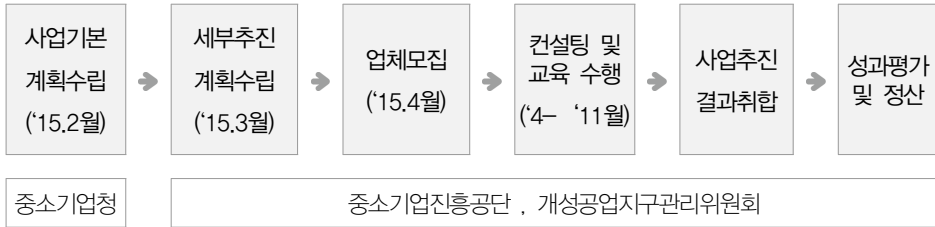
- 개성 공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생산성향상 컨설팅 수행(10개사)
기업당 10일, 컨설팅비용 90% 지원(450만원 한도)
- 경영 관리 분야의 전문 강사를 현지 파견하여 주재원 교육 실시(총 10회, 무료)
- 개성공단의 현안공유, 발전과제 토론 등 개성 법인장 워크숍 개최(연 1회)
- 개성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개성공단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포

신청·접수 '15. 4. 1 ~ 7. 1

- 신청방법 : 수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남측 소재) 혹은 협력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개성현지 소재)에 신청서 제출(방문 혹은 팩스)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기업현황자료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남북협력팀 : 055-751-9742

1-10

외국전문인력 채용지원

| 외국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사증추천 및 인건비 지원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해외우수 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전문인력난 해소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

지원 규모 120명 (전체 예산 25.7억원)

* '14년 지원현황 : 외국전문인력 100명 채용지원(미확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해당 외국전문인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갠블링 및 베탱업, 무도장 운영업

** E-3(연구), F-4(재외동포), E-7(특정활동)사증 직종(중진공 추천가능) 외국전문인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업 및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및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채용한 외국전문인력을 지원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한 기업
- 보조금 반환 미이행 또는 진행 중인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지원 내용

- 외국전문인력을 국내에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증추천, 인건비 지원, 국내적응 연수 실시
 - 도입인력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학 ·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대학(원)의 기술 및 경영분야 학위취득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박사학위자 및 석사학위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보유자 • 비학위자는 5년이상 해당기술분야 경력보유자
체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3(연구), F-4(재외동포), E-7(특정활동) 사증소지자 * 관리자, 전문가, 공학기술자(기능원 제외), 개발자, 연구원, 디자이너 등

-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이력검증 실시
- 지원내용 및 한도 (업체당 연간 100백만원 이내, 인원수 제한은 없음)

구 분	내 용
인건비	• 1인당 연간 40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의 50%까지
사증 추천	• E-7(특정활동)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국내적응연수	• 외국전문인력 국내적응 연수프로그램

신청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별도 첨부 증빙자료는 현장 실태조사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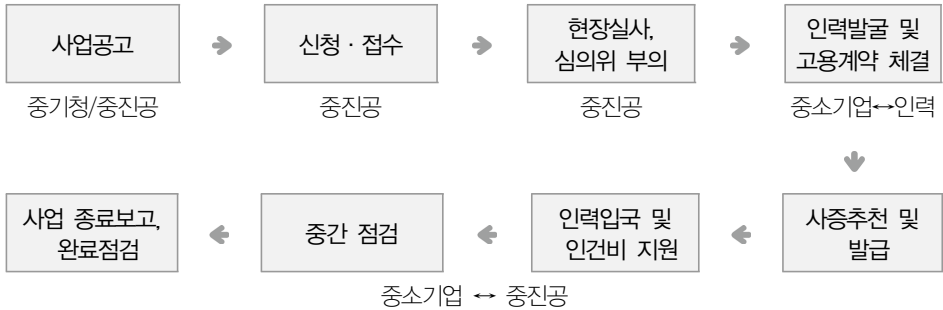
| 심사 · 평가내용 |

- 기술성, 시장성, 채용타당성, 기대성과 심사
- 석사학위 이상, 연봉 50백만원 이상, 재외동포 및 국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채용기업 우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외국전문인력이 활용될 프로젝트 요약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482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23



궁금해요! 중기맨

- 외국전문인력 국내 적응연수는 무조건 참가를 해야 하나요?
 ※ 인건비(보조금) 지원을 받으신 업체는 필수참가입니다. 단, 국내 체류 5년 이상인 외
 국전문인력은 적응연수 참가 제외입니다.

1-1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국내외 전문가 지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가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435개사(전체 예산 60억원)

- 진단연계형(400개, 54억원), 해외전문가(15개, 3억원), 융합(20개, 3억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14년 지원현황 : 533개 기업(진단 연계형 494개, 해외전문가 16개, 융합 23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분		지원 대상
진단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업종 제한 없음 •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 중 “컨설팅”을 처방 받은 기업
특화형	해외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제한 없음 • 제조업, 기술 분야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제한 없음 • 뿌리 및 부품·소재산업 영위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2년내 정부R&D과제 성공판정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의 30~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정부지원금)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진단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술 전 분야 • 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 전략, 사업연속성계획(재난대응), 환경경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 • 총 사업비의 30 ~ 50% 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특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핵심 기술 분야 • 제품설계 및 해석, 신기술(제품) 개발, 신공법도입, 원가·품질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기술분야, 업력 제한 무 • 총 사업비의 30 ~ 50% 한도 • 자문료,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간 융합 분야 • 新사업 및 상품기획, 제품기능 및 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 해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 부품·소재산업 영위 기업, 업력 제한 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2년내 정부 R&D과제 성공판정 받은 기업 • 총 사업비의 30 ~ 50% 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진단연계형 선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요기간 단축
 - * 중소기업 및 컨설턴트 추천을 진단(처방) 및 적합성평가위원회로 기능·절차 통합

기 존('14)	변 경('15)
진단(처방) → 「추천 & 적합성평가」 → 선정	진단(처방) → 적합성 평가 → 선정

신청·접수 '15.2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진단연계형) 건강진단 결과, 처방전에 부합하는 컨설팅 과제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컨설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특화형) 컨설팅 과제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의지·능력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출 서류

- 컨설팅사업 참여신청서, 수행계획서(컨설팅사·해외전문가와 공동작성)
- 제출방법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 온라인 제출

처리 절차

- 진단연계형 컨설팅





•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 특화형 융합 컨설팅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3, 8909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2, 9846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con.go.kr) 「2015년 지원시책」 참조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smbacon.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협약 이후 회사 경영사정으로 컨설팅과제 추진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단, 컨설팅 기간은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현재 수요자선택형 과제를 수행중인데, 진단연계형 또는 특화형 컨설팅 과제에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당해연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익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1-12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 해당 산업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개발기술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전체 예산 35억원 (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 공정개선, 마케팅 등 수행계획서에 사업화 컨설팅 추진 계획 및 소요비용 명확히 제시 (선정 및 최종평가 반영, 최종평가 시 보고서 제출)

자전거 분야	해양레저장비 분야
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해양레저장비 전 분야

지원 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 주관기관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제33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정보공개 → 중소기업범위해설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같음
 -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정부보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 기간 : 2년 이내
- 지원 한도
 -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 해양에너지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지원 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 (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보조금 지원 비율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이내
단독기술개발	총사업비의 1/2 이내

- 정액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10%
 - 징수기간 : 5년 이내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leisure.sbc.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제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창업기술처
 -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과제명, 접수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평가지표 및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평가 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 및 디자인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및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사업화 연계 계획의 명확성(사업화 컨설팅 추진 계획 포함)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 미달에 의한 “지원제외”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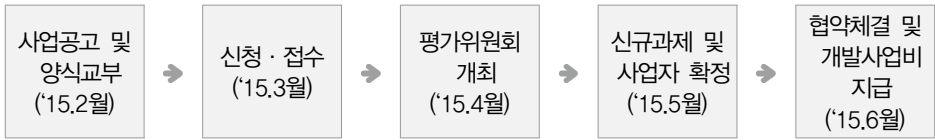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주관기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비영리기관 제외)

- 기업(개인)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비영리기관 제외)
- 공장등록증 사본, 감사보고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납세 증명서는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처리 절차



*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5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http://leisure.sbc.or.kr>



궁금해요! 중기맨

-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영위 기업도 신청·접수 가능한가요?
 ☞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체,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해야 함).
- 현재 관련분야에서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데 신청·접수 가능한가요?
 ☞ 개발이 완료된 것만 아니라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신기술·신제품·신뢰성인증·우수디자인상품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이 우대조건에 해당합니다.
- 신청·접수 시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 전산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전산 등록기간에 전산접수한 후 신청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R&D성공과제 사업화 지원사업

| 기술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의 R&D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진단, 사업화기획 및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화 추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사(전체 예산 19.23억원)

-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 100개
- 사업화기획 지원 : 50개
- 제품화 지원 : 30개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 및 기업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15년 신규 추진 사업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정부 R&D지원 완료 후 성공판정 받은 기업
- 자체 개발한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성공판정 및 특허등록 후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화 완료된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서 기술완성도,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화역량 등의 심층진단
- 마케팅 시스템, 사업화 추진 로드맵 및 연계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화기획 보고서
-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 중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내역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5천만원 한도)

구 분	지 원 내 용	정부지원한도
제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시제품의 성능평가, 품질평가, 신뢰성평가 ▪ (인증) 시제품의 인증 (국내, 해외), 공인인증기관 성적서 발급 ▪ (컨설팅)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 (디자인) 제품 디자인, 디자인 개선·보완 ▪ (시제품제작) 시제품 디자인개발, 출시제품(고객요구제품) 	5,000만원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자료제작) 상품디자인, CI/BI개발, 영문 디렉토리 ▪ (홍보) 홈페이지, 모바일, 검색엔진 등 지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 (교육) 마케팅코칭(유통망진출, 디자인향상), 글로벌마케팅 교육 ▪ (글로벌) 해외 대형 유통망 연계지원, 글로벌 바이어 구매알선 	5,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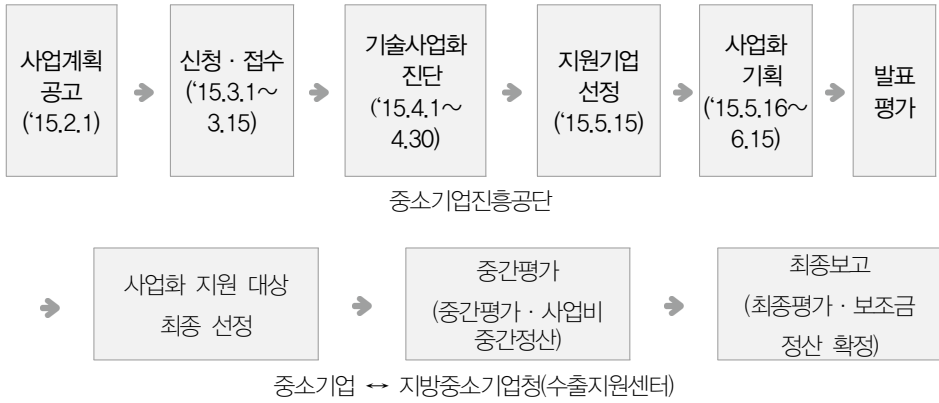
신청·접수 '15. 3. 1 ~ 3. 15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2

1-14 연수사업

| 중소기업 CEO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CEO 및 경영·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실무 적용능력의 배양 및 신경영 기법, 신기술 습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술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5,515명(직무역량향상·온라인·정책연수인원), 265개사(맞춤 연수 지원 업체수)

연수신청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종사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연수 내용

-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수과정 운영(정책연수)
 - 정책자금, R&D, 인력, 수출마케팅 등 중기 지원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실무연수과정 및 취업연계 과정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연수, 중국주재원 역량강화 연수 등
- 8,400여명의 풍부한 강사진과 총 388개의 다양한 직무역량향상연수과정 개설
-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운영(맞춤연수)
-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 실시(현장맞춤형연수)
- 수요자들의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터넷·모바일연수과정 제공(원격연수)

연수 과정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Off line	직 무 역 량 향 상 연 수	○ 최고경영자분야	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 창의인재양성분야	창의력향상(융합),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기혁신	
		○ 생산품질분야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관리, 품질관리, 국제인증	
		기 술 연 수	○ 생산기술분야	기계, CAD, 유공압, 메카트로닉스, 플라스틱
			○ 뿌리기술분야	주조·단조·열처리·도금·금형·용접
	○ 스마트융합분야		전기전자, IT, PLC/제어	
	맞 춤 연 수	○ 문제해결형	개별기업의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국제연수		
On line	원격 연수	○ 인터넷연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는 연수,	
		○ 모바일연수	오프라인 연수와 결합한 혼합형(Blended) 연수	

제출 서류

연수신청서(훈련위탁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기업할인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본)

연수비

- 소기업, 신규연수과정 등 연수비 20~50% 감면 실시
 - * 신규연수과정은 2015년 신규로 개설된 연수과정(원격연수를 제외한 **NEW**표시 과정)
-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비의 약 40% 고용보험 환급 가능
 - 신청기관 : 연수비 환급신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시기 : 교육종료 후 14일 이후
 - 신청서류 : 훈련비용지원신청서(소정양식), 수료증 사본,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계산서 사본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 *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연수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보험 환급신청 후 수령

| 연수비 감면제도 |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향상연수(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	30%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기타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문 의 처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http://sbti.sbc.or.kr>
- 중소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http://gjti.sbc.or.kr>
-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http://gsti.sbc.or.kr>
-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http://jhiti.sbc.or.kr>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http://global.sbc.or.kr>



궁금해요! 증기맨

-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카드로 결제시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므로 기업카드 또는 현금(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용어설명

- 모바일러닝 :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용자를 위한 '중소기업연수원 모바일러닝 (<http://mlearn.sbc.or.kr>)' 앱(App)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연수생들이 편리하게 학습 할 수 있는 모바일 학습 환경제공

1-15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등 원스톱 지원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260억원,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총 모집인원 : 250팀 내외(A-Track : 250팀 내외, B-Track : 50팀 내외)
 - 경기도 안산(입소 및 준입소형) 및 지방 4개 권역(입소 및 준입소형) 지원
 - 지방 4개 권역 : 충남(천안), 호남(광주광역시), 대구경북(경북 경산), 부산경남(경남 창원)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지원 대상

- A-Track(최초 지원)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하 기업의 대표
- B-Track(후속 지원)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사업*(12년 이후 참여자에 한함)에 참여하여 창업 및 과제수행을 완료한 기업으로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사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 사업화 분야), 창업맞춤형 사업,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또는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
 - * 선정 후 중도포기자,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로 공지된 자,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
 - * 단, 사업수행을 완료한 재(기)업)는 신청 가능
-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지원기관으로부터 후속성과조사 불응,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등

지원 업종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선정 절차

- A-Track(최초 지원) :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면접심사 → (3단계) 심층심사
- B-Track(후속 지원) :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실태조사 → (3단계) 면접심사

지원 내용

- A-Track(최초 지원)
 -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비 지원
 - 연계지원 : 정책자금, 투자 및 보증, 판로 및 입지 등 연계 지원
- B-Track(후속 지원)
- 글로벌 마케팅 교육 : 글로벌 시장개척 및 현지 진출 중심 전문교육
 - 글로벌 창업코칭 : 창업기업 글로벌 마케팅 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자문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 글로벌 시장 지향적 제품보완,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해외 규격·인증 획득 중점 지원
 - 수출마케팅 연계 : 수출마케팅 상담회, 해외 상품전시회 등 해외 바이어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 해외 창업연수,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및 IR 미팅 지원
 - 글로벌 협업 : 해외 소재 기업, 창업 유관기관 등과 기술협력 및 마케팅 등 협업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예정) : (A-Track) '15. 2월중, (B-Track) '15. 4월중
-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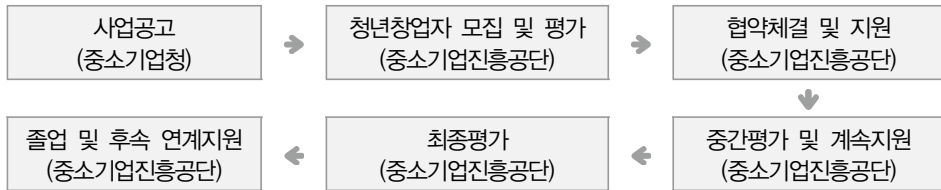
지원형태	평가단계(3단계)	평가기준
A-Track (최초 지원)	서류심사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등
	면접심사	창업의지 및 역량, 사업화 가능성, 시장경쟁력 등
	심층심사	사업화실행계획 심층 검토 및 사업가역량지표 평가 등
B-Track (후속 지원)	서류심사	제품 차별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
	실태조사	생산기반, 경영성과 등
	면접심사	제품완성도, 글로벌 진출계획 적정성 등

-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 및 사업비 확정

제출 서류

- 사업참가(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 : 031-490-1384, 1278, 1161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 062-250-3030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 053-819-5031
-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 055-548-8020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 041-589-0831, 0832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경남 진주) : 055-751-9833, 9835



궁금해요! 중기맨

- 입소형과 준입소형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 ☞ 입소형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창업활동을 하는 형태이고, 준입소형은 자체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진도점검 등을 위해 사관학교에 방문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입교지역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 ☞ 신청시 입교지역은 한 곳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교지역 선택은 본인이 창업을 준비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곳으로, 사관학교 프로그램 참여(출퇴근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서류 및 면접 심사시 가점사항이 있나요?
 - ☞ ①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재(출원중인 것은 제외), ② 최근 2년 이내 중기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시행 포함), ③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④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⑤ 여성, ⑥ 장애인, ⑦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수상자, ⑧ 최근 2년 이내 중기청, 창업진흥원, 중진공 창업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 0.5점을 부여(최대 2점)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중복지원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중 창업사업화를 위해 신청과제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앱 창작터의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문교육 후 창업사업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09년 ~ '14년(지원 제외 대상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스마트 앱 창작터(창업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포함)

1-1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

지원 규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 '14년 지원현황 : 856개사, 2,222명 (12.22 기준)

가입 요건

- 가입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 기업
 -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학력, 자격, 경력 등 제한 없음)
- 가입 기간
 - 최초 가입시 : 5년
 - 재 가입시 : 3~5년 중 선택
- 적립 비율
 - 핵심인력 : 기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구좌(1구좌 = 1만원)
- 공제 금리
 - 연 2.33%(연 복리식, 연 단위 변동금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동산,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국세 체납중인 기업, 공제부금 6개월 이상 연체중인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핵심인력 납입금 + 기업납입금 + 만기이자) 형태로 지급
-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사업주 : 납입금 손금 인정 +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 핵심인력 : 5년 만기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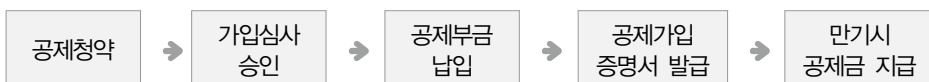
신청·접수

- 방문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 신청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단 : 055-751-9875, 987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납부한 공제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동 공제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관라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중소기업청)의 관라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안전하게 관라·운용하고 있습니다.

02

중소기업중앙회

- 2-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 92
- 2-2 사업조정제도 / 94
- 2-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98
- 2-4 가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 102
- 2-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 104
- 2-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 107
- 2-7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 / 109
- 2-8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 111
- 2-9 코업비즈(Coupbiz) / 115
- 2-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 117
- 2-11 중소기업 중요성 바로 알리기 사업 / 119
- 2-1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 121
- 2-13 장년취업인턴제 사업 / 123
- 2-14 외국인력지원 / 125
- 2-15 해외동포(H-2) 고용 지원 / 128
- 2-16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130
- 2-17 중소기업 공제사업자금 지원 / 133
- 2-18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 운영 / 138
- 2-19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지원 / 141
- 2-20 중소기업 손해공제제도(파란우산공제) / 143

2-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중소기업의 자구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회계기준이 '14.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회계기준지원센터」를 개소('13.5.29)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지원 내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연중)
 - 중소기업회계기준 인식도조사 및 의견수렴, 회계제도 개선 건의(정부, 국회)
- 중소기업회계기준 상담 (연중)
 - 적용대상, 회계처리 실무
 - 상담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전화
-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및 직무교육 (연중)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구 분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교육	중소기업회계기준 직무교육
교육시기(시간)	연중(3시간)	연중/ 14시간(2일)
교육인원	100명(회당)	40명(회당)
교육비	무료	무료

신청·접수 연중 수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회계기준지원센터 : 02) 2124-3118
- 중소기업중앙회 인재교육부 : 02) 2124-330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2 사업조정제도

|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들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업종

모든 업종이 신청대상

* 다만, 방위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제외

신청 요건

- 형식적 요건
 -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0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신청가능

신청 서류

- 일반 업종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0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 SSM업종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SSM진출에 따라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명단, 피해실태조사표 등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0이상 동의서, 피해실태조사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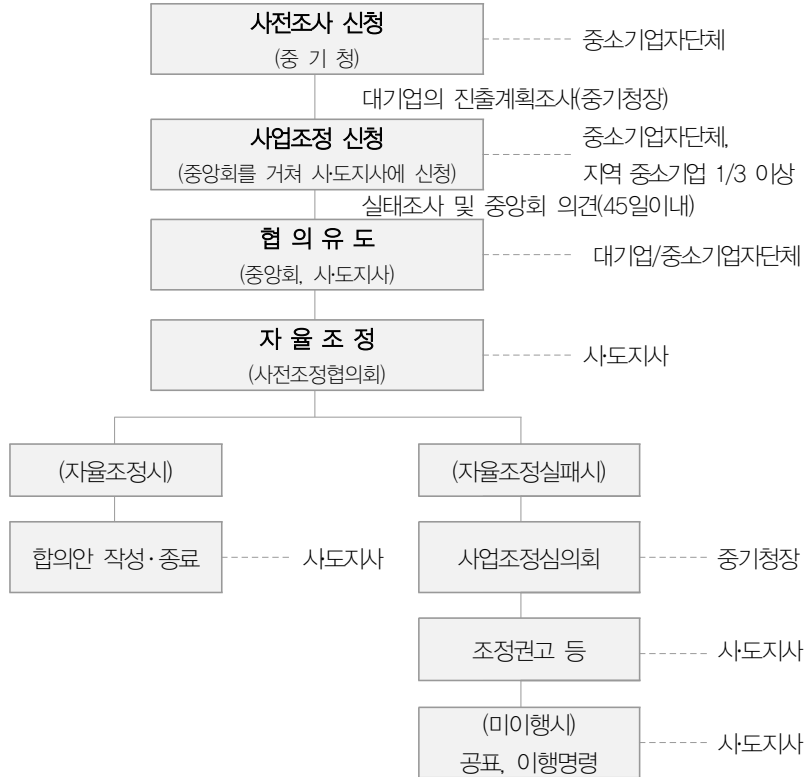
신청 절차

● 일반업종 사업조정 절차



-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조정팀 : 042-481-4366~8
- 중소기업중앙회
 - 유통업) 소상공인정책실 : 02-2124-3125
 - 제조업) 동반성장실 : 02-2124-313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사업조정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 ☞ 상생법 개정(‘14.2.7)으로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 ☞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상품공급점, 대기업 지분이 49%이하일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나요?
 - ☞ 동 제도는 일정기간 대기업 진출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 ☞ 예상되는 사업조정의 형태는 사업진출 연기, 판매량 혹은 면적제한, 취급품목제한, 영업 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상생법 개정(‘14.2.7)으로 권고 미이행 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상생법 개정(‘14.2.7)으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0.5억원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하 과태료로 강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용어설명

- 일시정지 권고란?
 -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도모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등 분쟁발생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모든 기업

* '14년 지원현황 : 34건 처리(조정성립 23건 / 성립율 77%)

지원 대상

제조·수리·용역부문의 위탁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일 때, 원사업자의 하도급직전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하도급법 미적용 대상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제조·수리) / 10억원(용역) 미만인 사건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건
- 공정위 직접신고 대상

* 하도급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지원 내용 하도급거래시 발생한 분쟁의 자율조정 유도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증액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물 변제, 기술인력 탈취 행위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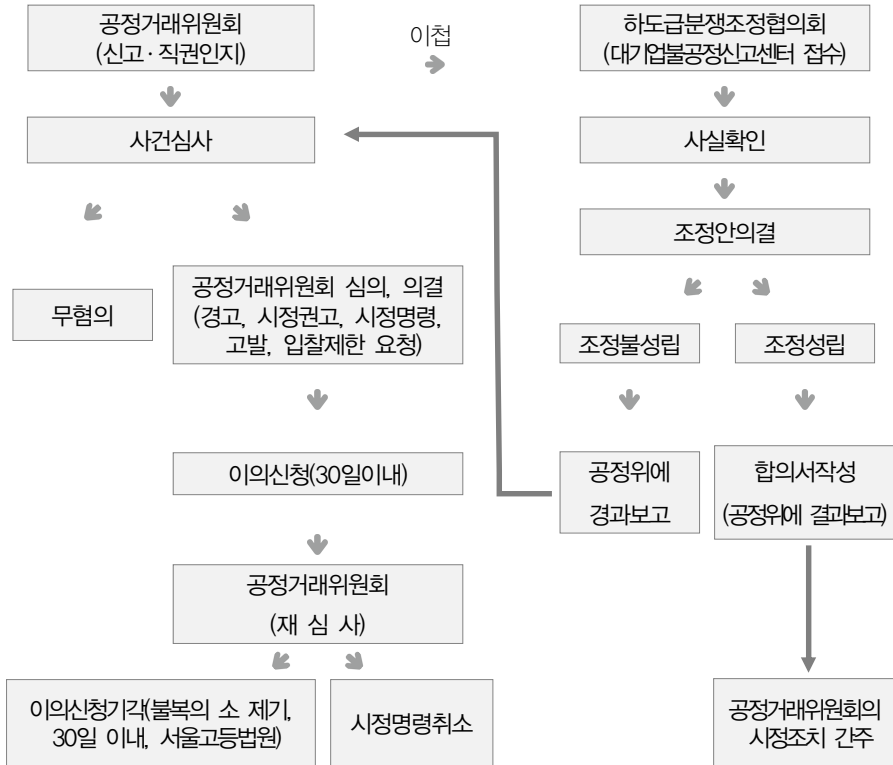
- 신고인이 중앙회에 직접 신고(우편 접수)
-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접수 후 공정위가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제출 서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사본 각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 신청양식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센터 → 제조하도급분쟁조정

처리 절차

| 하도급법위반 사건처리 절차도 |



* 분쟁조정은 협의회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당사자 동의 있으면 30일 연장 가능)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 02-2110-6161~7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 051-460-1041~4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 062-975-6841~4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하도급과 : 042-481-8018~9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하도급과 : 053-230-6343~4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2124-3131~2, 3142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49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조정성립 시 효력은? 또는 조정불성립 시 향후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위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공정위에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내용이 경미하고 자진시정 등으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악질적·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외에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2-4

가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세대간 아름다운 바통터치 지원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고기술, 전문인력, 경영노하우 등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거나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가업승계 · 명문 장수기업 관련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연중)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제도개선 연구 · 건의(정부, 국회), 정책이슈 발굴 포럼 개최
- 명문 장수기업 포상(연1회)
 - 업력 30년 이상 기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중소기업 발굴·포상
-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연1회)
 - 중소기업 1·2세대 간 소통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공유하고 명문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비전 공유
- 명문 장수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연중)
 -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 : 제도설명, 기업 의견수렴,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개최
 - 명문 장수기업 아카데미

구 분	입문과정	심화과정
교육횟수(기간)	연6회 / 2박 3일	연2회 / 8개월
교육인원	30명(회당)	30명(회당)
교육비	60만원(전액 센터지원)	380만원(50% 센터지원)

- 정보제공 : 명문 장수기업 사례집, 안내서, 리플릿 등 발간

- 컨설팅 및 상담 지원(연중)
 - 컨설팅(경영, 조세 등) 및 제도 상담
 - 상담방법 :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전화
-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경영후계자 네트워크 운영(연중)
 - 경영후계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기업경영 도모
 - 가입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전화
 - * 회원 250여명, 10개 지역분회 운영
- 경영후계자 교육 : 차세대CEO 스쿨

구 분	차세대CEO 스쿨 입문과정	차세대CEO 스쿨 심화과정
교육시기(기간)	3월, 6월, 9월, 12월 (연4회) / 2박 3일	상반기(연1회) / 4개월
교육인원	30명(회당)	30명(회당)
교육비	50만원(전액 센터지원)	380만원(40%~70% 센터지원)

신청·접수연중 수시(개별 사업별로 신청 필요) 온라인 www.successbiz.or.kr**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6~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이내 지원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수입의 급증 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규모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14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3개사 지원, 총 9,700만원

지원 대상 외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한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결정 이후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종판정 후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국내 기업 간의 특허권 분쟁 외국계 기업인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이 거부될 수 있음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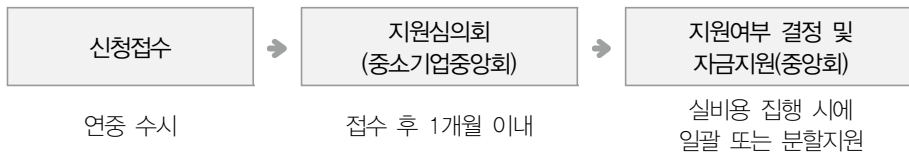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신청 서류

- 신청공문
- 조사신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조사신청서(또는 조사개시 결정서) 사본
-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과의 계약서 사본
- 약정서(소정양식)
-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예산지원신청서(소정양식)
- 무역구제 지원신청 현황(소정양식)
- 계좌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수입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02-2124-3165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3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www.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 무역구제제도란?
 -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2-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수출 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200개사 내외

* '14년 지원현황 : 전시회 150회, 수출컨소시엄 30회 등 총 160억원 지원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50%
 - * 공통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70~100%
 - * 1단계 : 사전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비 등의 100% 이내
 - * 2단계 :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의 70% 이내
 - * 3단계 : 초청바이어 항공료, 신용조사비용 등의 70% 이내

신청·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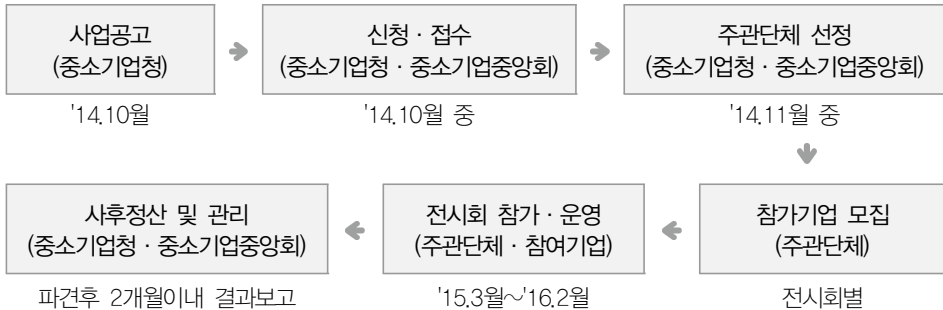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 및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 참고 및 증빙서류 |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m²(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 견적서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전년 기준으로 제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협력부 : 02-2124-3189
- 중소기업 해외전시 포탈 (www.sme-expo.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한국관 단체 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가능한가요?
☞ 한국관 단체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시산업진흥회(www.akei.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

|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교육 제공

문화예술을 기업의 경영전략에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임직원과 문화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규모

-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
 -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임직원과 함께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 사기진작과 우수 문화공연 참여기회 확대
 - 지원규모 : 5천만원, 20개 기업 지원 예정
- **중소기업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부여행**
 - 중소기업과 예술단체가 함께 소외계층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수행
 - 지원규모 : 1천만원, 10개 기업 지원 예정
- **제9회 중소기업문화대상 포상(연1회)**
 - 중소기업들의 문화경영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발전 모델로 홍보함으로써 문화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경영 확산
 - 포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한국문화예술위원장상
- **문화경영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 모범적인 국내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인들의 벤치마킹 유도
 - 문화경영 사례 기획취재 및 CEO인터뷰 등 포상업체 모범케이스 수록 사례집 발간
- **문화경영 정보제공 및 자문(연중)**
 -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사업, 문화접대비 등 관련 각종 정보 및 질의 응답 등을 온라인에서 신속히 제공

신청·접수

-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happyculture.or.kr)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지원센터 02-2124-317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8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 협동조합 공동구매·판매 자금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적기조달과 제품판매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구매·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
- 최근 2개월 이상 이사장(회장) 또는 상근이사가 결원 중인 조합
- 해산건의 중인 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조합 중 연합회 미 가입 지방조합, 연합회·전국조합 또는 지방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조합
-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인원인 5명(사업조합 2명)에 미달하는 조합
- 공동사업자금을 용도 외로 활용하거나 부실운영으로 시정 또는 경고조치 중인 조합

| 유의사항 등 |

- 중소기업이 아닌 조합원은 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 동일 조합원에 대한 연간지원총액은 해당조합 지원총액의 20/100이내

지원 규모

1,500억원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기업은행자금 : 연 6.6~8.4% 수준(시중금리 적용,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 공제기금자금 : 연 5.0%(고정금리)
- 대출기간 : 1년 이내로 익년도 자금배정 시기까지
- 대출 지원한도 : 최근 결산년도 자기자본(출자금+잉여금) 10배 이내
 - * 설립 3년 미만으로 처음 신청한 협동조합은 3억원 이내
- 채권보전 : 신용, 부동산, 보증서 중 선택
 - 신용 대출시 이사장(회장) 등 실제 경영인 보증 입보

신청·접수 '15. 1월중 신청·접수

- 한도 배정은 매년 1월 중 신청접수. 추가한도 및 임시한도는 연중 수시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은 직접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이 아닌 경우는 소속된 연합회·전국조합을 경유하여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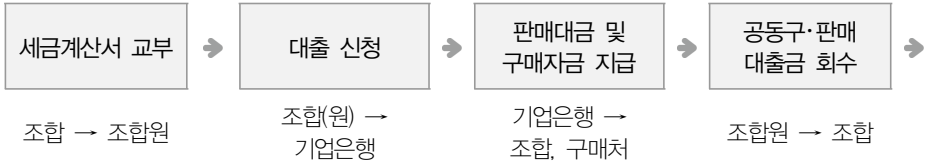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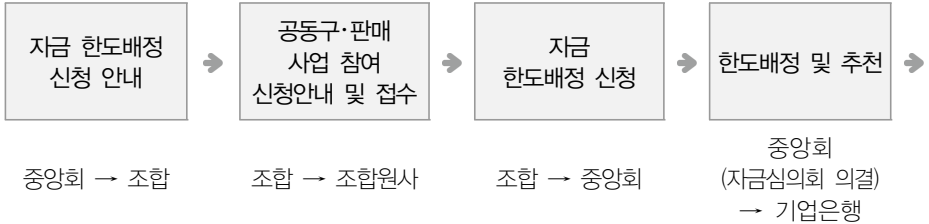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금심의회에서 공동사업 및 자금 활용 계획, 참여조합원수, 자체자금 조달계획 등을 심사

제출 서류

-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신청서, 공동사업자금 활용계획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014년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조합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조합원명부(공제기금 자금 활용시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 표시, 조합원 6개 업체 이상 가입), 총회 의사록 사본(차입금한도 의결내용)
 - * 관련 신청서류는 협동조합 포털(www.jhapp.biz)의 「알림마당」에 상시 게시되어 있음

처리 절차



대출금 상환

조합 → 기업은행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 : 02-2124-3231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포털(www.johap.biz)의 「알림마당」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공동사업자금의 대출기간이 '1년 이내로 익년도 자금배정 시기까지'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 ※ 공동사업자금을 활용하는 협동조합은 매년 2월~3월 중 자금 활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회 자금심의회를 거쳐 후 자금한도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익년도에 자금한도를 배정받는 시기까지'가 됩니다.
- 설립 1년 미만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공동사업자금의 대출 지원한도는 '최근 결산년도 자기자본(대출자금+잉여금) 10배 이내로 산출되며, 설립 1년 미만의 협동조합은 재무제표가 미확정이거나 없는 관계로 대출 지원한도를 산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대출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코업비즈(Coupbiz)

| 중소기업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 지원

코업비즈는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이 지원하는 '금융통합형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제조업, 유통업 등 중소기업

코업비즈란?

- 구매대행을 활용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로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공급하며, 무보증·무담보로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e-Marketplace

특징

- 협동조합의 공동구매로 개별기업 구매단가 대비 원부자재 5~10% 저렴
- 다양한 품목 소싱(철강류, 비철금속, 기계류, 산업용 화학제품 등)
- 구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B2B 보증서(무보증·무담보) 발급 지원
-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주문 시스템과 안정적 공급
- 구매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신용보증기금 보증서)

| 유의사항 |

- B2B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으로 조건 완화하여 발급

이용 방법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서 : 코업비즈 웹사이트 참조 (www.coupbiz.com)
-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02-2124-323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코업비즈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은 무엇입니까?
☞ 모터, 베어링 등 코업비즈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 확인이 가능하며,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코업비즈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품목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 B2B전자보증서 발급 요건은 무엇입니까?
☞ 법인 제조 기업으로 신용등급 7등급까지 가능합니다.
- 코업비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 코업비즈에서는 현금, 지급보증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기관 계약 중소기업은 무보증 신용으로 원자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 코업비즈란?
☞ 조합(Cooperative)과 위(Up) 그리고 사업(Business)의 합성어로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킨다는 뜻입니다.

2-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목 적	제 도 의 종 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규모별 경쟁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지정 지원(추천)
 - '14년 현재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207개, 직접구매대상제품 123개 지정 ('13. 1월 1일 시행, 3년간 효력)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운영
 -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위반신고센터 운영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1

중소기업 중요성 바로 알리기 사업

|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사업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 청소년 진로체험 신입사무원 현장체험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년층의 올바른 진로 선택,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대국민 이미지 제고

사업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중소기업중앙회업무)제1항 제23호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사업 내용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교육
 -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대학생, 공무원 대상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교육 실시
-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공모전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 동영상, 포스터, 아이디어 제안서 공모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방송 프로그램 기획 공모전 : PD 및 방송작가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바로 알릴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기획서 공모
 - 초·중·고 교사 및 예비교사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안 경진 대회
- 교재개발
 - 중학생 자유학기제 교과서 '미니컴퍼니 경영' 개발
 - 초·중·고 교사 보조용, 예비교사 교양과목,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교육청 연수원 등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위한 교재 개발

● 연구용역

- 인식개선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인식개선사업 성과제고 및 교과서 관련 연구
- 교원양성대학 교양강좌개설 운영 및 교재개발 연구
- 자유학기제용 선택프로그램 행복한 중기씨 교재개발

● 홍보 사업

-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
- 방송프로그램 제작 : 1대100, 지금은 라디오시대, 스카우트, TV동화 행복한세상, 기업열전 K1, 황금의 팬타곤, 기부생방송 등
- 지상파 PD 대상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팸투어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탁상용 캘린더 제작
- 5급 공채 신입사무관(입법/행정) 중소기업 현장체험
- 청소년 중소기업 진로체험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271, 3369
- ‘행복한 중기씨’ 네이버 블로그(<http://smallgiantk.blog.me/>)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 중장년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경력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 구직자를 중소기업으로의 인재추천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지원 규모

중장년 취업지원 1,500명 내외

* '14년 지원현황 : 중장년인력 1,000명 취업알선 지원

지원 내용

- 구인기업 인재추천, 일자리 지원사업 상담 등
- 구직자 대상 취업역량 강화 교육(재도약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일자리 박람회 개최, 창업컨설팅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인터넷 접수
- 중소기업 중장년 채용사이트(www.smjob.or.kr)를 통해 구인, 구직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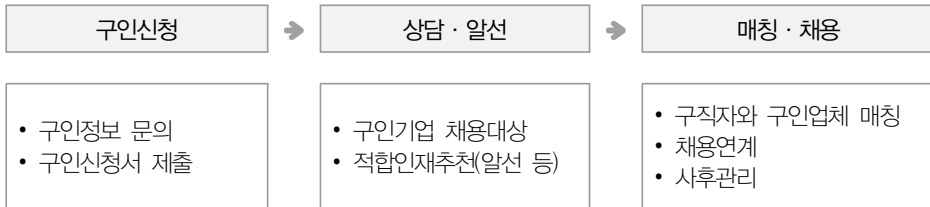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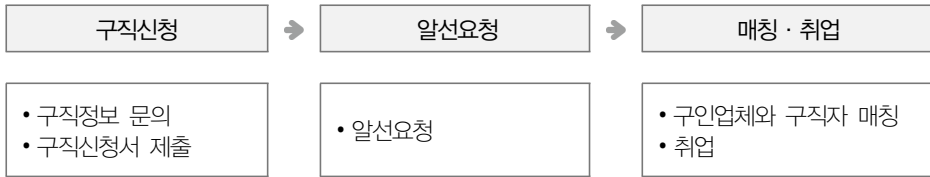
- 구인기업 - 구인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 구직자 - 구직신청서, 이력서

처리 절차

- 구인업체



- 구직자



※ 구인구직 전문 홈페이지(www.smjob.or.kr)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02-2124-3291~4, 323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3

장년취업인턴제 사업

| 장년 인턴 및 정규직 채용지원

50세 이상 장년층을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배정하고 채용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년층 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 * 업종 : 일반 중소기업, 비제조업(비영리단체, 기관 포함)
- 중장년 구직자
 - 중소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통한 정규직 채용 희망자
 - * 직종 : 생산, 경영, 일반사무, 노무 등

지원 규모

채용지원 인원 1,000명

지원 내용

- 인턴기간 : 최대 4개월, 급여의 50% 지원(최대 80만원 이내)
 - * 정규직 전환시 매월 60만원 6개월간 지원

신청·접수

2015년 1월 초 ~ 12월 31일까지

※ 채용지원 인원 소진시 조기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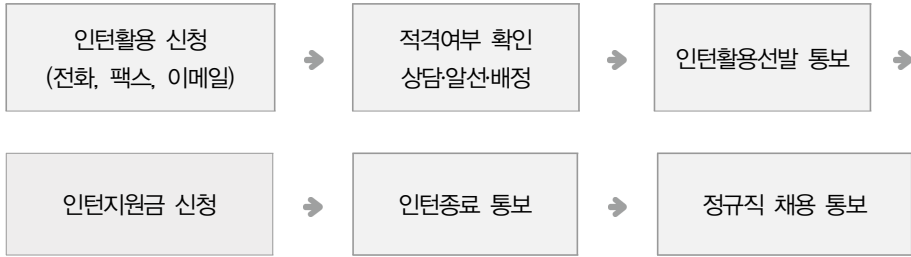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인터넷 접수
- 중소기업 중장년 채용사이트(www.smjob.or.kr)를 통해 구인, 구직 신청접수
 - * 상기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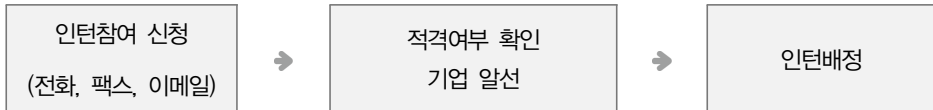
- 중소기업 : 인턴활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턴활용계획서
 - 중장년(구직자) : 인턴참여신청서, 주민등록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상기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처리 절차

- 구인기업



- 구직자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2-2124-3291~4, 323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4 외국인력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 ① 각종 행정 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②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 ③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및 상해수습 지원 등

신청 자격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체

고용 기간

4년 10개월 (3년+1년10개월)

*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도입 등으로 최대 9년 8개월 고용 가능

도입 국가

아시아 15개국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중국

고용 인원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이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3명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5명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4명	301인 이상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고용인원에서 +1명 추가로 고용 가능

* 지방기업 및 인력 부족율이 심한 업종은 20% 추가고용 가능
(해당지역 및 업종은 2014년 1월 중 고시)

* 방문취업제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고용 시 허용인원만큼 추가 가능

도입 쿼터

2014년도 쿼터 42,250명(제조업)

구 분	배정인원	비고
일반인력쿼터	36,950명	1.5.9월 신청
재입국취업자	5,300명	수시접수
합 계	42,250명	

* 2015년도 쿼터는 2014.12월 말 결정 예정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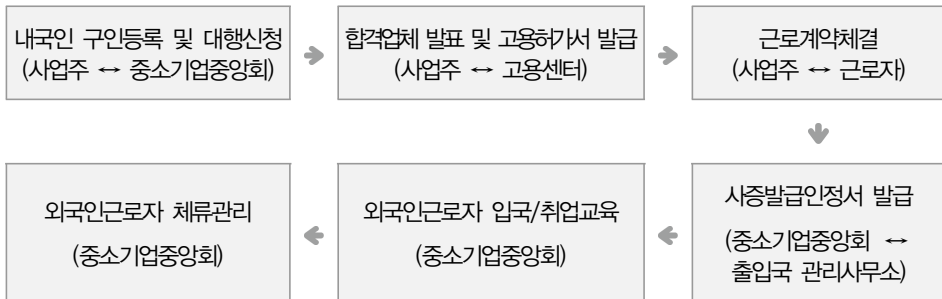
신청 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배정 기준 일정 요건에 따라 업체에 점수를 부여(가감)하고, 업체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 내국인 구인실적 등 4가지 요건에 의거 점수 부여(총점 100점)
- 출국만기보험 연체 등 3가지 요건에 의거 점수 감점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1~4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5 해외동포(H-2) 고용 지원

| 해외동포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동포(H-2) 고용과 관련한 각종 행정 신고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
- * 해외동포 : 방문취업자(H-2)로 입국한 중국, 구소련 출신의 외국국적 동포

지원 내용

| 고용 신청 관련 행정신고 |

- 내국인 구인노력 대행
-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신고, 고용변동 신고
-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계약기간 연장(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등

도입 쿼터 30만 3천명(전 업종)

고용 기간 4년 10개월(3년+1년10개월)

고용 인원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이

●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10인 이하	5명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명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하	501인 이상	50명 이하

●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5인 이하	2명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명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명 이하	21인 이상	10명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명 이하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본부) 및 지역본부(지부)**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서, 특례 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업무대행계약서 등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1~4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6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제도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
 -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 지급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납입부금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사업주의 종합소득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300만원 × 6.6% = 198,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300만원 × 16.5% = 49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 × 26.4% = 792,000원
88백만원 ~ 3억원 이하	38.5	300만원 × 38.5% = 1,155,000원
3억원 초과	41.8	300만원 × 41.8% = 1,254,000원

* 노란우산공제 월납부금 250,000원 가정, 세율은 주민세 포함, 관련 세법개정시 변경 가능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안전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납부 부금내 대출가능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가입 대상

- 소기업자 · 소상공인 사업주 대표(법인의 대표)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 영위하는 사업체가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공제가입이 제한됨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50인 미만

가입 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 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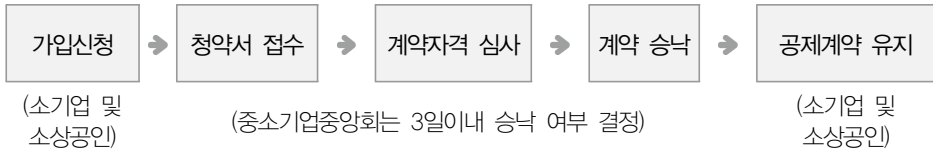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 방법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로 한함

가입 기간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가입 서류

-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청약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기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문의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7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수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및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대출 3,500억원, 가입 업체 수 14,000개

대출종류	대출금액
부도어음대출(제1호공제금대출)	52억원
어음 및 수표대출(제2호공제금대출)	636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공제금대출)	2,600억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제4호공제금대출)	12억원
공동구판매사업자금대출	200억원

* '14년 지원현황 : 2,854억원, 가입업체수 13,561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담배·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상조업, 대부업, 임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한도
부도어음대출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5~6배 이내 - 담보 : 10배 이내
어음 및 수표대출	•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2~5배 이내 - 담보 : 10배 이내
단기운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보 : 10배 이내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대출	•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예방과 외상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가 필요한 때 * 신용보증기금 일석조보험에 가입한 기업 대상	부금잔액의 최고 20배 이내 (일석조보험 금액의 100%)
공동구판매사업 자금대출	•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 사업자금이 필요한 때	조합자기자본의 10배 이내

- 지원조건

분야	부도어음대출	어음 및 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대출	공동구판매사업 자금대출
대출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5.0~9.5%	신용등급별로 연5.0~9.9%	연4.65%	연5.0% (실세금리)
대출기간	3년	180일 이내	1년	180일 이내	1년 이내
담보 등	부금잔액 내 대출 : 연 4.8% 담보 대출 : 연 4.8% 신용보증서 대출 : 연 4.8~5.25%			매출채권보험 청구권의 근질권 설정	신용대출원칙 (필요시 보증인입보)

-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거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 연1.0~2.0% 감면
-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 * 제2호·제3호 대출 시 부실채권의 상각을 통한 기금 건전성을 위하여 대출금액(부금잔액 초과금액)에서 대손보전준비금 1% 공제함(담보대출시 0.1%)
- * 부금잔액 내 대출과 신용보증서 대출(100% 보증)은 대손보전준비금 공제하지 않음
- 부금종류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2종 : 150만원, 200만원
- 월부금 만기
 - 30, 40, 42, 50, 60개월(1억원 한도)
- 부금이자 등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신청·접수

-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대출팀 및 각 지역본부·지부(인터넷, 방문, 팩스)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대출팀 및 각 지역본부·지부(방문, 부금내 대출인 경우 인터넷 이용 가능)

신청 서류

-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및 대표자 소유(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대출팀(02-2124-4326~9)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입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 ☞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종료일이 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미납할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도어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 부도어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할인이 가능한가요?
 - ☞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할인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1년이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후 재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재대출 금액은 신용평가 후 결정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출채권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 국세청에 신고 된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세금계산서, 영세율계산서만 가능하며 면세계산서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 대출의 대상은 무엇을 말하나요?
 - ☞ 외상매출채권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조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결재기일 180일 이내
 - * 상거래 기업 중 공제기금 가입자의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등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 ☞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 일부(연 1~2%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 매출채권보험이란?
 - ☞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www.kodit.co.kr)

2-18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 운영

|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보증서를 그 동안 보증 시장을 독과점해왔던 민영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발급지원하여 드립니다.

가입 대상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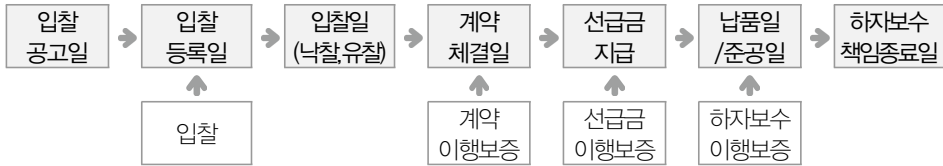
- * 공공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를 의미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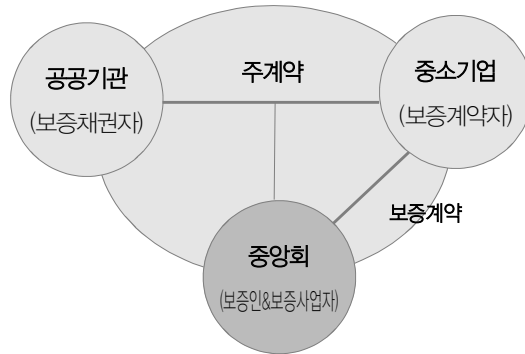
-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요구하는 ‘보증서’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보증하거나 계약이행의무 부담 또는 불이행시 일정금액 납부를 보증
선금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서류에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이행의무와 관련된 보증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 체계 〉



〈 공제 구상도 〉



이용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13개 지역본부 및 8개 지부), 보증업무 위탁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해 약정 및 청약 신청

신청 서류

조달계약서(주계약서), 납품지시서, 사업자등록증, 약정(청약) 신청서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biz.or.kr)에 게재된 보증안내-구비서류 참조

처리 절차

방문 또는 전화 문의	1899-0098
상담 및 보증한도 안내	전화상담·홈페이지
보증약정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약정 심사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약정 체결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청약	중앙회 본부/지역본부/대리조합/홈페이지
청약심사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료 납부	가상계좌자동이체
증권 발급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전자보증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보증공제 대표전화 : 1899-0098
-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

-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자본 규모액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9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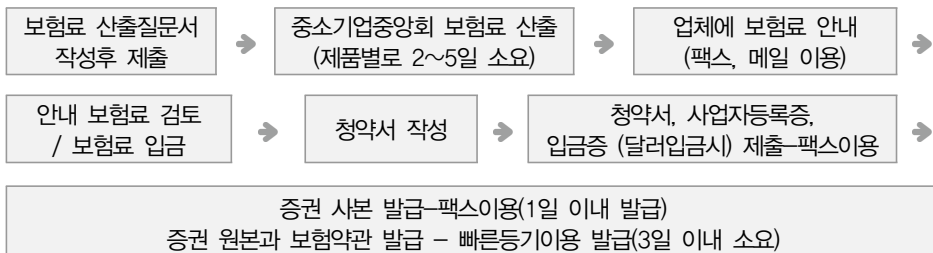
| 제조물책임보험 단체가입으로 보험료 경감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PL)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단체보험 가입시 개별 가입시 보다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경비 경감을 지원합니다.

PL 단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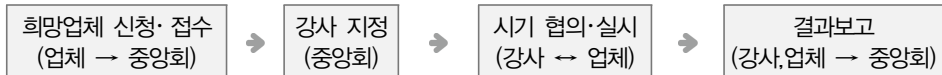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운영하여 기존 손해보험사 가입시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중소기업의 보험료 비용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PL대응력을 제고
- 가입대상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과 관련된 생산물을 취급하는 자
- 보험료 고려사항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손해율 등에 따라 결정
- 특징 : 기존 손해보험사 대비 20~35% 저렴, 인수 거부 및 제한없음
 - * 장기가입자 및 각종 인증마크,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보험료 추가 할인

가입 절차



PL교육(자문)지원

- 지원내용 : 강사(자문) 무료지원
 - * 강사는 내외부 PL 관련 전문가 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 * PL교육의 경우 50인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의 합동교육도 가능)
- 교육(자문)내용
 - PL법, 최근 PL동향 등 PL에 관한 사항
 - 기업 종사자의 PL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업종별 PL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 교육(자문)장소 : 신청 조합(기업)이 희망하는 장소
- 교육(자문)시간 : 2~4시간 범위 내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 신청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Fax. 0502-397-0200, 02-761-4432
(홈페이지 www.plkorea.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교육(자문) 절차



- 신청시기 : 수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 02-2124-4352~5(대표 : 1666-9988 5번)
- 홈페이지 : www.plkorea.com 이메일 : pl@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20

중소기업 손해공제제도(파란우산공제)

| 기업 경영상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수 제한을 최소화하여 공제(보험) 가입의 문을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시설 소유·임차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지원 내용



공제종목 요약

- 화재공제 : 공장 및 일반 물건의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
- 근로자재해공제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상액 초과분에 대한 사업주의 민사배상책임을 보상
- 재산종합공제 : 재물손해, 기계손해, 기업휴지(조업중단) 및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
- 영업배상책임공제 : 영업 수행상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애, 재물손상으로 인한 손해 보상
- 단체상해공제 : 기업·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

● 화재공제

* 공제목적물(건물, 공장 등)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서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

구 분		보 상 내 용
화재	직접 손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및 그을음 또는 연기 손해 보상
	소방 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생긴 수침손해나 파괴손해 보상
	피난 손해	불에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꺼내 임시 보관 중인 곳에서 5일 이내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목적에 대한 잔존물제거비용 보상
손해방지 비용		사고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유익한 비용

● 근로자재해공제

* 사업주(사용자)의 과실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구 분	산재보험(강제보험)	근로자재해(임의가입)
가입주관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사 / 공제조합
담보내용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보상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보상내용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산재초과분 :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소송비용 / 1인당 1사고당으로 결정

● 재산종합공제

- * 공제대상자의 재물손해(Ⅰ), 기계장치손해(Ⅱ), 조업중단손해(Ⅲ) 및 배상책임(Ⅳ)을 보상하며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각종 위험 담보
- 4가지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음으로써 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업무간소화 및 관리 편의
- All Risk 담보형식이므로 담보 누락을 최소화

부 문	담 보 내 용
제1부문 (재산종합 위험)	공제대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임차, 리스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 -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등 각종위험 (일부 면책위험 제외)을 보상
제2부문 (기계위험)	공제대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임차, 리스하는 기계장치가 아래 원인으로 인한 파손사고 손해를 보상 - 기계적 요인: 재질·설계·건설·조립상의 결함, 조절불량, 안전장치 고장 - 전기적 요인 : 전압 과부족, 절연체 하자,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 기타 : 기술부족, 종업원 부주의, 추락, 충격, 이물질 유입
제3부문 (기업휴지 위험)	제1,2부문의 사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자의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休止)됨에 따른 손실액 - 기업휴지기간 동안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상실액 및 손해액 경감을 위한 특별비용을 보상 * 총이익 = (매출액 +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 + 변동비)
제4부문 (배상책임 위험)	공제대상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 일반배상책임(GL) : 고지된 시설,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 및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생산물배상책임(PL : Product Liability)

● 영업배상책임공제

- * 담보지역(증권기재)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특별약관 기재)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공제대상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구 분	보 상 내 용	가 입 대 상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가입한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영업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업주가 가입하며 주로 음식점, 도·소매점, 사무실, 목욕탕, 숙박 시설 등
도급업자 배상책임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제반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 시공자 및 도급업자 중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누구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완성되느냐에 따라 결정
주차장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전용주차장, 부속주차장, 빌딩 내 주차장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또는 건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그 소유 주의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	공제대상자가 임차,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또는 건물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기소유자 및 중기임차자 (업체 또는 개인)
경비업자 배상책임	경비업무 계약에 따른 보안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경비업체, 무인경비업체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차량정비소, 카센터

● 단체상해공제

- * 공제대상자(단체에 소속된 구성원)가 우연한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공제로, 동일한 직장 등 일정기준(단체요건*)에 부합하는 단체가 계약자가 되어 가입
- * 1종 : 급여단체, 2종 : 법정단체, 3종 : 규약단체
 - 사업주(법인)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손비(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감 혜택 있음
 - 가입대상은 공제대상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부 문	담 보 내 용
24시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사망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보상 - 후유장해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상 (공제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질병사망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공제가입금액 보상
24시간 상해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일당 (180일 한도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입원일당 :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 공제 가입 금액 보상 - 질병입원일당 : 공제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공제가입금액 보상
실손의료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의료 실비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중복보상 불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암진단금	<p>공제기간 중 암진단 확정될 경우 공제가입금액에 각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최초 1회에 한함)</p> <p>* 지급배수(비율) : 일반암 100%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30% /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10%</p>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혈관질환 : 공제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공제가입금액 보상(최초 1회에 한함) - 허혈성심질환 : 공제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공제가 입 금액 보상(최초 1회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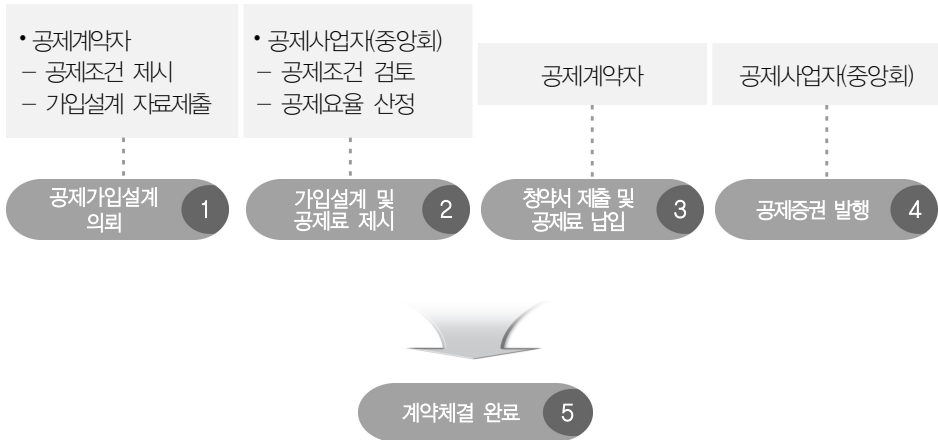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설문서 접수(메일 또는 팩스)
- 신청기간 : 수시
- 처리기간 : 7일 이내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화재공제 : 건축물대장(필요시)
- 영업배상책임공제 : 각 업종별 정보자료*
 - * 시설소유(관리)자 : 영업장 객실수, 면적, 좌석수 등
 - * 도급업자 : 도급계약서, 손익계산서 등
 - * 주차장 : 주차시설 정보, 면적 등
- 재산종합공제
 - 재산위험, 기계위험 부문 : 건물가액 평가자료(건축물대장 등), 유형·고정자산명세
 - 기업휴지 부문 : 매출액 자료, 재고자산 리스트, 변동비 자료
- 근로자재해공제 : 임금증명서류
 - 연간계약-재무재표, 구간계약-공사계약서
- 단체상해공제 : 가입대상 임직원명부(최종계약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전국대표 콜센터 1666-9988(교환4번)
- 손해공제 홈페이지 www.ins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02-2124-4351~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납부한 공제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동 공제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관라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안전하게 관라운용하고 있습니다.

03

신용보증기금

- 3-1 신용보증 / 151
-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 155
- 3-3 보증연계투자 / 157
- 3-4 유동화회사보증 / 160
-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165
- 3-6 매출채권보험 / 168
- 3-7 Job Cloud / 172
- 3-8 창업지원제도 / 173

3-1 신용보증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40조원으로 운용

지원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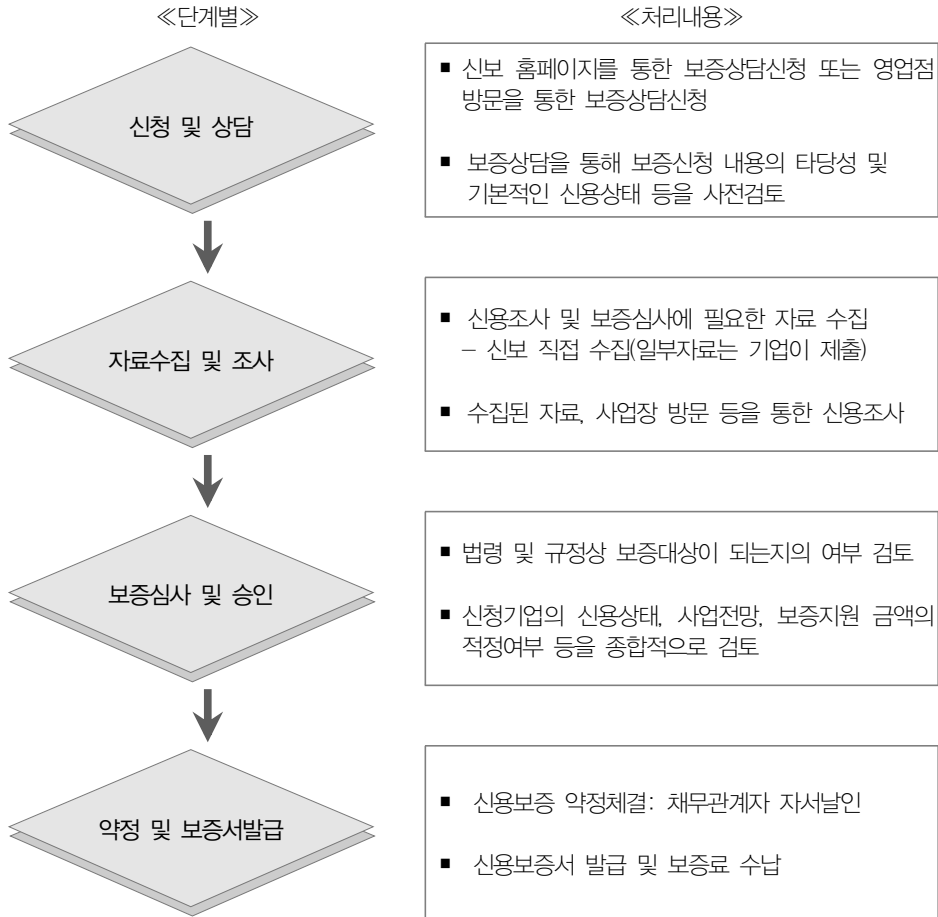
- 매출액한도 : 최근 1년간 또는 당기 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제출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 사업자등록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중점지원 주요 보증제도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수출기업 및 수출계약 체결기업에 대한 보증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부가서비스 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 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 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M&A 보증	· 합병, 영업양수 등 M&A를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 상시종업원(정규직)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뿌리산업, 콘텐츠사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보증지원

● 보증료

■ 보증신청기업은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와 조사수수료를 납부

☞ 보증료 :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

☞ 보증료율 :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의 범위에서 운용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 경영혁신기업 발굴

서비스업, 전통제조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혁신기업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경영혁신기업 발굴 및 인증기업에 대하여 연간 보증 8.3조원 지원

* '14년 4,147개 기업 인증 및 보증 8조 3천억원 지원(11월 말 기준)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전 업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업중인 기업, 세금 체납기업 등

지원 내용

- 금융지원
 - 보증료율 및 신용보험료율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 * 중소기업은행에서 보증부대출 시 인증 수수료 지원 등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메인비즈 홈페이지(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 02-710-4162
-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홈페이지 : www.mainbiz.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A 용어설명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향상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

3-3 보증연계투자

|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 250억원 이내(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지원 대상

-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이내로 운용하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보증심사등급	인수한도
K5 이상	30억원
K6~K8, SB1~SB2	15억원
K9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SB3 이하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3년
 - 단, 최대 허용기간은 법인 설립 후 10년 경과를 기점으로 7년까지 가능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및 각 해당 영업점에 문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처리 절차

업무절차	세 부 내 용	담당조직
투자상담	기보증이용기업 또는 신규기업 중 투자대상기업 발굴	영업점
↓		
투자조사	현장조사 및 표준신용조사서 작성후 담당부서로 추천	영업점
↓		
투자심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심사 진행	본점 (자본시장부)
↓		
투자결정	투자심의위원회 또는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	본점 (자본시장부)
↓		
투자집행	투자승인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집행	본점 (자본시장부)
↓		
사후관리	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Value-up 서비스 제공	본점 (자본시장부)
↓		
투자금 회수 (EXIT)	IPO, 상환·매수청구, M&A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본점 (자본시장부)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4 유동화회사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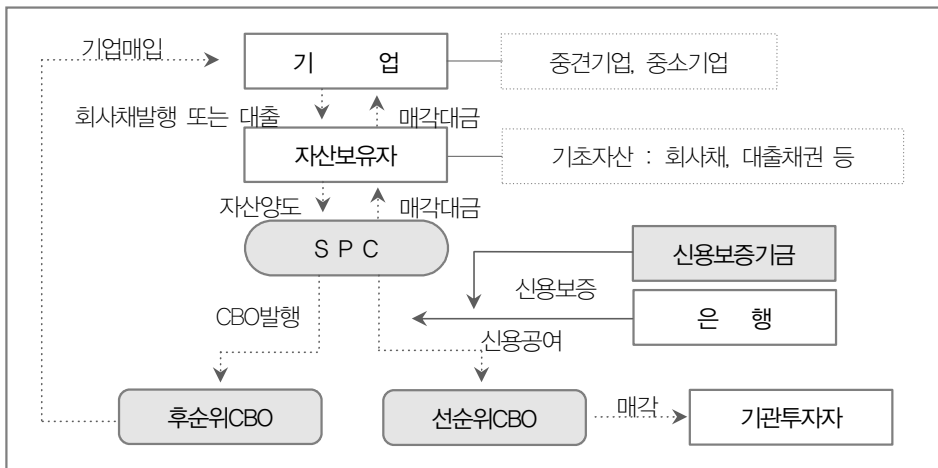
|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재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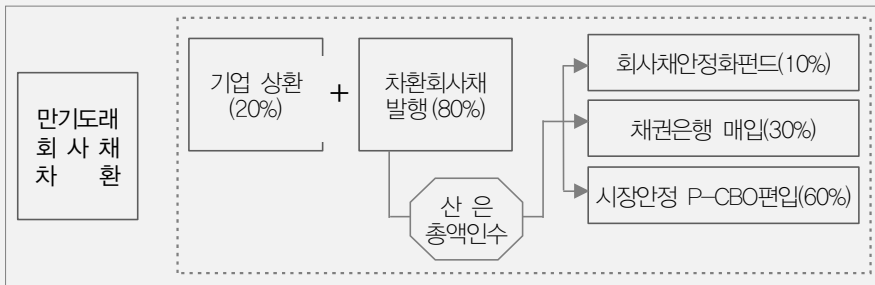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A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차환발행 지원을 통한 회사채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도입된 보증제도
- * '13.7.8일 금융위원회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 발표
-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의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지원

〈차환지원 구조〉



- 차환발행기업 회사채와 건설사 및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편입하여 Pool을 구성 후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
- 제도 시행 후, '14.11월말 현재까지 2,060개 기업에 3.7조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

지원 규모 '14년(11월말 기준) 중 1,790개 기업에 2.9조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지, 보증제한, 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2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 이하인 기업 또는 기업가치평가등급이 “FV-9” 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촉법, 회생절차, 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영위 기업 ■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 차환에 기초자산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

지원 한도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 신용등급별 최고한도 (단위: 억원)

구 분	K40이상 (BBB0이상)	K5 (BBB-)	K6 (BB+)	K7 (BB)	K8 (BB-)	K9 (B+)	K10 -
중소기업	150	120	100	70	50	40	30
중견기업	250	200	150	100	70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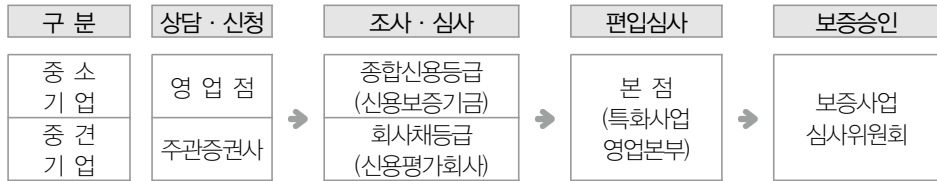
(주1) 신·기보의 일반보증+재단보증+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3~1/4 이내 ■ 기타 업종(도소매, 건설업 등)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등급 BB(K7) 이하인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차입금(본건 포함)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와 기보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포함

처리 절차



제출 서류

-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발행 금리

- 신용등급별로 3.89%(K1등급, A등급) ~ 5.49%(K9등급, B+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2014.6.27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신청·접수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은 신보 영업점, 중견기업은 거래증권사를 통해 편입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최저신용등급 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결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 SPC(Special Purpose Company)
 -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 목적의 법인체
- 후순위채권
 -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체 보증규모 1조 9천억원

* '14년 지원현황 : 1조 9,994억원(11월말 기준)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 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
- 대상시설 (철도, 도로, 항만 등 49가지 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

지원 한도

- 같은 사업당 최고 3,000억원 보증
 - 토지선보상을 위한 보증은 3,000억원을 한도로 별도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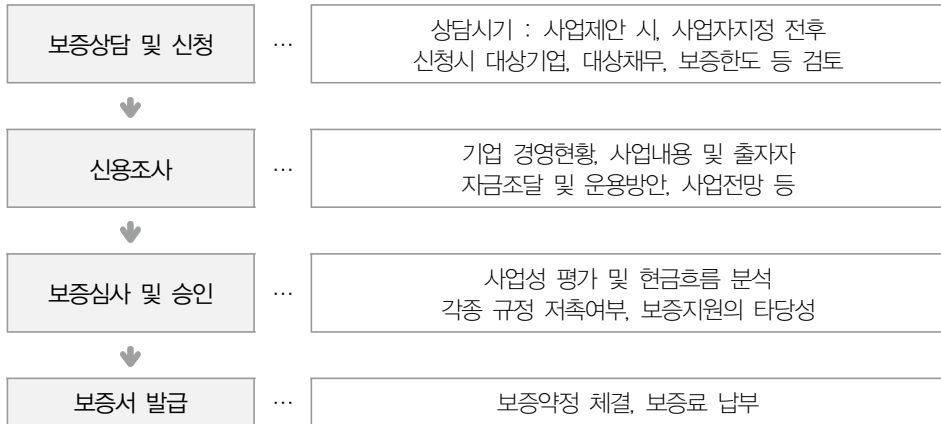
지원 내용

- 보증지원 누계 : 180개 사업, 총 17조 5,059억원
 - 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등 29개 사업 8조 3,477억원
 - 철도 : 신분당선 등 6개 사업 1조 8,602억원
 - 항만 : 부산신항만 등 15개 사업 1조 8,121억원
 - 터널 : 용마터널 등 8개 사업 7,099억원
 - 환경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등 23개 사업 8,304억원
 - 문화 : 국립해양박물관 등 14개 사업 3,977억원
 - 학교 : 서울신도초교 등 40개 사업 1조 5,211억원

제출 서류

자 료 명	비 고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주주명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실제경영자 포함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거주주택
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금융거래확인서	본건기관,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⑧ 재무제표(최근 2기분)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기업 포함
⑨ 사업계획 관련 서류 사본	실시협약, 실시계획서 등
⑩ 금융약정 관련 서류 사본	대출약정서 등
⑪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보증료 중소기업 우대부분 적용 확인용

* (주)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 및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보에서 직접 수집 가능

처리 절차**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 02-710-440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6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신용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보험인수 15.5조원

가입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제한 없음	제조업
어음보험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지원 내용

- 보험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3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하나보험	5일	개별 구매처에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e조보험	15일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포괄어음보험	15일	포괄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 심사·평가내용 |

-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보험인수구매자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가입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



궁금해요! 중기맨

-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 ☞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 보험금 지급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 매출채권

-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 보험가입 매출채권

-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 보험금액

-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3-7 Job Cloud

| 「일자리 중심의 참조경제」 지원을 위한 신보 Job 매칭 서비스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난과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우수 중소기업 분류 : Value Star, Main Biz, 좋은 일자리, 유망창업기업
- 대학(희망사다리 장학생 포함), 특성화고 인력이 연계되도록 채용 사이트 운영, 채용오디션 개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시행

지원 대상

- 신보 선정 우수 중소기업 채용전문 사이트
 - 기업가치 및 신용도 우수기업인 Value Star 기업, 신보선정 좋은 일자리 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Main-Biz 기업 외에 유망창업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

지원 내용

- 채용 정보 등록 시 워크넷 자동 연계
- Job Cloud를 통해 인력 채용 시 고용창출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및 보증료 할인
- 현장 면접 참가 시 부스사용료, 참가비 등 전액 무료

사이트주소

www.kodit.co.kr 접속 후 '잡매칭 바로가기' 클릭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 053-430-449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8 창업지원제도

| 희망창업아카데미(창업교육부문)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론에서 실무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수강 후 실제 창업 시 창업보존, 창업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창업 아이템을 갖추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가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 및 지식창업(예정)자 우대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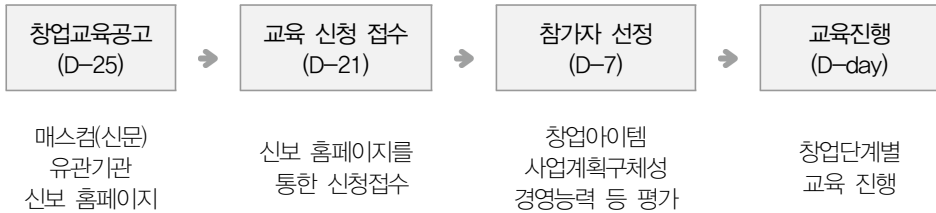
구 분	예비창업과정	창업초기과정
교육대상	창업 아이템을 갖추고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 대표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이론과 실습 병행 ■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창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샵 형태의 참여형 교육 ■ 멘토링이 병행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 정신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습 ■ 창업지원제도 활용 ■ 창업세무 ■ 창업기업 마케팅 전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모델링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습 ■ 창업세무 ■ 고객 설득 기법 ■ 수익창출 영업전략 등
교육시간	3일 24시간 내외	2일 16시간 내외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교육 시작 3주 전부터 선착순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 아이템, 사업계획의 구체성, 경영능력 등 평가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 053-430-4498
- www.kodit.co.kr 접속 후 '경영지원-희망창업아카데미' 클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04

기술보증기금

- 4-1 2015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176
- 4-2 기술보증 / 177
- 4-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 180
- 4-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183
- 4-5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 187
- 4-6 전자상거래보증 / 190
- 4-7 유동화회사보증 / 192
- 4-8 R&D 보증 / 195
- 4-9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200
- 4-10 지식재산(IP) 보증 / 203
- 4-11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 207
- 4-12 문화산업완성보증 / 210
- 4-13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214
- 4-14 기술평가 / 218
- 4-15 벤처확인평가 / 222
- 4-16 이노비즈 인증평가 / 226
- 4-17 기술이전 및 M&A / 230
- 4-18 녹색인증평가 / 233
- 4-19 보증연계투자 / 250
- 4-20 경영개선지원제도 / 253
- 4-21 재기지원보증제도 / 256

4-1

2015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

'15년도 총보증 규모는 '14년도 대비 8천억원이 증가한 19.5조원(유동화회사보증 9천억원 제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원 규모 19조 5천억원(유동화회사보증 9천억원 제외)

* '14년 지원현황(11월말) : 19.2조(유동화회사보증 9천억원 제외)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보증규모*	187,000	192,218	195,000	8,000
총보증공급	182,000	179,786	190,000	8,000
신규보증	45,000	45,334	50,000	5,000

* 보증규모는 보증잔액 기준(유동화회사보증 제외)

* * 2015년 계획은 유동화회사보증 제외

〈신성장동력산업, R&D 및 기술창업기업 지원 강화〉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52,000	55,905	56,000	4,000
R&D 활성화	24,000	28,096	30,000	6,000
기술창업기업	73,000	84,316	78,000	5,000

* 2014년 계획은 유동화회사보증 제외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영실 051-606-7473

4-2 기술보증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 규모 보증잔액 19.5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9조원 제외)

* '14년 지원규모(11월말) : 19.2조원 (유동화회사보증 9천억원 제외)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국번없이 1357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기금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 기금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4-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 예측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1,100억원

지원 대상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창업 및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예비창업자
-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예비창업자 등

지원 내용

주요내용	우대사항
▶ 창업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창업 즉시 창업자금 지원,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증비용 우대(전액보증) • 보증료 0.5%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 평가료 면제 등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기초로 아이디어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 결정
↓		
창업멘토링	영업점 평가담당자	▶ 창업자금 지원이 결정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 등 창업정보 제공
↓		
창업	예비창업자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창업기업의 업종, 기술사업계획 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당초 결정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만 당초 결정된 창업자금을 보증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7조 8,000억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우대보증	▷ 창업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 특성별로 구분된 7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이공계 챌린저창업, 40·50창업, 1인창조기업 창업, 첨단뿌리산업창업, 지식재산권창업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5%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창업보증은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 가산지원(2억원 이내) * 특히 30백만원, 특허출원 20백만원 등 	
청년창업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0.3% 고정

신청 ·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 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맞춤형창업성장의 7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녹색성장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식문화창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인 기업
40·50창업	대표자가 만40~55세 이하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대표자 1인 영위기업으로,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
첨단뿌리산업창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영위기업
지식재산권창업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거나 1년 이내 사업화 예정인 기업

4-5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녹색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작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원 규모 | 일자리창출기업보증 4.1조원

* '14년 지원현황(11월말) :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38,457억원,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 2,635억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일자리 창출기업 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과 비교시 10% 이상 또는 20인 이상 고용증가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또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지원) 지원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기업* <p>* 일자리 창출효과와 관련이 깊은 업력, 업종, 고용실적, 기술성, 미래성장가능성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일자리창출평가표 평가 결과 3개 이상 항목 충족 기업</p>
고용창출 특별운전 자금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보증 지정 • 보증료 0.2%~0.4% 감면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신규고용 1인당 3~5천만원씩 최대 3억원(10인)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보증료를 적용 (1.0%)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국번없이 1357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의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신규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5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4-6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보증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규모 7,000억원

* '14년 지원현황(11월말) : 7,703억원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 보증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대출, B2B일반자금대출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구 분	전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	50억원(담보보증 70억원)	30억원
보증료	기준보증료율에서 0.2% 할인	0.5% ~ 3.0%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는 '기술보증'과 동일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국번없이 1357 (www.bizinfo.go.kr)

4-7 유동화회사보증

| 유동화증권에 기보가 보증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를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기보가 보증하여 시장에 매각 후 조달된 자금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방식의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차환 1,000억원)

* '14년 지원현황(11월말) : 178개 기업에 2,491억원 지원, 업체당 평균 14.0억원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력과 신용도가 양호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 (이하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기술사업자가 아닌 기업
- 감사의견이 "부정정" 또는 "의결거절"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 기타 기금 내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도취약기업 등

지원 내용

● 지원조건

구 분	만기	비 고
회사채*	3년 (차환은 2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방식 (1년 10%, 2년 10%, 3년 80%) 중 선택가능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및 상장 심사중에 있는 기업

* 기술평가재무등급에 따라 차등 결정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금리는 기업·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 최저 선정기준

구 분	기술사업평가등급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중견기업*	BB등급 이상	BB-등급 이상
중소기업	BB등급 이상	-

* 중견기업은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신용평가사 회사채등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행가능

● 발행한도

■ 같은 기업당 중견기업 250억원, 중소기업 150억원 이내에서 평가등급 및 포트폴리오 발행 기준에 따라 한도 차감

* 포트폴리오 구성기준에 따라 발행이 제외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 1% 인수

신청·접수

‘15년도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예정)

- 거래 영업점 또는 사업장 인근 영업점에 신청
- 상담은 인터넷 신청, 영업점 방문신청 또는 영업점 전화신청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4-8 R&D 보증

| 중소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R&D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개발 및 사업화연계 R&D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 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맞춤형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000억원

* '14. 11월 8,092건, 28,096억원

지원 대상 R&D 개발·사업화를 추진중인 중소기업 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사업화 준비,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개발단계 및 사업화준비단계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종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 개업비, 창업비, 신주발행비, 법인설립비용 등 - (기술개발자금) 인건비 등 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 기자재 구입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건설·운전비 등
사업화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신청기술이 개발완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과제 •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 자금

- 최근 3년 이내 정부 등 R&D과제를 성공한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5년 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R&D성공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R&D과제성공판정표에 의해 성공판정 받은 과제 또는 최근5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5.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4-9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지원 규모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업체당 10억원)

* '14.11월 지원현황 : 855건, 1,494억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KTRS 또는 KTRS-SM에 따라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경우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백만원 지원(업체부담금은 20만원)

- (대상자금)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 운전자금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장개척자금)
 -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5.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 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특허권만 보증 대상이며, 이는 보증취급과 동시에 반드시 담보(근질권)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10

지식재산(IP) 보증

|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와 보증을 연계하여 IP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업체당 최대 50억원)

* '14.11월 지원현황 : 1,468건, 2,716억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및 인수자금 보증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우수 지식재산(IP)'와 일반 지식재산(IP) 사업화 기업으로 구분 운용

'우수 지식재산(IP)' 사업화기업	'일반 지식재산(IP)' 사업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 신청기술의 추정가치금액이 5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등급 B 이상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기업은행, 국민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5백만원)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 창업후 7년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5.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 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 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 우수 지식재산(IP) 사업화 기업의 경우 'BBB' 이상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증기맨

-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용어설명

-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신상표권 등	프랜차이징,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 그 밖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한 미등록 지식재산(IP)		

4-11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 융합(완료)기술의 개발사업화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기술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혁신형 중소기업을 금융 지원하는 제도로, 융합 단계별 소요자금에 대하여 지식재산(IP) 인수보증, 기업인수보증, R&D보증, 지식재산(IP) 평가보증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8,000억원

* '14년.11월 1,780건, 6,561억원

지원 대상 기술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융합 진행·완료 여부에 따라 '기술융합개발보증'과 '기술융합사업보증'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 기술융합연계보증
 - (대상기업) 기술융합 진행(기술도입연구개발)중인 기업
 - 기술도입, 연구개발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술도입자금, 연구개발자금, 시제품 제작자금 등을 지식재산(IP)인수보증, 기업인수보증, R&D보증(개발, 사업화준비단계)을 활용하여 지원

● 기술융합사업보증

- (대상기업) 기술융합 완료 후, 사업화·양산중인 기업
- 융합이 완료된 융합제품의 양산을 위한 자금을 일반 기술평가보증, 지식재산(IP) 평가보증으로 지원

신청·접수 '15. 1. 1 ~ 12. 31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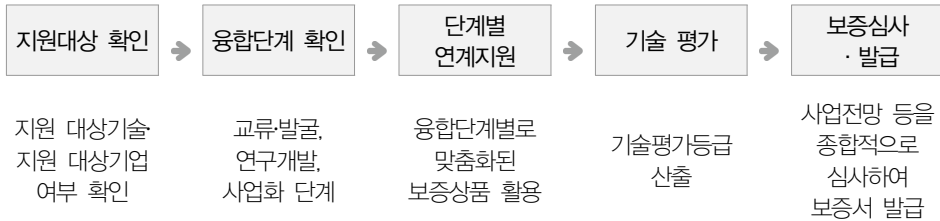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융합의 진행 및 완료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판단기준이 있나요?
 ☞ 보증 상담·신청시 융합 연관성을 검토하여 융합 진행중인 기업은 '기술융합인정표' 충족여부로, 융합제품 양산중인 기업은 '융합판별표' 충족 여부로 판단



용어설명

- 기술·산업융합 : 과학기술 및 인문학, 사회학 등 분야에 있어 산업간 기술산업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기존 기술(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기술(산업)을 창출하는 활동

4-12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상품(콘텐츠)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제도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600억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문화상품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

-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최대 보증지원 금액 최대 보증지원 금액 (아래 항목 모두 충족)
 - 프로젝트당 30억원 이내(고부가콘텐츠, 한류콘텐츠는 50억원 이내)
 - * 고부가콘텐츠 :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콘텐츠
 - * 한류콘텐츠 :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보증금액 결정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A 이상	60% 이내	- 고부가서비스관련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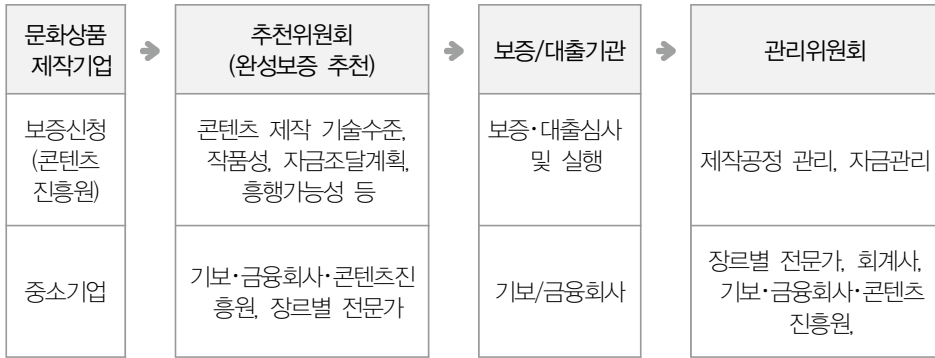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신청·접수 연중 수시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61-900-6490)
- 기술보증기금 서울영업본부 문화산업완성보증팀(02-3215-5999)
 - 완성보증이 5억원 이하이거나, 방송용 콘텐츠(드라마, 예능 및 애니메이션 등)인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심의추천절차 생략가능한 경우에는 기금에 직접신청 가능

운용 체계



* 추천위원회 심의·추천절차 생략가능한 경우 기금에 직접신청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영업본부 문화산업완성보증팀(02-3215-5999)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61-900-6490)



궁금해요! 증기맨

-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관광부와 수출입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 선판매계약서 : 제작사와 구매자(배급사, 퍼블리셔 등)간 제작완성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화콘텐츠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달리 운용

4-13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제도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기업
 - 고부가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작코자 하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영위 중소기업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프로젝트 수행역량을 중심으로 단위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증심사, 프로젝트 순주기의 제작자금을 지원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 지원 가능
- 최대 보증지원 금액 (아래 항목 모두 충족)
 - 같은기업당 최고 70억원(유통공급계약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아래의 항목 중 제일 작은 금액
(총제작비의 60%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총제작비 지원비중을 적용한 운전자금 보증지원가능금액
 - ③ 총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용역공급계약금액 중 선수금등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른 총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공급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반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신청·접수

‘15.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파일 업로드,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상담 ↓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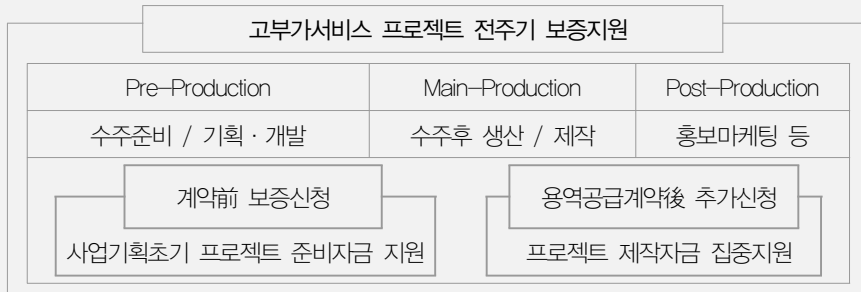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제3자와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획단계에서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용역공급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산업
(예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에 의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영위 하는 산업
(예시)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공연기획업 등

4-14 기술평가

|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기술성 · 시장성 · 사업성 등을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기술을 보유한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평가 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평가신청 제한기업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중에 있는 경우 등

기술평가 종류 및 지원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기술신용등급 산출을 위한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신청·접수

‘15.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기타목적용)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용어설명

- 기술가치평가 :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
-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

4-15 벤처확인평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 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벤처확인 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1)

벤처확인 평가유형 및 조건

벤처유형	벤처 요건
기술평가 보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보증이 불필요한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만으로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평가료 및 수수료

구 분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후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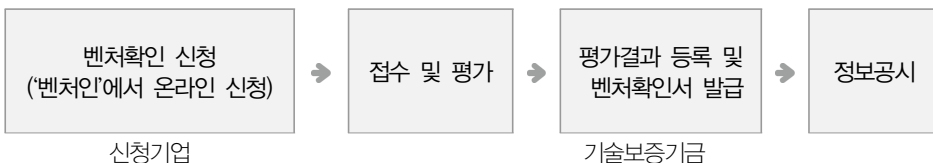
신청·접수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제출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 벤처인 홈페이지(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 1577-027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32	이동 음식점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희 주점업
	56212	무도유희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캠블링 및 베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접수 및 유사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4-16

이노비즈 인증평가

| 『중기청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 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2)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후 3년이상이고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평가료

-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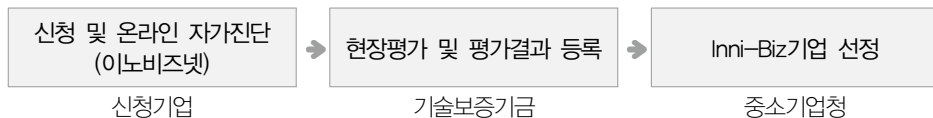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제출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기술사업계획서는 이노비즈넷 홈페이지(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031-628-965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증기맨

- 이노비즈 실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용어설명

- 이노비즈 기업 <오슬로 매뉴얼>에 의한 2단계에 걸친 혁신성 평가를 통과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Inno-Biz 인증을 받은 핵심 기업군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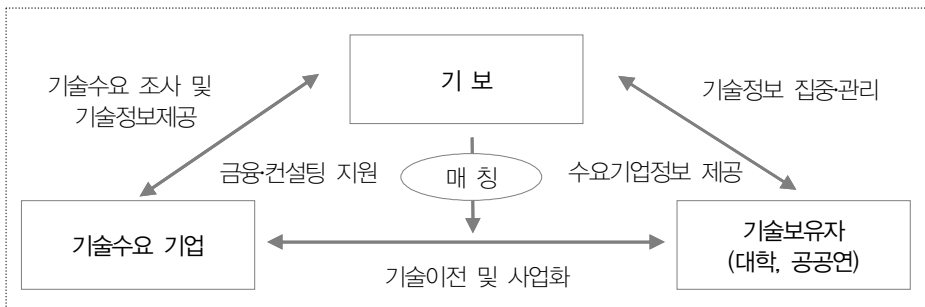
[별표 2]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32	이동 음식점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희 주점업
	56212	무도유희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갠블링 및 베테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모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접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4-17 기술이전 및 M&A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M&A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거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 중개자로서 기술보유자, 기술수요자간 기술거래 알선 및 협상과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학, 연구소 등의 보유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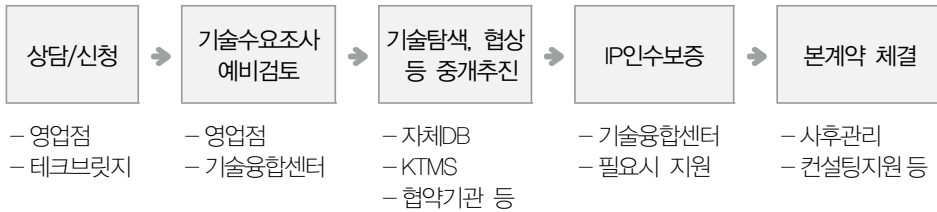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기술 공급자(기관) 및 신청기업간 기술이전 교섭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신청·접수 '15.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 * 기보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 * 양식은 기보 테크브릿지(tb.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전국 모든 영업점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을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융합센터)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형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기간,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융합센터)
 - IP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기보 기술융합센터)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융합센터 및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용어설명

-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 IP인수보증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IP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4-18

녹색인증평가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관련 평가기관으로서 녹색 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녹색기술, 녹색제품확인,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대상을 구분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확인	녹색전문기업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85개 중점분야) 유망기술	녹색산업설비 및 기반 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 및 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 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신소재 제외) 105개 사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15. 1. 1 ~ 12. 31 상시 접수

-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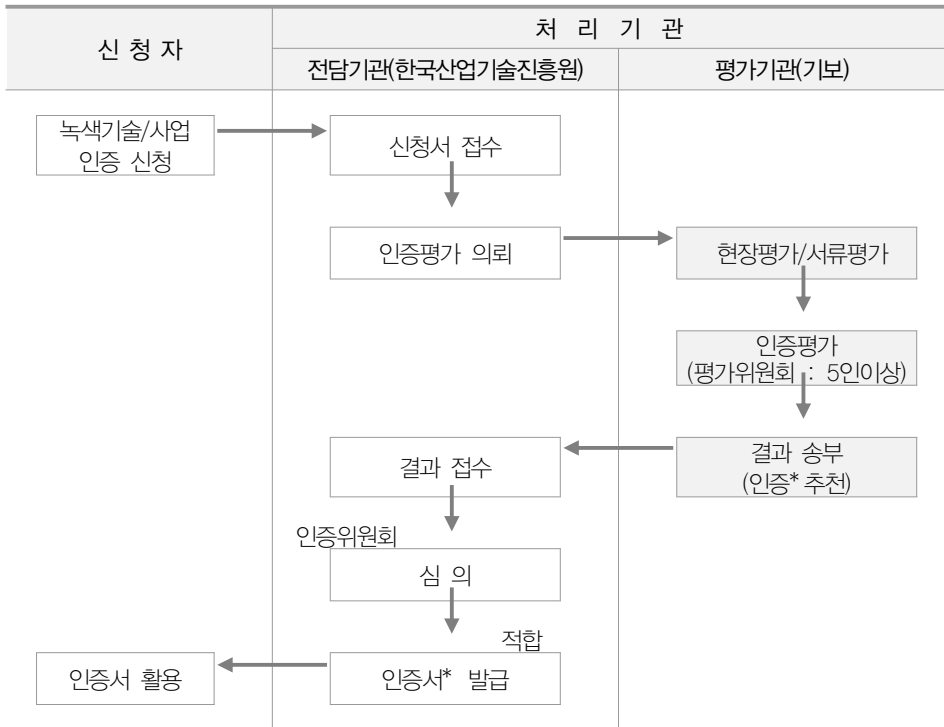
신청 서류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제품확인	녹색전문기업확인
1. 신청 기술 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 신청 사업 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 신청 사업 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 매출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신청양식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발급을 전담하고 인증평가업무는 기보 등 지정된 평가기관에서 담당
 - 전담기관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녹색인증(전문기업 확인포함) 신청을 일괄접수 후 소관 부처 지정 평가기관에 평가의뢰
 - * 녹색인증에 대한 심의·의결 등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회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증평가 수행



*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의 경우 평가기관에서(현장·서류평가 및 평가위원회 개최생략) 확인 검토 실시후 추천하며 전담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음영부분 기술만 기보 평가대상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 에너지	01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결정계 태양전지 및 모듈	T010102
		03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기기	T010105
	02 연료전지	01 건물용PEMFC(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PEMFC(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PEMFC(시스템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PEMFC(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PEMFC(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핵심소재)	T010206
		07 분산발전용 MCFC(핵심부품기술)	T010207
		08 분산발전용 MCFC(시스템보조기기(BOP))	T010208
		09 분산발전용 MCFC(시스템및시스템양산제조기 술)	T010209
		10 건물용SOFC (구성요소 및 스택)	T010210
		11 건물용 SOFC (관련 BOP)	T010211
		12 건물용 SOFC (시스템)	T010212
	03 풍력	01 풍력발전 시스템 요소부품	T010301
		02 풍력발전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T010302
		03 해상풍력	T010303
		04 풍력발전시스템	T010304
	04 IGCC(석탄/중질 잔유 복합발전)	01 가스화공정	T010401
		02 합성가스정제 및 개질	T010402
		03 합성가스 이용 플랜트	T010403
	05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01 바이오에탄올	T010501
		02 바이오부탄올	T010502
		03 바이오디젤	T010503
		04 바이오가스	T010504
		05 BTL (Biomass to Liquid)	T010505
		06 바이오 오일 연료	T010506
		07 식물성 기름 연료	T010507
	06 해양에너지	01 조력발전	T010601
02 조류발전		T0106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3 파력발전	T010603
		04 해수온도차 이용	T010604
	07 태양열	01 태양열 활용기기 기술	T010701
		02 태양열 소재 및 재료 기술	T010702
		03 중저온 태양열활용시스템기술	T010703
		04 고온 태양열활용시스템기술	T010704
	08 지열	01 지열냉난방기술	T010801
		02 심부지열 개발기술	T010802
		03 심부지열 활용기술	T010803
02 탄소저감	01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01 연소후 CO2 포집플랜트	T020101
		02 연소전 CO2 포집플랜트	T020102
		03 연소중 CO2 포집플랜트	T020103
		04 CO2 압축플랜트	T020104
		05 CO2 저장플랜트	T020105
		06 CO2 수송플랜트	T020106
		07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플랜트	T020107
	02 Non-CO2 온실가스 처리	01 환경기초시설발생 메탄이용/저감기술	T020201
		02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T020202
		03 불화가스 저감	T020203
		04 N2O 저감	T020204
	03 원자력	01 원자력노심 재료 및 핵연료	T020301
		02 원전 계통 및 안전	T020302
		03 원전제어계측기술	T020303
		04 원전성능향상	T020304
		05 원전환경	T020305
		06 방사화학/악티나이드 화학	T020306
		07 SMART	T020307
		08 수출맞춤형 연구로	T020308
	04 에너지저장	01 니켈-금속수소전지	T020401
		02 리튬이온전지	T020402
		03 리튬이온폴리머전지	T020403
		04 나트륨-황(NaS)전지	T020404
05 레독스플로우(RedoxFlow) 전지		T020405	
06 초고용량 커패시터		T02040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7 리튬이온 커패시터	T020407
		08 BMS(Battery Management System)기술	T020408
	05 청정연료	01 석탄가스화	T020501
		02 석탄가스 정제	T020502
		03 석탄가스 액화	T020503
		04 천연가스 리포밍	T020504
		05 천연가스 유래 FT합성	T020505
		06 육상용 GTL 통합공정	T020506
		07 해상 GTL-FPSO 통합공정	T020507
		08 GTL FPSO 핵심기자재	T020508
		09 SNG 합성	T020509
		10 DME-메탄올 합성	T020510
		11 천연가스 유래 MeOH 합성	T020511
		12 천연가스 유래 DME 합성	T020512
		13 Upgrading 공정	T020513
	06 히트펌프	01 전기구동 히트펌프(EHP)	T020601
		02 열원구동 히트펌프(AHP)	T020602
		03 가스구동 히트 펌프(GHP)	T020603
	07 신광원 고효율 조명	01 실내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T020701
		02 풀칼라 LED 감성 조명기기	T020702
		03 실외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T020703
		04 무전극 램프	T020704
		05 고효율HID램프	T020705
		06 CNT 조명	T020706
		07 OLED 조명	T020707
		08 지능형 조명시스템	T020708
	08 소형열병합	01 스팀링엔진 열병합발전기술	T020801
		02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T020802
		03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T020803
	09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공정 고효율화	01 시멘트 제조공정 고효율화기술	T020901
		02 제철 제조공정 고효율화기술	T020902
		03 제지 제조공정 고효율화기술	T020903
		04 공업로 고효율화기술	T020904
		05 건조기 고효율화기술	T020905
		06 보일러 고효율화기술	T020906
		07 전동기 고효율화기술	T02090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8 조명기기 고효율화기술	T020908
		09 냉난방기기 고효율화기술	T020909
		10 가전기기 고효율화기술	T020910
	10 핵융합	01 KSTAR	T021001
		02 ITER	T021002
		03 핵융합 실증로 노심 및 계통	T021003
		04 핵융합 실증로 재료	T021004
		05 핵융합 실증로 핵심장치	T021005
		06 핵융합 실증플랜트 종합 설계	T021006
		07 핵융합 실증플랜트 건설 및 시운전	T021007
		08 핵융합 실증플랜트 인허가 및 안전	T021008
		09 핵융합 실증플랜트 운전 보수유지	T021009
03 첨단수자원	0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01 하천환경 조사/평가	T030101
		02 홍수터 보전·복원	T030102
		03 자연친화적 하도 조성	T030103
		04 생물서식환경 조성	T030104
	02 담수 플랜트	01 차세대 해수담수화 하이브리드 플랜트	T030201
		02 신재생 담수플랜트	T030202
	03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01 홍수방어 시설	T030301
		02 홍수 대응·관리 시스템	T030302
		03 물부족 대응 시스템	T030303
		04 기후변화 평가·예측·적응	T030304
		05 가뭄·홍수예측 및 피해저감	T030305
	04 통합수자원관리	01 IT/GIS 기반 수자원 정보시스템	T030401
		02 유역 물 해석	T030402
		03 수자원 평가 및 관리	T030403
	05 수계 수질 평가/관리	01 인공위성 활용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1
		02 지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2
		03 상·하수 관망 유량/오염도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3
		04 오염 하천 정화	T030504
		05 유해물질 위해성 센싱시스템	T030505
	06 해양수자원	01 해양용존 리튬	T030601
		02 심층수	T030602
	07 고효율 농촌수자원	01 농업용수고도이용	T030701
		02 농업수리시설개선	T030702
		03 농업용수관리시스템	T030703
		04 청정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	T030704
	08 고도 수처리	01 하·폐수 처리 기술	T030801
		02 하·폐수 재이용 기술	T0308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4 그린IT		03 이산화탄소 저 발생 수처리 기술	T030803	
		04 빗물 이용 장치	T030804	
		05 지능형 분리막 및 장착 시스템	T030805	
		06 정수기술	T030806	
	09 누수방지 및 절수		01 상하수도관망 누수방지 기술	T030901
			02 물 수요관리 및 절수기술	T030902
	01 LED		01 RGB LED 칩	T040101
			02 LED 패키지	T040102
			03 차세대 LED 제조장비	T040103
			04 수송용 LED 광원 모듈	T040104
			05 의료/바이오/환경 LED 광원모듈	T040105
			06 디스플레이 LED 광원모듈	T040106
	02 시스템 반도체		01 정보통신/가전 반도체	T040201
			02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T040202
			03 임베디드 메모리 반도체	T040203
			04 바이오 반도체	T040204
	03 차세대 디스플레이		01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T040301
			02 OLED 조명	T040302
			03 친환경 초절전 LCD	T040303
			04 친환경 초절전 PDP	T040304
			05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전자종이 등)	T040305
	04 그린 SW & 솔루션		01 IT기기 에너지 절감 솔루션	T040401
			02 가상화 SW	T040402
			03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최적화기술	T040403
04 전동기제어솔루션			T040404	
05 전자문서관리			T040405	
06 전자문서 디지털 디바이스			T040406	
05 그린 컴퓨팅		01 그린컴퓨팅 하드웨어기술	T040501	
		02 그린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T040502	
		03 그린클라우드 컴퓨팅기술	T040503	
		04 그린컴퓨팅 인프라기술	T040504	
06 그린 임베디드 SW		01 정보기기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T040601	
		02 모바일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T040602	
		03 초소형 운영체제 플랫폼	T040603	
		04 임베디드 SW 개발도구	T04060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5 CPS(Cyber Physical System) 컴퓨팅 플랫폼	T040605
	07 차세대 센서 네트워크	01 개별물품 인식 RFID	T040701
		02 광역 USN 통신시스템	T040702
		03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T040703
		04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T040704
		05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T040705
	08 Digital 선박	01 선박내 정보인프라 시스템	T040801
		02 선박용 이동/위성통신시스템	T040802
		03 e-navigation 기반 운항정보 시스템	T040803
	09 스마트그리드	01 스마트변전시스템	T040901
		02 스마트송전시스템	T040902
		03 AMI시스템	T040903
		04 스마트배전시스템	T040904
		05 DC/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T040905
	10 차세대 이차전지	01 초소형 박막 이차전지	T041001
		02 플렉서블 이차전지	T041002
		03 고체 전해질 전지	T041003
		04 리튬공기전지	T041004
	11 디지털방송	01 디지털 방송 전송 기술	T041101
		02 디지털 방송 측정 기술	T041102
		03 디지털 방송 요소기술	T041103
		04 디지털 방송 서비스 기술	T041104
		05 차세대 실감방송	T041105
	12 무선통신	01 이동통신	T041201
		02 TRS 통신	T041202
		03 LBS	T041203
		04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T041204
		05 해상/항공/위성 무선통신	T041205
	13 방송통신네트워크	01 초고속 네트워크	T041301
		02 홈 네트워크	T041302
		03 인터넷데이터 센터(IDC)	T041303
	14 전자파	01 전파응용	T041401
		02 전파자원 활용 기술	T041402
		03 전파기반	T04140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15 콘텐츠 제작 및 응용 녹색기술	01 영상뉴미디어 콘텐츠	T041501
		02 가상현실콘텐츠	T041502
		03 공연전시 콘텐츠	T110203
05 그린차량· 선박	01 그린카	01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T050101
		02 클린디젤 자동차	T050102
	02 저공해 고효율 차량	01 온실가스/배출가스 저감형 자동차	T050201
		02 신재생/저탄소연료/ 대체연료 자동차	T050202
	03 그린농기계	01 농작업기계	T050301
		02 농용 트랙터	T050302
	04 WSE Ship	01 미래형 친환경 선박	T050401
		02 해양플랜트	T050402
		03 친환경 레저 보트	T050403
	05 첨단 철도	01 첨단철도용 에너지 저감 및 공급기술	T050501
		02 첨단철도 친환경기술	T050502
		03 첨단차량/ 부품 설계기술	T050503
		04 차상/지상 신호시스템 기술	T050504
		05 궤도토목 기술	T050505
	06 그린자전거	01 고부가가치형 경량자전거	T050601
	07 고효율 해상물류	01 물류시스템 계획 및 설계	T050701
		02 물류시설 및 장비	T050702
		03 물류운영 및 관리	T050703
	08 해사안전	01 해상교통안전	T050801
		02 해양인적안전	T050802
		03 해양안전관리	T050803
06 첨단그린 주택도시	01 U-City	01 U-City 통합운영센터	T060101
		02 U-City 운영관리	T060102
		03 U-City 스마트그리드	T060103
		04 Eco-Road 조성	T060104
		05 도시 물순환 통합관리	T060105
		06 U-Eco 공간구성 컴포넌트	T060106
		07 U-Eco 공간구축	T060107
	02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01 U-교통 서비스 기반	T060201
02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T0602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3 Smart Highway	T060203
	03 GIS(공간정보)	01 실시간 능동형 국토 공간시스템	T060301
		02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시스템	T060302
		03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T060303
	04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01 고효율 외피시스템	T060401
		02 저탄소 친환경 건축자재	T060402
		03 고효율 설비시스템	T060403
		04 농촌환경 농가주택	T060404
07 신소재	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01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T070101
		02 고기능 마그네슘 주조재	T070102
		03 고성형 마그네슘 판재	T070103
		04 고강도 마그네슘 형재	T070104
		05 고효율 마그네슘 융합소재	T070105
	02 Ionic Liquid 소재	01 전해질 소재	T070201
		02 분리정제 소재	T070202
		03 그린촉매공정 소재	T070203
		04 마찰저감 소재	T070204
	03 나노탄소융합소재	01 탄소나노튜브(CNT)	T070301
		02 흑연 나노섬유(GNF)/탄소 나노섬유(CNF)	T070302
		03 탄소섬유	T070303
		04 복합소재	T070304
	04 기능성 나노필름	01 광학용 나노필름	T070401
		02 열응용 나노필름 및 소재	T070402
		03 에너지변환 나노필름(농업용필름 포함)	T070403
	05 농산자원유래 천연소재	01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T070501
		02 기능성 화장품 소재	T070502
		03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	T070503
		04 천연식품첨가물	T070504
		05 항생제 대체 천연 사료첨가제	T070505
	06 친환경 농자재	01 작물보호 관리 자재	T070601
		02 토양개량/작물생육 자재	T070602
	07 희토류자성소재	01 Nd계 희토류 소결자석소재	T070701
		02 Nd계 희토류 본드자석소재	T070702
	08 고풍성 알루미늄 소재	01 친환경 알루미늄 원소재	T070801
		02 고기능 알루미늄 주조재	T0708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3 고성형 알루미늄 판재	T070803	
		04 고강도 알루미늄 형재	T070804	
		05 고품위 알루미늄 재생 소재	T070805	
	09 그린섬유 소재	01 자원활용 친환경 녹색섬유소재	T070901	
		02 에너지저감형 녹색섬유소재	T070902	
	10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01 대구경 사파이어 단결정	T071001	
	11 압전하베스팅 소재	01 나노기반 압전하베스팅	T071101	
		12 해양생명공학	01 해양유래신소재	T071201
			02 해양생물공정	T071202
		13 바이오의약	01 단백질의약품	T070101
			02 치료용항체	T070102
03 백신			T070103	
04 유전자의약품			T070104	
05 재생의약품	T070105			
06 천연물의약품	T070106			
08 청정생산	01 국제환경규제대응	01 유해물질 대체	T080101	
	02 무오염생산	01 유니 소재	T080201	
		02 그린프린팅 제품	T080202	
		03 그린 프로세스(E2) 제품 E2 : Ecological and Economical	T080203	
		04 무배출 그린생산	T080204	
		05 청정융합	T080205	
	03 자원순환	01 자원순환(HM2, Hidden Materials Mining)	T080301	
		02 재제조(Remanufacturing)	T080302	
		03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생태산업단지)	T080303	
	04 해양광물자원	01 바다모래 채취기술	T080401	
09 친환경 농식품	01 생태환경변화대응	01 식량자원 LC(Life Cycle Inventory) 구축	T090101	
		02 농업환경	T090102	
		03 어업환경	T090103	
		04 산림환경	T090104	
		05 재해·질병 방제	T090105	
	02 생물자원	01 유전자원	T090201	
		02 신품종	T090202	
	03 저투입생산	01 대체에너지 이용	T090301	
		02 LED 이용	T0903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10 환경보호 및 보전	04 첨단자동화 시스템	03 친환경생산	T090303
		01 작업용로봇	T090401
		02 동식물공장시스템	T090402
		03 어업(양식)자동화	T090403
		05 식품생산	01 유기식품
		02 저에너지/저탄소 식품	T090502
		03 에너지절약형 가공기술	T090503
	06 안전유통	01 검역시스템	T090601
		02 품질관리시스템	T090602
		03 냉각시스템	T090603
		04 저장·포장재	T090604
		05 에코주방시스템	T090605
	01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01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T100101
		02 지구시스템 모델링	T100102
		03 탄소수지 정량화	T100103
	0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01 기후변화영향 감시	T100201
		02 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	T100202
		03 기후변화 적응	T100203
		04 기후변화 모니터링	T100204
	03 폐기물 및 폐자원	01 폐기물/자원 회수/처리	T100301
02 폐기물/자원 재활용		T100302	
03 폐기물 저감		T100303	
04 유기성 부산물 에너지/자원화	01 폐목재 바이오매스	T100401	
	02 하수슬러지/음식쓰레기	T100402	
	03 가축분뇨	T100403	
	04 농수산 부산물	T100404	
05 친환경제품	01 친환경 원부자재	T100501	
	02 환경친화성 첨가제	T100502	
	03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T100503	
06 생태계 보전 및 복원	01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T100601	
	02 인간 활동에 대한 생태영향 평가	T100602	
	03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관리	T100603	
	04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복원	T100604	
07 유해성 물질	01 에코 실내 환기설비	T100701	
	02 건물 공조용 공기정화설비	T1007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03 기능성 건축자재	T100703
		04 유해성물질 측정 센서	T100704
		05 유해성물질 측정기	T100705
		06 실내환경 진단/개선	T100706
		07 악취/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설비	T100707
		08 유해 대기오염물질 제어/관리 기술	T100708
	08 기상관측장비/ 예보	01 상층관측	T100801
		02 지상관측	T100802
03 원격탐사		T100803	
04 예보시스템		T100804	

[별표 2]

인증대상 녹색사업

(음영부분 기술만 기보 평가대상임)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01 태양에너지 개발·보급·활용	P010100
	02 풍력(해상·육상)에너지 보급	P010200
	03 연료전지 개발·보급	P010300
	04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플랜트 건설·운영	P010400
	05 바이오연료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P010500
	06 목질계/에너지작물 개발·보급	P010600
	07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연료 포함) 및 해양자원 보급·이용	P010700
	08 신재생에너지용 해양공간 조성	P010800
	09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P010900
	10 소각열 회수 재이용	P011000
	11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운영	P011100
	12 매립가스 자원화	P011200
	13 지열에너지 개발·보급·활용	P011300
02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01 CO2포집·저장·활용플랜트설치·운영	P020100
	02 온실가스 저감 실증 플랜트 조성	P020200
	03 Non-CO2배출저감	P020300
	04 도시기반 복합형 에너지 플랜트 설치·운영	P020400
	05 탄소저감을 위한 원자력 이용	P020500
	06 청정연료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P020600
	07 신광원 고효율 조명시스템 개발·보급·활용	P020700
	08 열병합발전 시스템 플랜트 설치·운영	P020800
	09 에너지다소비 산업(제철, 제지, 시멘트)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P020900
03 첨단수자원 개발·처리· 관리 사업	01 해수 담수화	P030100
	02 공공 지하수 개발 및 함양	P030200
	03 우수 유출 저감 및 저류시설	P030300
	04 우수 수집·정화·이용시설 설치	P030400
	05 대하천 홍수 조절지 건설	P030500
	06 환경친화형 중소규모 댐 건설	P030600
	07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운영	P030700
	08 상수도 개발 및 관리	P030800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04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09 첨단 광역 상수도 망 공급	P030900
	10 고효율 하·폐수처리 및 재이용 플랜트 건설운영	P031000
	01 스마트그리드 도입·확산	P040100
	02 LED 응용·보급·확산	P040200
	03 RFID/USN 응용·보급·확산	P040300
	04 친환경·초절전 디스플레이(OLED 포함) 응용·보급·확산	P040400
	05 고효율 그린 IDC 전환·구축·보급 확산	P040500
	06 EMS(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P040600
	07 원격협업시스템·스마트워크센터 구축	P040700
	08 디지털 방송 제작·보급·확산	P040800
	09 무선통신 서비스·인프라·구축	P040900
	10 방송통신네트워크 서비스·설치·인프라·구축	P041000
	11 전자파 서비스·설치·인프라·구축	P041100
	12 실감형 3D/4D 콘텐츠 보급·확산	P041200
13 가상 서비스 보급·확산	P041400	
14 e-book 콘텐츠 보급·확산	P041500	
05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01 친환경 그린카 보급	P050100
	02 그린카 지원인프라(충전, BD주유소 등) 구축	P050200
	03 친환경 자전거 이용기반(도로망, 공용운용시스템 등) 구축(*)	P050300
	04 차세대 첨단도로 구축	P050400
	05 차세대 고속철도 시스템(인버터형 전기기관차 포함) 구축	P050500
	06 도시형 경량철도 시스템(무가선 저상트램, 자기부상열차, 고무차륜 등 포함) 구축	P050600
	07 대도시권 교통체계(환승시설, 급행버스체계, 지하교통망 포함) 구축	P050700
	08 U-GIS 도시 인프라 구축	P050800
	09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P050900
	10 운행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P051000
06 첨단 그린주택·도시기반사 설 보급·확산 사업	01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	P060100
	02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초고층 빌딩 포함) 산개축	P060200
	03 청정에너지 이용 주택 건축,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P060300
	04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	P060400
	05 실내 주거환경 개선	P060500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06 도시재생(친환경 건축물 해체, 건축물 및 단지 녹화, 신한옥단지 조성 포함)	P060600
	07 U-City 통합 운영센터 구축	P060700
	08 U-Eco 공간 및 시설 구축	P060800
	09 에너지 자립형 마을(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P060900
	10 녹색도시 조성	P061000
07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01 기업간 용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	P070100
	02 기업간 에너지 교환망 (폐열 재이용) 구축	P070200
	03 산업단지-지역사회 에너지 교환망 구축	P070300
	04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구축	P070400
	05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구축	P070500
	06 지역에코혁신 구축	P070600
	07 그린오션기술이전 및 보급체계 구축	P070700
	08 폐금속자원 재자원화 체계 구축	P070800
	09 재제조 시스템 구축	P070900
0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공급 사업	01 유기농축산물 기반구축생산가공	P080100
	02 밀폐형 청정 동식물 생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P080200
	03 지속가능한 식품클러스터 기반 구축	P080300
	04 에너지절감 농업생산 시스템	P080400
	05 마을/온실용 지역난방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활성화	P080500
	06 농지/농업용수 정화 및 관리	P080600
	07 가축분뇨/농산부산물 가공 및 재활용	P080700
	08 에너지 절감형 어선시스템 생산 및 보급	P080800
09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01 숲 조성 및 관리(*)	P090100
	02 환경적 보호가치 높은 지역의 조경(*)	P090200
	03 자연체험 학습시설 조성 및 관리(*)	P090300
	04 농산어촌 녹색테마공원 조성	P090400
	05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	P090500
	06 생태축 조성(*)	P090600
	07 습지보전관리(*)	P090700
	08 도서, 해안 사구 보전 관리(*)	P090800
	09 하천변시설(둔치, 저류지, 지하수 관리 등) 정비	P090900
	10 홍수예방 하천시설 및 상습침수지구 정비	P091000
	11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설차운영	P091100
	12 폐전기전자제품 및 포장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P091200
	13 지역기후변화 영향 감사평가적응(종합, 부문)	P091300
	14 토양지하수 보전 및 오염복원	P091400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15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차운영	P091500
	16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차운영	P091600
	17 해양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P091700
	18 녹색거점(새만금 등) 연안공간 조성	P091800
	19 해양생태계·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P091900
	20 친환경적 폐석면 처리	P092000
	21 생태관광 및 친환경 관광	P092100
	22 생태우수마을/생태복원우수마을 조성(*)	P092200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

4-19

보증연계투자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투자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보증·투자복합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R&D·신성장 부문 등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5년 450억원(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 2012년까지 매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다가 2013년부터 400~500억원 수준으로 지원 규모 확대

지원 대상

- 보증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R&D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배제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 이상
-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이어야 충족
-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도 저축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포함시 100억원)
 - 단, 투자금액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 초과 불가
- 투자종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 및 각 영업점에 문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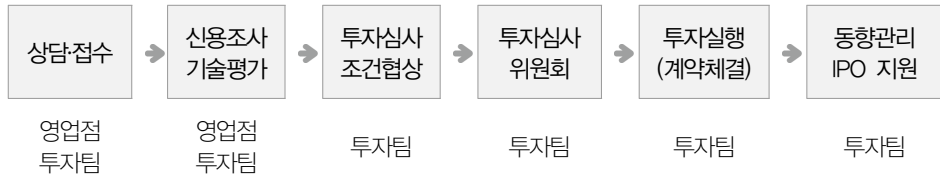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 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 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 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평가 절차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및 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 투자팀 : 02-3215-5960~8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기술평가센터)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4-20

경영개선지원제도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으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업중 기보의 지원으로 경영애로 해소가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여 신규보증지원, 보증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 기술거래 중개, 기타 경영·기술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0개 업체

* '14년 지원현황(11월말) : 319개 업체

지원 대상 기술보증기금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관찰대상기업”, “중점관리기업” 등 사업안정성 취약기업 및 보증사고유보기업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사고발생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용을 받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지원 내용

- 신규보증지원, 보증 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 기술거래 중개, 기타 경영·기술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비 고
신규보증지원	• 신규보증은 일반 신규보증지원절차에 의하여 지원	
보증재조정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료 등을 조정하여 경영개선 유도	
기업지도	• 경영합리화 유도, 생산성 향상 또는 기술개발 지원	
M&A 또는 기술거래중개	•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성장한계 극복,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기타 경영기술지원	•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의해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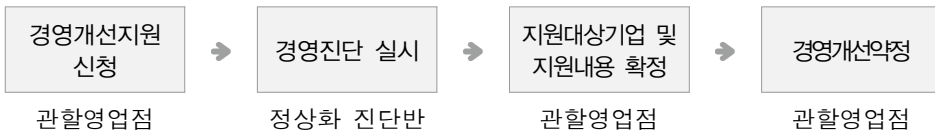
신청·접수 '15. 1. 2 ~ 12. 31 상시접수

- 기술보증기금 보증관할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경영정상화계획서

* 신청양식은 보증관할 영업점 문의, 신규보증 신청시에는 보증신청서류 별도 접수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궁금해요! 중기맨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경영개선지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경영개선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설명

- 경영진단
- ☞ 기술보증기금 보증기업 담당팀장, 신청기업관련 기술전공 박사급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 진단반에 의한 경영애로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진단

4-21 재기지원보증제도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성실실패자의 재도전·재창업 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이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재기지원보증 135건

* '14년 11월말 현재 지원현황 : 93개 업체, 113.3억원

주요 내용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으로 구분

구 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주관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시행시기	'12. 4월	'10. 11월
채무자분류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단독채무자
대상기업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운영하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1) 실패한 기업 2) 재도전기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신복위 원금감면(50%) + 신규자금	희생지원보증 + 신규자금

* 실패한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이사, 무한책임사원

신청·접수 '15. 1. 2 ~ '15. 12. 31 상시접수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신용회복위원회
-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을 통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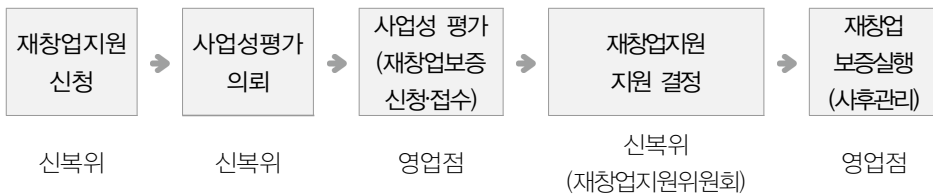
신청 서류

보증신청관련 서류, 사업재기계획서, 도덕성 평가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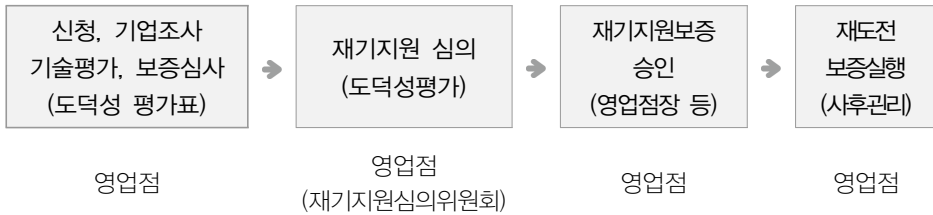
* 신청양식은 보증관할 영업점 문의

처리 절차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신용회복위원회



-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기술보증기금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희생관리센터(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5-1 소상공인 사관학교 / 260
- 5-2 소상공인 창업교육 / 262
- 5-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 264
- 5-4 소상공인방송 / 266
- 5-5 상권정보시스템 / 269
- 5-6 소상공인 경영교육 / 272
- 5-7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274
- 5-8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 276
- 5-9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278
- 5-10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 281
- 5-1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283
- 5-12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 / 285
- 5-13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 287
- 5-14 희망리턴패키지 / 289
- 5-15 재창업패키지 / 291
- 5-16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 293
- 5-17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 295
- 5-18 상권활성화 사업 / 298
- 5-19 시장경영혁신지원 / 301
- 5-2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304
- 5-21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 306
- 5-22 소상공인창업자금 / 308
- 5-23 일반경영안정자금 / 310
- 5-24 소공인특화자금 / 312
- 5-25 긴급경영안정자금 / 314
- 5-26 전환대출자금 / 316
- 5-27 사업전환자금 / 318
- 5-28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320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Q&A

- Q. 지금 영업하는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 A.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업종전환희망자를 선발해 재기의욕 고취, 이론·실습 등 60시간 내외의 재창업패키지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창업패키지 사업설명 참조)
- Q.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 A. 장사가 잘되는 점포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시간~20시간 내외의 업종전문교육과 지역특화교육 과정 등을 운영합니다.(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설명 참조)
- Q.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A.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7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 Q.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1,200대 상권의 상세한 상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49종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 Q.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A.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 Q.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A.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ICT 교육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입니다.(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5-1

소상공인 사관학교

| 점포체험에서 자금지원까지 원스톱 창업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실습점포체험, 창업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0명(과정당 30명/5개 전용교육장, 1기당 150/2기 모집)

지원 대상

창조형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교육프로그램
 - 기초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하위20%를 제외한 교육수료생에게 체험실습점포에서 체험과정 제공(3개월)
 - 공통이론교육→업종별 전문교육→체험실습점포→자금지원→사후관리
- 창업멘토링
 - 점포체험단계부터 성공창업까지 개인별·수준별 전담 멘토링 지원

신청·접수

‘15년 1월, 4월

- 전용교육장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c.seda.or.kr) → 교육신청 → 사관학교 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3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의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 교육생 부담금은 없습니다.

5-2

소상공인 창업교육

| 현장에서 배우는 자영업 창업 교육

기술지식이 가미된 특화형 또는 비생계형 업종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000여명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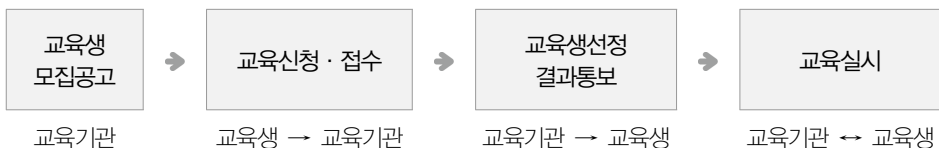
지원 내용

- 교육과정(60~80시간)
 - 창업준비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실무를 종합적으로 교육
 - 공동이론교육→기능연마 및 실습→ 창업인턴제→자금지원→사후관리
 - 창업인턴시간은 별도편성
- * 교육생 부담금 50,000원(현장실습비)

신청·접수 '15년 연중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c.seda.or.kr) → 교육신청 → 창업(학교)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3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창업교육은 자부담금이 얼마인가요?
☞ 창업교육(80시간)은 현장실습비 5만원의 교육생 부담금이 있습니다.

5-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 신흥개도국 해외 현지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소자본으로 신흥개도국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정보, 전문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40여명(예산 16억원)

지원 대상 소자본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해외창업 정보제공
 - 대상 국가의 현지 창업 관련 법, 주요상권, 소비 트렌드 등 창업정보 제공
- 해외창업 교육(200명)
 - 대상 국가별 경제동향, 상권분석, 창업법규, 세무, 회계, 현지 언어 교육 등 실시
- 해외창업 컨설팅(40명)
 - 현지에 체류(1개월 내외)하면서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시장조사, 입지 분석, 법률·회계 자문, 마케팅·홍보 대행 등을 지원

신청·접수

- 해외창업 교육
 - 신청접수('15.3월) → 대상자 선정('15.4월) → 해외창업 교육('15.5~6월)
- 해외창업 컨설팅
 - 신청접수('15.6월) → 대상자 선정('15.7월) → 해외창업 컨설팅('15.8~9월)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1~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해외창업 컨설팅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 해외창업 컨설팅의 자부담금은 왕복항공료로 나머지 체제비, 컨설팅 비용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5-4 소상공인방송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익방송

소상공인방송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방송채널로서 케이블TV와 IPTV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경영, 상권분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 프로그램 제공
- 전통시장 이슈, 최근 소비동향, 신사업 아이템 등 최신 정보 프로그램
-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슈를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전달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 방법

- 케이블TV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지역별 채널번호 안내 참조
- IPTV : KT Olleh tv 255번, SKBtv 415번
- 기타 소상공인방송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
 -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주소 : www.yestv.or.kr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편수
창업필살기 상권분석	성공창업을 위한 지역별 상권정보 소개	89
랭킹쇼 터		15
소상공인 대학	창업, 프랜차이즈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80
창업교실	60개 업종의 창업 방향 및 핵심 전략을 소개	60
창업의 정석	성공창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천사례 소개	50
소상공인닥터 시즌3	창업에 관한 전략과 노하우를 소개	52
성공포착 꿈단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성공 CEO의 이야기를 강의형태로 진행	14
영화 속 소상공인	영화 속 소상공인들의 성공비법을 소개	52
스타 창업스토리 On-Air	유명 연예인의 창업 성공 노하우를 공개	17
그들의 회식	점포 진단 및 해법을 모색해보는 오락형 컨설팅 프로그램	52
파워컨설팅 소상공인.com	창업, 법률, 마케팅, 재무, 정책등 파워컨설팅 소개	197
2012 소상공인닥터	나만의 노하우로 명인의 반열에 오른 소상공인의 비결 공개	47
소상공인 휴먼다큐 땀방울	열정 넘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이야기	467
소상공인 시사각각	소상공인을 위한 최전방 경제현황 시사정보 프로그램	260
전통시장 생생소식	멋과 맛 그리고 흥이 있는 전통시장 소식을 전달	100
백문이 불여일견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드는 광고제작 현장을 소개	17
홍보 프로젝트 나도 광고주		41
맛따라 길따라	잘 나가는 대박 외식업 중심의 매장 운영 노하우 전수	48
성공IN 소공인	전통을 고수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시대 소공인을 조명	31
떠나자 녹색충전	여가, 레저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48
HOT아이템 알짜배기	다양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맞춤형 창업소개	52
청년사업가의 진솔한 이야기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	17
베스트 셀러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소상공인 CEO의 일상을 소개	31
아시아 문화콘텐츠, 전통시장	아시아 각국의 전통시장을 소개	52
소상공IN 아시아	창업에 성공한 아시아 각국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52
북적북적 시장이야기	전국 전통시장의 문화체험 및 정보를 제공	150
옛것이 좋다	소수 물품을 전통방식 그대로 만드는 소공인들의 이야기	45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5
- 소상공인방송 : 042-363-7669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 www.yestv.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소상공인방송 출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소상공인방송 각 프로그램의 PD, 작가가 방송 소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출연자 섭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송 출연을 원하신다면 방송홈페이지 (www.yestv.or.kr) 출연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TV를 통해 프로그램 시청 후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www.yestv.or.kr)에 접속하시어 주간 편성표를 통해 재방시간 대를 확인하시면 재시청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통하여 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 출연업체 및 출연자(컨설턴트) 연락처가 궁금합니다.
 - ☞ 소상공인방송에 출연한 업체 및 출연자(컨설턴트) 연락처는 방송홈페이지 (www.yestv.or.kr)에서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시행하시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출연업체명, 테마별 검색하기를 통해서도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5-5 상권정보시스템

| 발품을 팔지 않고 한눈에 보는 창업성공 파트너 상권정보

점포현황, 인구구성, 주거형태,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4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역별 · 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제공
 - 지도상에서 선택지역의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집객 시설 등 상권분석정보를 간단분석 18종, 상세분석 49종을 보고서로 제공
- 시군구 상권정보 제공
 - 행정동별로 기본적인 지역분석 정보와 업종추이 정보를 통해 상권분석 전 예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점포평가서비스
 - 성장성 · 안정성 · 활성화 등의 상권 · 업종의 평가, 접근성 · 가시성 등 입지 특성을 분석하여 정보 제공
- 창업적합성검사 제공
 - Holland 이론 기반의 적성검사 기능을 통해 적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적합 업종 추천정보 제공
- 상권지도서비스
 - 지도를 중심으로 스카이라이프, 로드뷰, 인구/상가/직장인구밀도, 니들가게, 주요시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상권통계 정보 제공
 - 소상공인 주요업종의 업력 및 매출통계, 행정구역 및 주요상권의 평균 임대시세, 사용자의 상권분석 사용 통계 정보 제공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점포이력 서비스 제공
 - 점포의 현 위치에서 영업했던 과거의 업소를 추적해서 업종, 영업기간과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
- 창업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상권, 입지평가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통한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 창업과밀지수 제공
 - 상권별 잠재매출과 상가공급현황을 분석하여 업소 포화수준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울지역 치킨, 편의점업에 대해 시범 제공)
- 통화량 유동인구 제공
 - 통신사 통화량 기반 측정 유동인구를 시간대별, 요일별, 성별, 월별로 제공

이용방법

- 인터넷 이용
 -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mba.go.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이용
 - 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 스토어에서 '상권정보' 검색 후 전용 앱 다운로드 후 이용

문의처

- 콜센터(1644-530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644-530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되며 언제 갱신되나요?
- ☞ 34개 데이터 생산기관으로부터 상권DB를 수집·가공하여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합니다. 갱신주기는 생산기관 주기와 일치하며, 업소 데이터는 매일, 기타 데이터는 월 또는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갱신안내는 상권분석 화면의 각 테이블 상단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 주요시설, 집객시설
 - ☞ 주요시설 : 일정한 유동인구를 규칙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 등
 - ☞ 집객시설 : 시기, 유행, 이벤트에 따라서 불규칙적이나 유동인구의 발생이 많은 시설, 백화점, 영화관, 대형 쇼핑시설, 숙박시설, 스포츠경기장 등
- 업종밀집정보
 - ☞ 다른 지역에 비해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
- 브랜드지수
 - ☞ 상권의 발달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상권내 유명브랜드의 입점 수준을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지수로 표현

5-6

소상공인 경영교육

| 업종 고급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배우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및 업종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지원 규모 16,300명

지원 대상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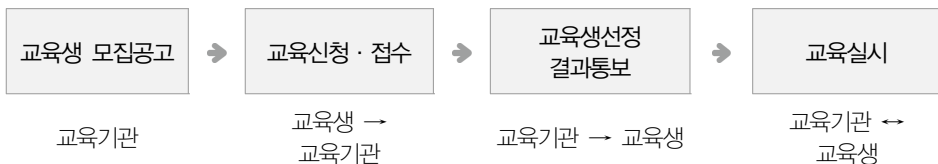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업종 및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 업종전문과정 : 업종별 기술 실습, 전문경영지식 전달 등 소규모 전문교육
 - 지역특화과정 : 지역별 상권분석, 마케팅 관련 세미나, 토론 등 참여식 교육
 - 골목상권·상가교육 : 상인회 조직화, 공동마케팅 교육 등 상권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신청·접수 '15년 연중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seda.or.kr) → 교육신청 → 경영학교 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교육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43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받으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정책자금(소상공인일반자금)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국비지원 무료교육입니다.

5-7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500여건(예산 49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지원 내용

- 세부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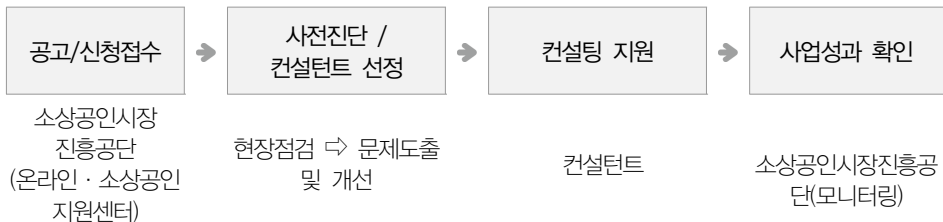
구 분	일 수 (기간)	컨설팅 내용	지원조건
경영 컨설팅	5일 이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마케팅, 브랜드 강화,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등 경영애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중 자부담금 10%
비법전수 컨설팅	5일 이내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능장·명장 등 업종별 비법전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전수	* 영세소상공인(매출액 48백만원 이하 등) 자부담 없음

신청·접수 '15년 연중

-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http://con.sed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공 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처리 절차**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2 , 지역센터 1588-5302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 <http://con.seda.or.kr>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컨설팅 업체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 컨설팅 코디네이터(상담사)와 함께 컨설팅 지원내용을 협의한 후 컨설팅 지원유형이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5-8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영세소상공인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00건(예산 1억원)

지원 대상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승소금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15년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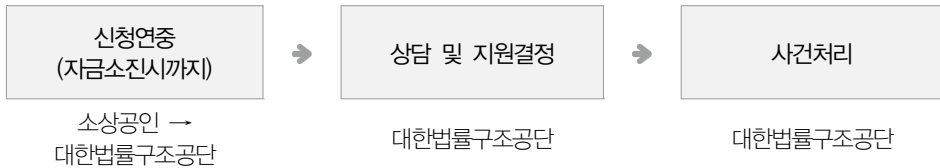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제출 서류

구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음

처리 절차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9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동업종 · 이업종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국·내외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한 협업사업(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 공동시설 등)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00개 내외(예산 325억원)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외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
 - 소상공인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同 시행령”에 따름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 협동조합 등가입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협업사업(1억원 한도 내),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지원

- 소요비용 원칙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1) ①공동브랜드개발 ②공동마케팅(홍보) ③공동장소임차 ④공동설비(장비구매)
⑤공동R&D ⑥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 등)

2) 단, 협동조합 규모, 추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장비구매 단일분야 신청 시 최대 2억원 한도

- 청년협동조합(조합원 50% 이상)의 경우, 협업사업 지원 시 자부담금 비율 우대(15~20%)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6),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홈페이지(www.smba.go.kr)



궁금해요! 중기맨

- 협동조합이란?
 -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협동조합 종류는?
 - ☞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임.

5-10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 동네 슈퍼마켓의 자생력 제고 지원

골목수퍼가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 상품 구매 보증, 부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00여개 나들가게(예산 69억원)

- 점주선택형 사후관리 : 3,000개, 30억원
 - * '14년 지원현황 : 1,800여개 나들가게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나들가게로 개점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나들가게 지원을 받지 않은 점포
- 나들가게로 개점하였으나, 폐업취소한 점포 지원

지원 내용

- 점주선택형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정상 영업 중인 전국 나들가게 중 대상 교육*을 받은 점포
 - * '15년 나들가게 점주역량강화 교육 등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위생지도, 재고조사, 방제서비스, POS 교육, 경영컨설팅 등 점주 선택형 사후 관리 지도(100만원 한도)
 - * 재고조사는 나들가게 POS 이용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존 사후관리는 경영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15년부터 점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점포 위생관리, 재고관리 등 실질적으로 점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후관리 지원

신청·접수 '15. 1.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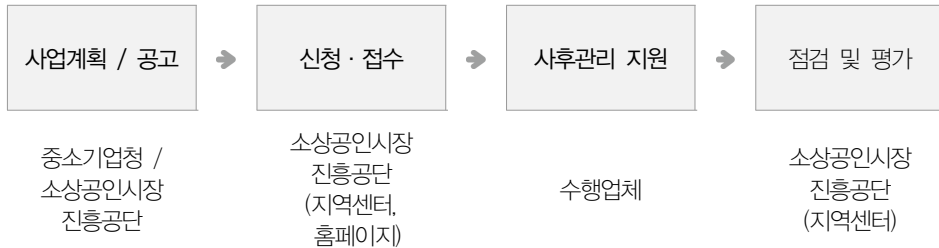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나들가게 정상영업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에 사업 공고 시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관련 문의
 - 나들가게 콜센터 : 국번 없이 1566-908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 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7752~4
 -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 지원정책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8939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1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6개 범주, 150여개 평가문항으로 평가하여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평가는 대기업도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 감안한 6개 범주(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 점수에 따라 I등급(80점 이상), II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 III등급(60점 이상~70점 미만), IV등급(60점 미만)의 4단계로 평가

평가 결과

-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 지원 실시

● 수준별 연계 지원내용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I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비용의 70%, 20백만원 한도)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II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비용의 70%, 20백만원 한도) 	
IV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비용의 70%, 20백만원 한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한 지도 가맹점주 교육 지원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지원(사업설명회 등) 	

신청·접수 상·하반기 시행('15. 2~6월 / 8~12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하여 이메일(fc@semash.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220만원)

제출 서류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5~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12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하도록 지원

유망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맹본부 운영 매뉴얼 개발 등 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가맹 본부로 발전하여 가맹점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사후 관리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30개 업체 이내

지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을 희망하는 예비 프랜차이즈와 신규 프랜차이즈(가맹점 10개 미만)

업 종	직영점 업력
외식업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직영점포가 1개 이상이며,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지원 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운영 매뉴얼 개발 등 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80% 지원(20백만원 한도)
- 가맹점 모집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홍보지원 및 사후관리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년치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5~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13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 소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 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지원 사업, 공동인프라 구축, 소공인 성장희망사다리 등 소공인 맞춤 지원과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R&D)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55개(전체 예산 34,750백만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

지원 내용

- 소공인 집적지구의 성장·발전,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센터인력 인건비, 센터사업비, 센터운영비 등을 지원
- 소공인 집적지구가 창조혁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창고, 전시/판매장 등 공동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소공인의 사업전략수립, 마케팅사업화 등을 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로 구분하고 혁신역량 수준별로 단계별 지원
- 소공인 보유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 및 공통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비 등 지원

| 2015년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지원 규모	지원한도* (백만원)	지원금 비중	사업 공고
소공인 특화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11,250	1월~12월	25개	440	70%	1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7,200	2월~12월	5개	1,400	70%	2월
	소공인 성장희망사다리	10,000	2월~12월	250개	30	80%	2월
소공인 기술개발 (R&D)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4,000	2월~12월	60개	40	75%	2월
	소공인 공통기반기술개발 지원	2,300	2월~12월	15개	150	75%	2월

*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신청·접수 '15. 1월 ~ 3월(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사업 운영 지침에 첨부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팀 : 042-363-7718, 77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14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전직장려수당, 재기교육, 취업상담·취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0명

지원 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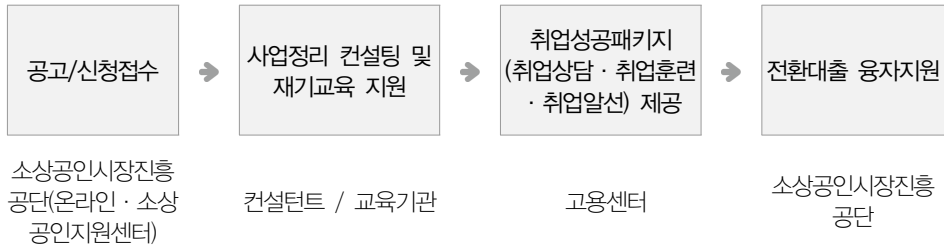
-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 폐업 시 절세방법 및 각종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컨설팅을 받고,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
- 재기교육 지원
 - 취업시장 정보, 효과적인 구직방법, 취업성공사례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지원
 - 컨설팅 또는 교육 지원 후 취업상담, 취업훈련, 취업알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지원
- 전환대출 용자 연계지원
 - 사업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경우,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용자를 지원

신청·접수

'15년 2월 이후 수시 신청·접수

- 온라인(www.semas.or.kr)을 통한 신청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1, 783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15 재창업패키지

| 비과밀 업종으로의 업종전환 교육

과밀경쟁업종에서 탈피하여 유망업종으로 업종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000명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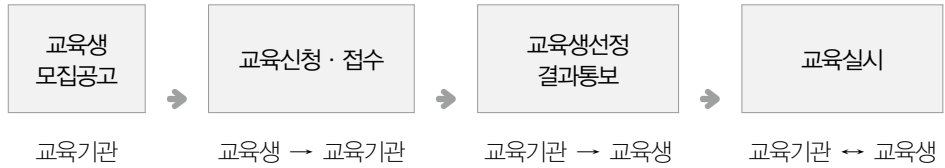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재창업 교육
 - 과정당 50~60hr 내외로 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 멘토링 등으로 구성
- 재창업 멘토링
 - 교육 이수 후 재창업까지 전담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익육 제고

신청·접수 '15년 연중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seda.or.kr) → 교육신청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 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3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16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후원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소 기 업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그외 업종 10인 미만)
- 소상공인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1만원 단위)
 -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
- 지급 금액 : 적합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폐업·사망시 2.9%, 노령·퇴임시 2.6% ('14.4분기 기준)

** 부금납입월수 60회 이하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

가입자 혜택

-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가입 후 2년간)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0~5, 3350~6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한도내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가입 후 2년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17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 고객이나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주민을 위한 골목형시장', '국내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외국인이 가보고 싶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시장을 유형별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62개 내외 시장(전체예산 508.5억원)

- 골목형시장 : 70곳, 210억원(1년간 시장당 6억원)
- 문화관광형시장 : 87곳, 248.5억원(3년간 시장당 18억원)
- 글로벌명품시장 : 5곳, 50억원(3년간 시장당 50억원)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골목형, 글로벌 명품시장은 '15년 신규 지원 사업으로 '17년까지 200곳, 10곳 육성 목표

*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특성화시장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지원시 유의사항

-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은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이나 문전성시(문체부)를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시장은 제외
- 같은 해 1개 사업만 참여 및 단계별(골목형 → 문화관광형 → 글로벌 명품) 지원은 가능하나 역으로 참여 불가

지원 내용

- 시장별 특성을 발굴하여 살거리·즐길거리·볼거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골목형시장)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신메뉴 상품과 레시피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상품진열 등
 -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연, 축제, 민속체험, 이벤트 등
 - (글로벌 명품시장) 외국인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상품·마케팅, 한류공연,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신청·접수

'15. 1월 중

- (신청)기초자치단체 → (추천)광역자치단체 → (접수 및 평가)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
 - * 글로벌 명품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접수 및 평가 진행

| 평가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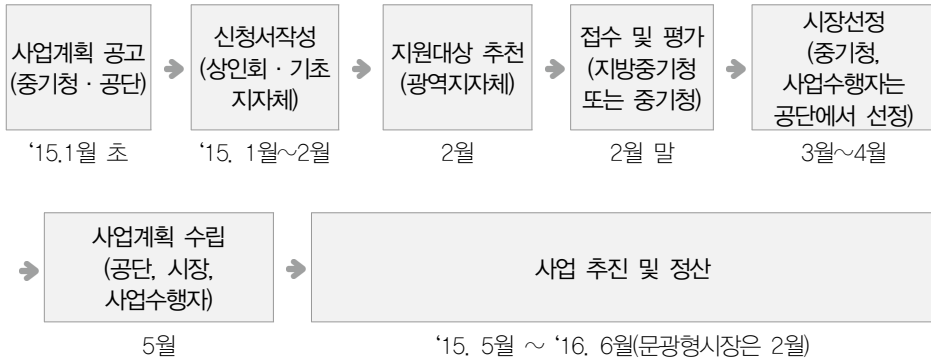
- (공통)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시장 활성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수준 등
- (골목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등
- (문화관광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특화된 역사요소 등 스토리텔링 가능성 등
- (글로벌 명품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특성과 상권 환경 및 지리 환경 특성, 사업 추진 인프라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추진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3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02, 778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18

상권활성화 사업

| 점단위(개별시장 또는 상점가)에서 면단위(상권)로 지원영역 확대

개별시장 또는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6개 상권활성화구역(구역당 3년간 총 18억원 지원, 연 6억한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아래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 4호

상권활성화구역 법적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4.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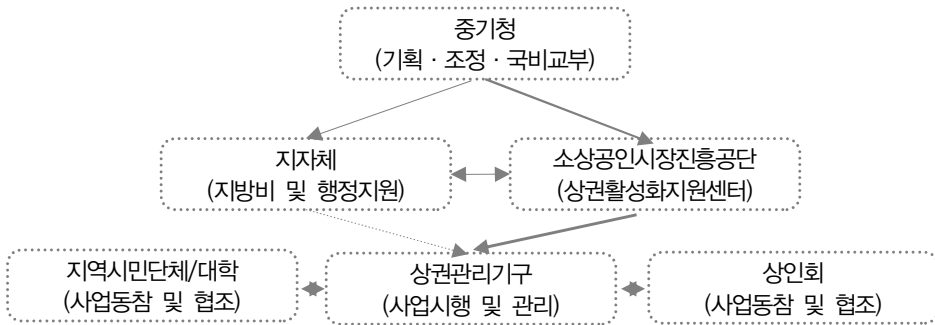
-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 *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시범사업성과 '11년 ~ '13년, 6개 구역* 지원

- 온라인 콘텐츠(홈페이지, 앱 등) 발굴
- 상권별 스토리 발굴을 통한 대표이미지(BI, 캐릭터 등) 구축 및 홍보물 제작
- 문화예술을 접목한 상권특성별 이벤트 개최로 고객 및 매출확대
 - * 서울 마포, 경기 성남, 강원 동해, 충북 청주, 부산 동구, 경남 창원

사업추진체계



신규구역운영 '14년 ~ '16년, 6개 구역지원

지원구역	내용
경기 성남	도시 상권의 재생 주체인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경기 의정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구역내 브랜드아이덴티, 행복페스티벌, 공동마케팅 및 상인 교육 등의 경영 혁신 사업 추진
충남 부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매력 넘치는 부여 조성

전남 순천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진행
울산 울주	- 전국 산악관광1번지 영남알프스마켓타운 클러스터 구축
부산 해운대	자유로운 문화와 예술 소비를 통해 자유 활동구역을 확보하고 외부 이벤트 유치 등 지속적인 문화·예술 기획진행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89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93-762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19 시장경영혁신지원

|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영업방식을 현대화하고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마케팅, 상인교육, 화재안전점검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아래 지원내용 참조(전체 예산 1,126억원)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 마케팅, 상인교육, 유통전문인력 지원 등 세부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30~100% 지원
 - 상인대학원,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ICT 교육 등 상인교육
 - 공동마케팅,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및 지역상품전 개최 등 홍보
 - 행정·유통분야 전문인력(상인매니저) 지원, 화재안전점검 등

신청·접수 '15. 1. 6 ~2. 7(단, 일부사업은 연중수시)

| 심사·평가 내용 |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 전문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4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622~4



궁금해요! 중기맨

- 공동마케팅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세일 · 경품행사,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유 · 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학습, 공동쿠폰 사업, 공동포인트 제작 지원, 시장 홍보물 제작 및 송출, 홍보전단, 홈페이지 제작, BI · CI개발, 테마골목 브랜드, 패션쇼 등 시장 특성에 맞는 형태가 있어요



용어설명

- 상인대학
☞ 상인대학은 교육기관이 해당 시장을 찾아가 시장상인 의식혁신,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마케팅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공동 쿠폰 발행, 세일·경품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시장당 1,080만원~6,030 만원	국비 90% 상인 10%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개최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 전시회 개최 비용	50백만원 이내	국비 70% 상인·지자체 30% (10개 이상, 상인 50인 이상 참가시)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매니저를 상인회에 채용하여 상인 조직을 육성하려는 시장에 보조	495천원~1,155 (월/인)	국비 70~30% 상인 30~70%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상인 교육·연수	고객관리, 마케팅, 상품개선, 의식혁신, 전문기술 등 교육지원 (상인대학, 맞춤형교육(단기·특강), 전문교육, 해외연수, 정보화교육 등)	시장당 20~25일 (40~50시간)	국비 100%
시장자문 점포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상권 개발, 시장정비사업 자문 ○ 지도 :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등 지도 ○ 사업비산출 : 사업원가 자료제공 	전액보조	【자문】 연 8일 이내 【지도】 연 2회 이내
화재안전점검	소방,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전액보조	국비 100%

5-2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상점가 어느 곳에서도 OK!)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인쇄로 보안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온누리상품권은 시중 금융기관(12개)에서 구매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종류

- 종이 온누리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 전자 온누리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기명충전식(50만원 미만)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 구매처 : 우체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한,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 개인은 현금, 법인은 현금 및 법인카드로 구매 가능
-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의 가맹점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 가능
 -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전자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 가맹점 및 온라인 쇼핑몰(우체국 쇼핑몰의 전통시장관, 이지유펜어, 인터파크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

온누리상품권의 특징

- 상품권 판매 · 회수 수수료 전액을 국비 지원(상인 부담 없음)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위 · 변조가 어렵고, 보안성 · 안전성 확보

온누리상품권 가맹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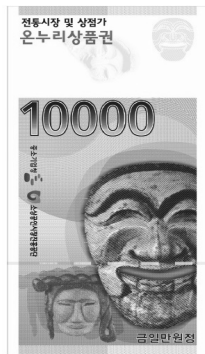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상인회 및 개별 점포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제한업종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
 - 제한업종 : 주류 도·소매, 부동산업, 성인용 게임장, 무도장 운영업 등

온누리상품권 관련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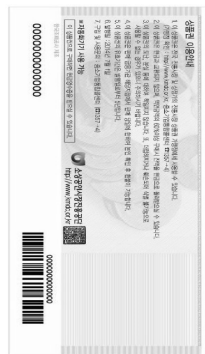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0, 457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상품권 콜센터(☎ 1357 → 4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참고

온누리상품권 사진

일만원권(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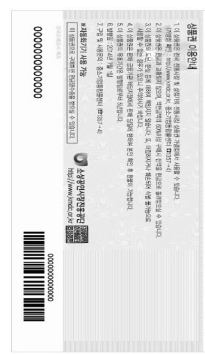
일만원권(뒷면)



오천원권(앞면)



오천원권(뒷면)



십만원권(앞면)



십만원권(뒷면)



오만원권(앞면)



오만원권(뒷면)



5-21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 전통시장에서도 이제 ICT를 누린다.

전통시장 ICT육성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보급 확대 등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시장 콘텐츠(상품, 문화 등)와 ICT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30억원, 130개 시장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이 안되는 시장

- 당해 연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시장

지원 내용

- ICT카페 조성
 - PC와 프린터, 컴퓨터 책상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ICT체험공간 조성에 필요한 물품 및 인테리어 지원

- 모바일POS 보급
 - 고객 및 매출관리,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발송 등이 가능한 모바일POS 보급
-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시스템 보급
 - 상인 스스로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을 제작, 발송이 가능한 프로그램 보급
- ICT추진단 운영
 - IT전문 인력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모바일POS,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시스템의 활용과 ICT카페 운영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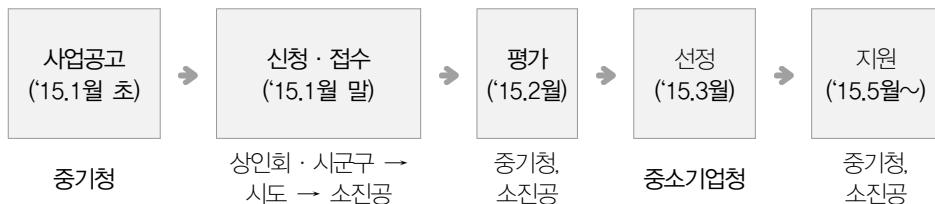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혹은 팩스를 통해 접수

제출 서류

-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지원신청서
 -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7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팀 : 042-363-762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참고

5-22

소상공인창업자금

|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등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창업 생존율을 제고합니다.

지원 규모 2,270억원(대리대출 2,000억원, 직접대출 270억원)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중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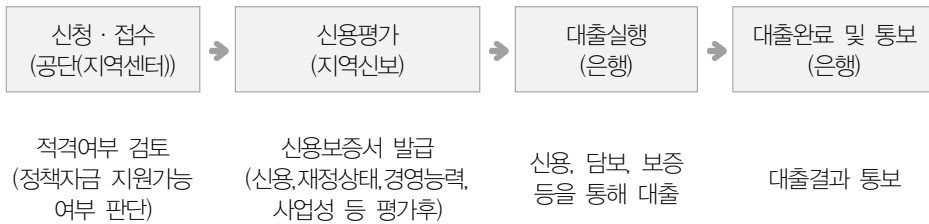
지원 범위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6%p(기준금리)
 - * 금리우대 : 소상공인 사관학교 창업자금(기준금리+0.3%p) 및 창업교육 이수자(기준금리 +0.45%p)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자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 사관학교 창업자금(270억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평가를 통해 직접대출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5-23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합니다.

지원 규모 3,500억원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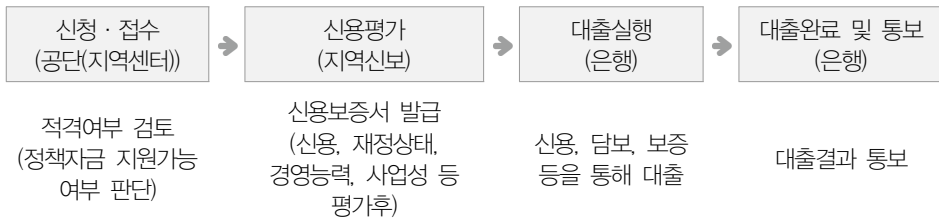
지원 범위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6%p(기준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 단, 니들가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5-24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소공인의 시설 및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500억원

지원 대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6%p(기준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절차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2-769-6700)

5-25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긴급 자금지원

재해, 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0억원

지원 대상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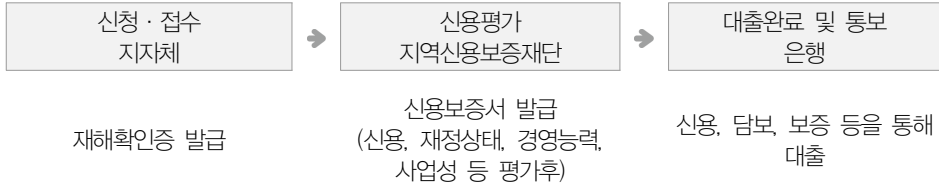
- * ①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 ②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자원이 필요하다고 중기청이 결정한 소상공인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조건

-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문의처

전국 지자체(시·군·구청)

5-26 전환대출자금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자금으로 전환지원

신용 4~5등급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합니다.

지원 규모 5,000억원

지원 대상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신용 4~5등급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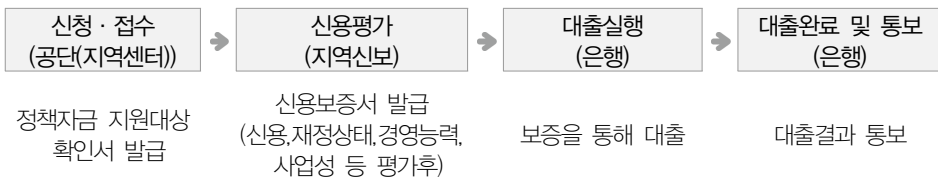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의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조건

- 대출금리 : 7%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20개 시중 금융기관 중, 전환대출 취급 가능 은행 선별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5-27 사업전환자금

| 과밀·생계형 업종에서 非과밀업종으로 사업전환 지원

생계형업종에서 벗어나 유망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0억원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이수한 유망특화업종 분야 예비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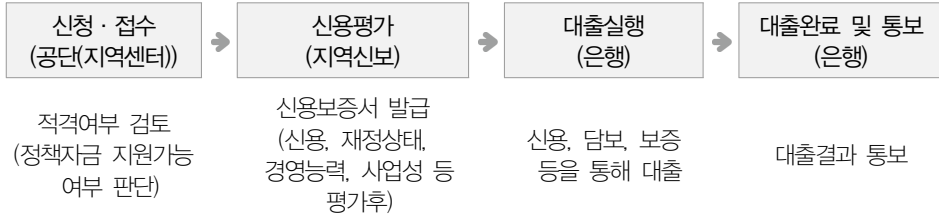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6%p(기준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5-28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업종전환·폐업을 결정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사업재개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0억원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업종전환 또는 폐업예정자로,
- ②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내의 임차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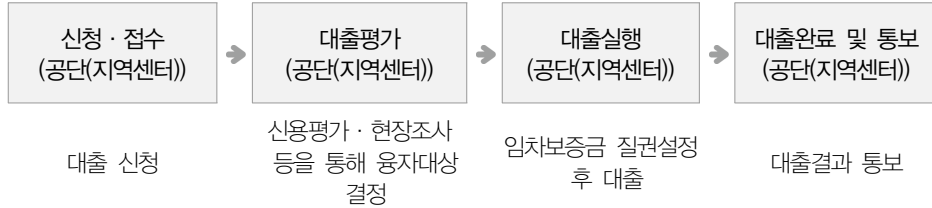
** '14년 현재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지역 1.8억원

*** 유흥·향락·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3%p(기준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최대 1억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별표]

소상공인지원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원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부동산컨설팅업 (예: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익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예: 과외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 등)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21),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 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0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325
- 6-2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 328
- 6-3 시니어창업 특례보증 / 331
- 6-4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334
- 6-5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 / 337
- 6-6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340
- 6-7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343
- 6-8 햇살론 신용보증 / 346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용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18.9조원으로 운용(햇살론 근로자보증 2조원 포함)

(단위 : 건/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1월
보증공급	건 수	375,842	256,434	275,845	350,944	351,355
	금 액	67,940	60,801	63,581	77,859	79,842
보증잔액	건 수	833,412	835,802	829,578	837,659	781,425
	금 액	132,479	136,088	135,148	142,719	148,910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및 영리협동조합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반복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소기업
- 소상공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 받은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또는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하여 보증지원
 - 대출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8억원
- 자금용도별 지원한도

자금용도	내 용	지원 한도
운전자금	● 당기매출액의 1/2~1/6 이내 (소상공인평가모형 적용시 모형상 지원한도 범위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15.1.2 ~ ‘15.12.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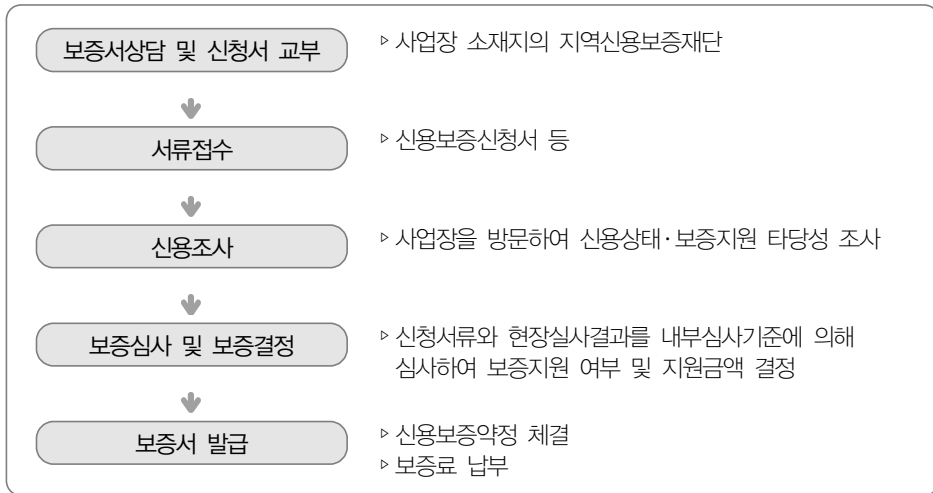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6-2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 우수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기업 신용보증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해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

* '14년 11월말 기준 : 3,092건 / 980억원 지원

* 대출실행 금융기관 : 기업은행, 우리은행

지원 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업력 3년 초과 및 대표자가 연령 만 40세 이상의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5년 2월(예정) ~ 공급한도 소진시까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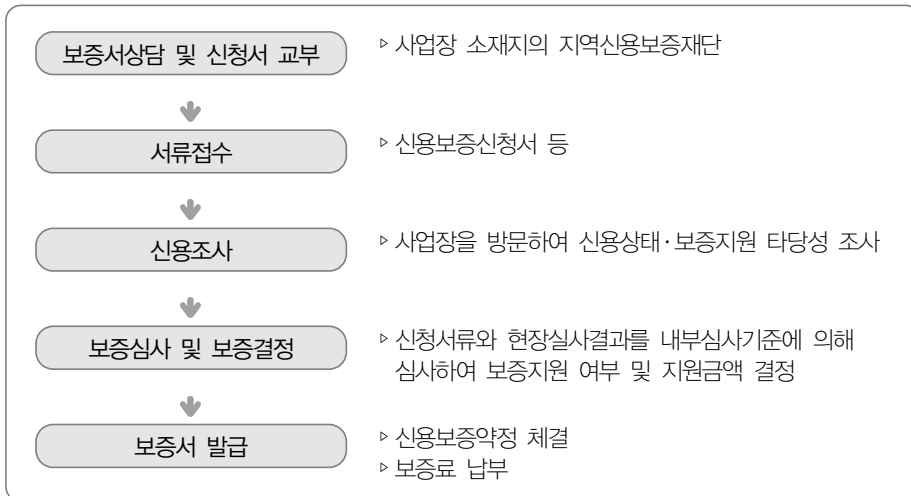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텍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한명은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나, 다른 대표이사는 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본 특례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 만 39세 이하인 공동대표자가 실제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이 가능합니다.

6-3

시니어창업 특례보증

| 중장년층 창업 지원 신용보증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창업을 촉진·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00억원으로 운용

- * '14년 11월말 : 341억원 지원
- * 대출실행 금융기관 : 기업은행

지원 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업력 3년 초과 및 대표자가 연령 만 40세 미만의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5.1.2 ~ 공급한도 소진시까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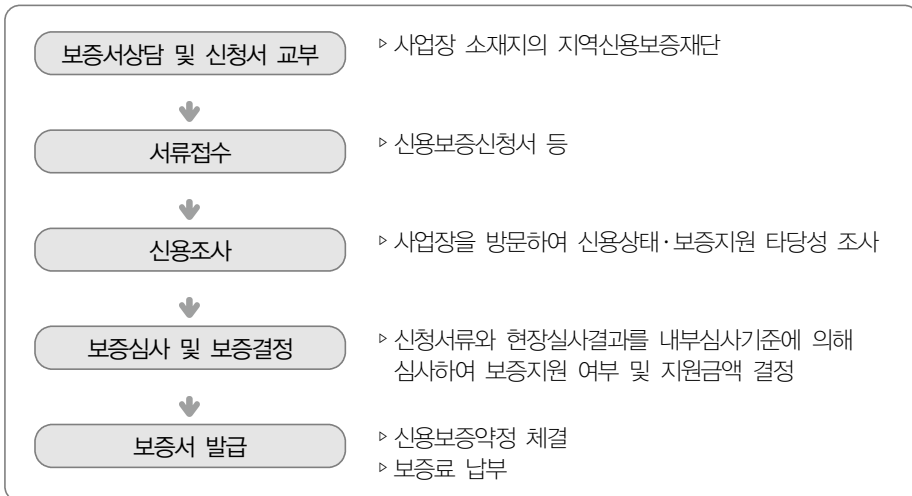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국세청 홈텍스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한명은 만 40세 이상에 해당되나, 다른 대표이사는 만 40세 미만인 경우 본 특례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 만 40세 이상인 공동대표자가 실제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이 가능합니다.

6-4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신용보증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15년 7.2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 '14년 11월말 : 22억원 지원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 비영리법인·조합·단체,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
-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구비
- (상법상 회사)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혁신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5.1.2 ~ '15.12.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 금융기관의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사회적가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심사 평가시 사회적가치 충실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기준이 무엇인가요?
☞ 사회적가치 충실도는 해당 기업의 취약계층에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확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구분됩니다.
 - * 계량지표 항목 : 취약계층 고용율, 최근 1년간 근로자 평균급여 등
 - ** 비계량지표 항목 :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 역량, 이익의 사회적 목적 이용 정도 등

6-5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

| 연대보증 면제 창업기업 신용보증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여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기술이 적극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15년 7.2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 대출실행 금융기관 : 하나은행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법인기업으로 기본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반복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5.1.2 ~ '15.12.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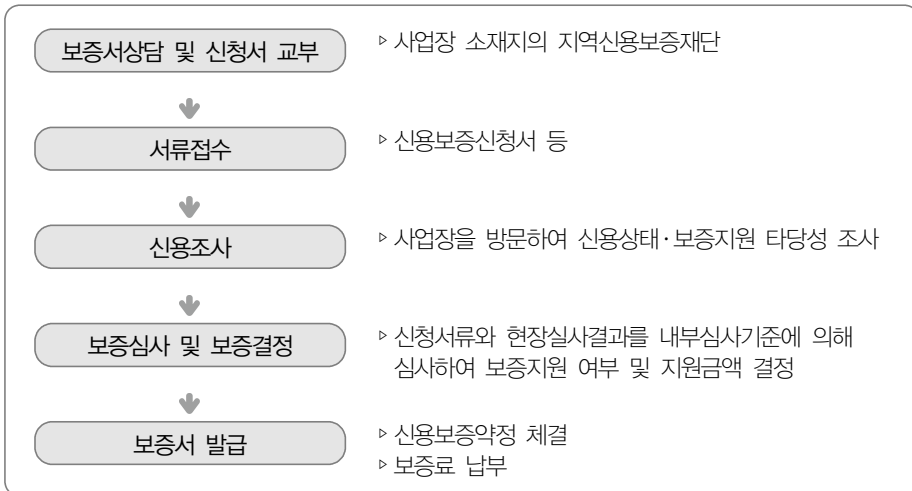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투명경영 이행 약정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투명경영 이행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 어떤 내용이며, 약정 위반 시 어떤 제재 조치가 발생하나요?
- ☞ 연대보증 입보면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투명경영 의무 준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등)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투명경영의무 불이행 시 연대보증책임 면제기간(5년) 이전이라도 연대보증책임을 즉시 부과하게 됩니다.

6-6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성실실패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00억원

지원 대상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 재도전 기업주로서,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지원 결정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업력 3년 초과 및 대표자가 연령 만 40세 이상의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반복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5.1.2 ~ 공급한도 소진시까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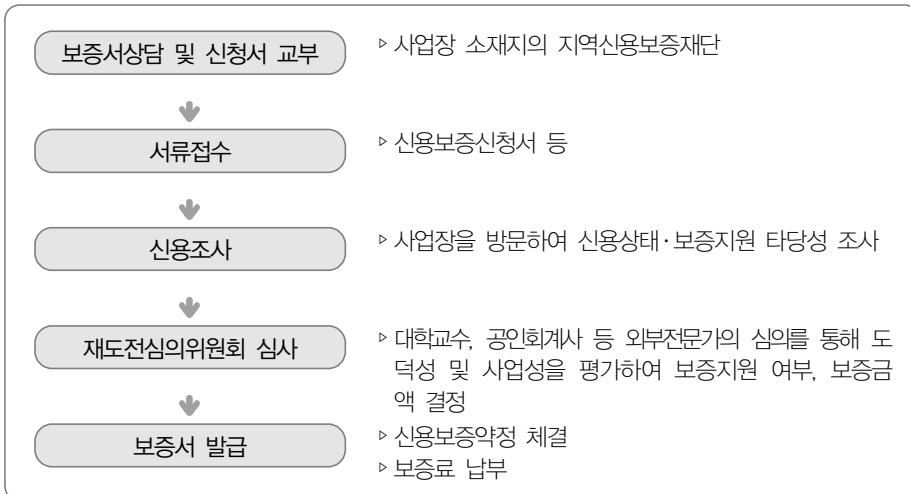
| 심사·평가내용 |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재기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 성실실패자 재도전 심의 평가는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업의 사업성(제품경쟁력, 영업전략의 확보 및 미래성장성 등), 도덕성(채무상환노력, 체납사실, 법규위반 등), 경영의지 및 경영능력(대표자의 경영의지, 경영능력 및 자금조달·운용계획), 실현가능성(사업재기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6-7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출연협약 금융기관 추천 자영업자 신용보증

금융기관이 재단 및 중앙회에 재원을 출연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협약자금 소진시까지

* '14년 11월말 기준 5조 5,161억원 지원(누계)

지원 대상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반복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아래의 채무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같은 기업당 8억원 이내 보증지원(보증료율 0.2% 감면)
 - 소기업 등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금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등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신청·접수 한도 소진시까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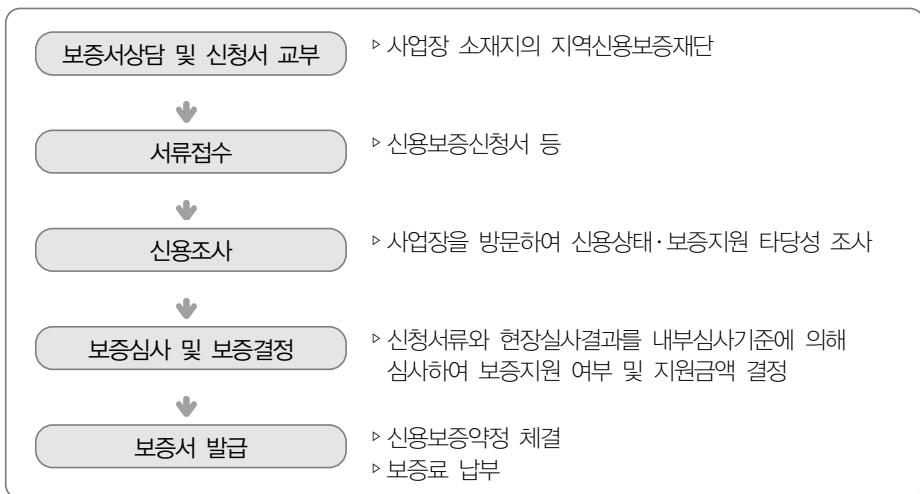
- 금융기관의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6-8

햇살론 신용보증

|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 채무보증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에게 담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영세기업 및 근로자가 서민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0조원 ('10.7월부터 소진시까지)

* '14년 10월말 기준 5조 6,036억원 지원(누계)

(단위 : 건/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11월			'10.7월~14.11월(누계)			
	합 계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근로자)	합 계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근로자)	합 계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근로자)	
보증 금급	건수	219,590	31616	187974	189,947	29,244	160,703	689,495	164,521	524,974
	금액	18,742	3064	15678	15,813	2,836	12,977	56,036	15,457	40,579
보증 잔액	건수	357,267	92566	264701	457,578	102,884	354,694	457,578	102,884	354,694
	금액	24,797	7874	16923	29,811	8,254	21,557	29,811	8,254	21,557

지원 대상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포함) 및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구 분	햇살론				
	사업자			근로자	
지원목표	5년간 10조원('10.7.26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기관 업무위탁	▷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사고관리 (채권보전조치) 일체	
지원 대상	기본요건	지역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소득자
	공통요건	▷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저소득자(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상환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12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경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금융거래확인서 ■ 소득금액 확인서류 ■ 사업사실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근로소득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거래내역서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가입시) 	

| 심사·평가내용 |

- 금융기관의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사실 확인서류, 임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금액 확인서류,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 지원 프로그램 성실이행),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 (창업기업),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

처리 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 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등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 입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개 인 (비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보증심사 및 한도사정 후 대출실행 * 부정대출예방시스템에서 사전 조회 	서민금융사 (위탁보증)
	저신용무등록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서류 후 지역신보에 송부 *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보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소기업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정의는?
 - ☞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라 함은 소득기간 1년(12개월)에 대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 “소득금액”이라 함은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을 말합니다.
- 신용등급은 어느 신용정보회사를 기준으로 적용 하는지?
 -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조회는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취급금융기관이 대출상당시 이용가능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중 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합니다.

〈참고〉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강원 www.gwsinbo.or.kr	본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033-260-0001 (033-251-1356)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033-745-3295 (033-745-3297)
	강릉지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033-644-1378 (033-644-1351)
	속초지점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37 033-638-9780 (033-638-9783)
	동해지점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50 033-534-1411 (033-534-1441)
	태백지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37 033-554-0630 (033-554-0633)
	철원센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971 033-452-8400 (033-452-8900)
	홍천센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9-1 033-433-2600 (033-433-2602)
경기 www.gcgf.or.kr	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577-5900 (031-259-7777)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031-888-5454 (031-888-5466)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8번길 7 031-826-9092 (031-826-9086)
	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031-709-7733 (031-703-9944)
	부천시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032-328-7130 (032-328-7409)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 031-968-7744 (031-968-0020)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031-482-8401 (031-482-8412)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7 031-653-8555 (031-653-8556)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031-387-3525 (031-387-3678)
	남양주시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031-559-8160 (031-559-8166)
	이천시지점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47 031-635-2514 (031-635-8796)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4-3 031-366-8070 (031-366-8070)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031-285-8681 (031-285-8610)
	시흥지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정왕대로 174 031-434-8797 (031-434-8798)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51 031-997-1278 (031-997-1283)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경기 www.gcgf.or.kr	포천지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031-543-1737 (031-543-1739)
	파주지점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 031-942-7521 (031-942-7568)
	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12 031-767-7100 (031-767-4100)
	양주지점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18 031-844-7955 (031-844-7956)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031-613-8777 (031-613-8144)
	군포출장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5-2 031-391-7728 (031-319-1230)
	가평출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76-1 031-581-7703 (070-7614-2317)
	연천출장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5-12 031-832-7708 (070-7614-2318)
	의왕출장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 031-421-7739 (070-7614-2312)
	광명출장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84 02-2060-7768 (070-7614-2313)
	안성출장소	경기도 안성시 동본동 40 031-672-7243 (070-7614-2314)
	여주출장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22 031-883-7754 (070-7614-2315)
	동두천출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3동 593-2 031-858-7728 (070-7614-2316)
	하남출장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2 031-791-7780 (070-7614-2319)
경남 www.gnsinbo.or.kr	본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055-212-1250 (055-212-1276)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055-212-1250 (055-212-1275)
	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055-743-5333 (055-743-5888)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38 055-364-2181 (055-364-2185)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055-246-1788 (055-246-7260)
	거제지점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055-534-5800 (055-634-5805)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서상동 48-2 055-338-2390 (055-338-2396)
	사천지점	경남 사천시 수남길 8 055-835-7480 (055-835-7484)
	통영지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055-902-8300 (055-902-8306)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경북 www.gbsinbo.co.kr	본점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054-474-7100 (054-474-7104)
	포항지점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054-283-2730 (054-283-2704)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원호로 15 063-811-0790 (053-811-0793)
	안동지점	경북 안동시 남문로 20 054-854-3300 (054-854-334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중앙로 32 054-777-0140 (054-777-0139)
	영주지점	경북 영주시 변영로 149 054-631-8300 (054-631-8302)
	김천지점	경북 김천시 김천로 154 054-433-1300 (054-434-1310)
	영천지점	경북 영천시 시장로 45 054-336-6800 (054-336-6900)
	문경지점	경북 문경시 중앙로 141 054-556-7400 (054-556-7404)
	상주지점	경북 상주시 상산로 260 054-531-3500 (054-531-3504)
광주 www.kjsinbo.co.kr	본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062-950-0011 (062-950-0063)
	동구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062-236-0045 (062-236-2366)
	서구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14 062-362-0091 (062-363-0094)
	북구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41 062-576-0091 (062-576-3535)
	남구지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3 062-654-8055 (062-654-8059)
대구 www.ttg.co.kr	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46-29 053-560-6300 (053-554-9905)
	유흥단지지점	대구시 북구 산격2동 1676 053-601-5255 (053-601-5176)
	범어동지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23-5 053-744-6500 (053-744-9077)
	월배지점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530-8 053-639-4343 (053-639-4146)
	동촌지점	대구시 동구 입석동 988-3 053-982-7500 (053-982-7515)
대전 www.sinbo.or.kr	본점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042-380-3800 (042-380-3897)
	서부지점	대전시 서구 도산로 87 042-380-3800 (042-368-3860)
	북부지점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042-380-3800 (042-368-3880)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부산 www.busansinbo.or.kr	본점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051-860-6600 (051-816-4551)
	서부산지점	부산시 사하구 낙동강로 1424 051-860-6730 (051-831-1180)
	동부산지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07 051-860-6750 (051-755-6030)
	북부산지점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23 051-860-6700 (051-316-6788)
	중부산지점	부산시 중구 구덕로 87-1 051-860-6800 (051-242-6878)
	남부산지점	부산시 남구 대연동 1740-8 051-860-6780 (051-611-8944)
서울 www.seoulshinbo.co.kr	본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577-6119 (02-3278-8114)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150 1577-6119 (02-3278-8166)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기업은행3층 1577-6119 (02-3278-8136)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2로22길 37 1577-6119 (02-3278-8140)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1577-6119 (02-3278-8172)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342 1577-6119 (02-3278-8146)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577-6119 (02-3278-8134)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1577-6119 (02-3278-8168)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850 1577-6119 (02-3278-8174)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25 1577-6119 (02-3278-8170)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1로 33 1577-6119 (02-3278-8144)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57 1577-6119 (02-3278-8140)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1577-6119 (02-3278-8148)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1577-6119 (02-3278-8164)
	시당지점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496 1577-6119 (02-3278-8176)
	산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 1577-6119 (02-3278-8138)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뱃꽃로 234 1577-6119 (02-3278-8191)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1577-6119 (02-3278-8188)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울산 www.ulsanshinbo.co.kr	본점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052-289-2300 (053-289-8970)
	남울산지점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052-283-0101 (052-266-7994)
인천 www.icsinbo.or.kr	본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1577-3790 (032-260-1570)
	부평지점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3	032-508-1954 (032-508-1960)
	남부지점	인천시 남구 경인로 59	032-889-3611 (032-889-3615)
	서인천지점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032-569-0321 (032-569-0325)
	계양지점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71	032-542-3911 (032-542-3918)
	남동지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260-1500 (032-260-1571)
	중부지점	인천시 동구 송림로 98	032-766-8090 (032-766-8094)
전남 www.jnsinbo.or.kr	본점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	061-729-0600 (061-729-0608)
	목포지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5-0745 (061-285-0747)
	화순지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6	061-374-0743 (061-374-0746)
	장성지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8	061-392-9992 (061-392-9980)
	강진지점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5	061-433-4363 (061-433-4366)
	여수지점	전남 여수시 광무동 좌수영로 55	061-807-3601 (061-807-3613)
	해남지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99	061-802-2300 (061-802-2305)
	고흥지점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8	061-834-0611 (061-834-0612)
전북 www.jbcredit.co.kr	본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063-230-3333 (062-230-3377)
제주 www.jejusinbo.co.kr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064-758-5740 (064-758-5748)
	서귀포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67	064-733-8133 (064-733-8136)
충남 www.cnsinbo.co.kr	본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530-3800 (041-541-9830)
	공주지점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5	041-858-4701 (041-858-4704)
	서산지점	충남 서산시 고운로 168	041-668-8871 (041-668-8879)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충남 www.cnsinbo.co.kr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622-9831) (041-622-9830)
	보령지점	충남 보령시 공촌동 터미널길 29 (041-933-9831) (041-933-9879)
	논산지점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7-10 (041-733-7161) (041-733-7165)
충북 www.cbsinbo.or.kr	본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043-249-5700) (043-237-0362)
	충주지점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00 (043-249-5760) (043-856-9064)
	남부지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043-249-5780) (043-733-9714)
	제천시점	충북 제천시 풍양로 92 (043-249-5790) (043-651-910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3층,14층,15층 (우)302-847

전 화 : (042) 480-4201~2 / 팩 스 : (042) 480-4007,4008

홈페이지 : www.koreg.or.kr

햇살론안내 : www.sunshineloan.or.kr

대표전화 : 1588-7365

07

기업은행

- 7-1 2015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356
- 7-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358
- 7-3 IP사업화자금대출 / 360
- 7-4 IBK창조기업대출 / 362
- 7-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 364
- 7-6 기술형창업기업대출 / 366
- 7-7 IBK수출준비자금대출 / 368
- 7-8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 369
- 7-9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371
- 7-10 IBK문화콘텐츠대출 / 372
- 7-11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 375
- 7-12 IBK시설투자대출 / 377
- 7-13 토지분양협약대출 / 379

7-1

2015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요상품

구 분	주요 대출상품	상품 개요	비 고
우 수 기 술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기보의 기술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우수 IP보유기업에 자금지원	
	IP사업화 자금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IBK창조기업대출	· R&D과제 성공수행 기업 및 성장·기술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게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평가기반 무보증신용대출	·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 평가) 또는 일반기술평가등급(기업은행 자체평가)에 따라 금리상 한선을 차등 운용하여 우수기술보유 창업기업에 저리로 자금지원	
	기술형창업기업 대출	· 한국은행으로부터 배정된 각 은행별 사전한도 범위 내에서 기술형창업기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지원	
수 출 입 지 원	IBK수출준비 자금대출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는 없으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 및 당행의 추천을 받아 한국 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하는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자금지원	
	수출기업육성 자금대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한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구 분	주요 대출상품	대출 용도	비 고
문 화 콘 텐 츠	IBK문화콘텐츠 대출	·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고부가서비스 산업 지원대출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시 설 투 자	IBK시설투자대 출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토지분양협약 대출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 받고, 총 분양금액 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 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기업에 자금 지원	

문 의 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111

7-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게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상품한도

2,000억원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와 “기술가치평가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1)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2) 기술보증기금의 「IP 가치평가보증」에 의한 대출예정금액 2억원 이상

지원 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포함)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동일인당 최고 100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수시로대출의 경우 1년 이내)

담보조건

- 보증특약이 부여된 90%이상 부분신용보증서

우대사항

- 기술평가료 지원 : 기업 당, 기술평가료 500만원(부가세포함) 은행 지원

문의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7-3

IP사업화자금대출

|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상품한도

1,000억원

지원 대상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력 수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 등급 이상 기업
-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기술력 수준) 기업은행 자체 기술평가 「우수」 이상 판정 기업

지원 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한도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로 최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단,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서 상 내용연수 이내에서 가능

담보조건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6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1,500만원) 지원
- 최대 연 1.5%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7-4

IBK창조기업대출

| R&D과제 성공기업 및 기술성장잠재력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자금관리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D과제 성공기업 및 기술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상품한도

6,000억원

지원 대상

- ◆ IBK창조기업 : 기업은행의 'IBK창조기업' 선정기업
- ◆ 성공기업 : 전문평가기관*이 추천한 R&D성공기업 또는 보증기관의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 ◆ 일반기업 : 기업은행에서 정한 '기술력 인정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합회

** 신보의 가치평가등급 FV1~2등급(FV1~9등급 중) 혹은 기보의 기술인증등급 BBB이상 또는 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 평가 기술신용정보 BBB(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BB+, NICE 평가정보의 경우 B+)이상인 기업

지원 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한도

구 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창조기업	동일인당 15억원	동일인당 100억원
성공기업	동일인당 10억원	동일인당 30억원
일반기업		

대출 기간

-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우대 사항

구 분	IBK창조기업	성공기업	일반기업
금리감면	최대 연 1.5%p 이내	최대 연 0.5%p 이내	
소요운전자금	매출실적이 급격히 신장되거나 금차 기술사업화로 매출신장 예상 시 연간 추정매출액의 1/2 이내로 운용		
소요시설자금	100% 범위 내 운용	90% 범위 내 운용	

문 의 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7-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 우수기술 보유창업기업에 무보증·무담보로 대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소요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지원합니다.

상품 한도 2,000억원 (동일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대상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은행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으로 다음 기술등급 및 기술신용등급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	기술등급	기술신용등급
한국기업데이터	T7(보통)이상	B-이상
기술보증기금	T6(보통)이상	B 이상
NICE평가정보	T6(보통)이상	B-이상
기업은행	보통 이상	

■ 창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창업일

- ① 법인기업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② 개인기업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7년 이상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기업
- 휴·폐업 또는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 운전자금

담보 조건

- 해당사항 없음 (무보증·무담보 조건)

문 의 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7-6 기술형창업기업대출

| 우수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을 별도의 특화상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 ◆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보유기업
- ◆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
- ◆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서 보유기업
-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 ◆ 신제품(NEP)인증서 보유기업, 이노비즈(Inno-biz)기업
- ◆ 연구개발특구소재기업 또는 기술주회사 및 자회사, 지식재산 보증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
- 휴 · 폐업 또는 연체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 운전자금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용 (일시상환방식)
 - 기한연장 시 창업 후 7년 이내 및 인증서·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기한연장 가능

문 의 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한국은행 기술형창업기업¹⁾의 범위

	확인서 · 등록증	확인서 등 발급기관	근거 법률 등
<공통부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특허증	특허청	특허법
	실용신안증	특허청	실용신안법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신기술인증서	정부 부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²⁾
	신제품인증서	정부 부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평가인증서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평가인증기관	기술평가인증기관과 금융기관의 협약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정부 부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R&D기반 창업기업	R&D 성공기술 확인서	정부 부처	각종 정부 고시 등
	연구개발특구 소재 증빙서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인가 증빙서류	정부 부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술력 평가 등이 심사항목으로 포함된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관 규정 등
	기술신용평가서	기술신용평가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연구개발 우수기업	연구개발비 ³⁾ 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다만, 서비스업 ⁴⁾ 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0.5%를 초과하는 기업 ⁵⁾)		
<추가부문>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선정		

- 주1) 공통요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주2) 전력기술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 주3)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전년 대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 주4)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E, G~N, P~S 업종
- 주5) 기업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7-7

IBK수출준비자금대출

|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는 없으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 및 당행의 추천을 받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하는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가 없으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1. 추천기업 : 최근 1년 이내 기보 추천서를 받은 기업
- * 2. 평가서보유기업 : 최근 1년 이내 기보 기술평가서(B등급 이상)를 받은 기업

지원 분야

- 운전자금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3년 이내 (2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 기보 기술평가서(B등급 이상) 보유기업 : 최대 5억원 · 기보 추천기업(기술평가서 B등급 미만 포함) : 최대 2억원
채권보전	보험공사의 90% 이상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

문 의 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7-8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 유관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육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수출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 ◆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이상인 기업
- ◆ '수출강소기업'으로 본부에서 선정한 기업
- ◆ 중소기업청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및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 ◆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기업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지원 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대출 한도

- 운전자금

수출실적	대출한도
1백만불 이상 ~ 3백만불 미만	수출실적의 25% × 대출취급일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
3백만불 이상 ~ 5백만불 미만	수출실적의 20% × 대출취급일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또는 7억원 중 큰 금액
5백만불 이상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시설자금 : 소요 시설자금 범위 내

문의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7-9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수출입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위, 주위, 경보기업), 연체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주의거래처 및 관리거래처)은 여신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 의 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7-10

IBK문화콘텐츠대출

|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1. IBK문화콘텐츠 특례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서(90%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 또는 대위변제로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다만, 협약 후 3년 이내에는 적용제외)

대출 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보증비율 : 90% 부분신용보증서
- 보증료 : 3년간 0.2%p 우대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추천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 산업완성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포함)

대출 기간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 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보증비율 : 95% 부분신용보증서
- 보증료 : 0.2%p 우대

3. IBK문화콘텐츠 담보부대출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부동산 및 기타담보 (신용보증서 제외)를 제공한 기업

지원 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운전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대출 한도

- 여신가능액×110% 이내. 다만,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취급 가능 (최대 130%)

문의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7-11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주요내용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을 보증하는 제도

※ 프로젝트계약 후 최종 결제대금(보통 계약대금의 50~60%)을 계약완수 시점에 지급받는 시장관행(집중지불방식 heavy tail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 결제 간의 금융갭(gap) 해소

지원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 1년 (기간연장시 최대 8년 이내)

대출 한도

-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담보 조건

- 담보의 필요 : 기술보증기금 85%이상 신용보증서 담보

상환 방법

- 일시상환
 - * 보증서상 우선상환 보증특약 문구 부여되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후 수령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이 자동상환

문의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7-12

IBK시설투자대출

| 시설 취득시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 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사업장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용자 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 의 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7-13 토지분양협약대출

| 토지분양 관련 소요자금 지원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는 토지의 피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 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 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개인기업(예비창업자)

대출 한도

- 별도 한도제한 없음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 가계 : 가계일반자금대출 (예비창업자에 한함)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 15년 이내 (단, 외화대출 : 8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 가계 : 5년 이내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분양대금의 80%(신용등급 BBB+이상 : 90%)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 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사항

-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을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의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08

한국산업은행

| 8-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 382

8-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 기업금융, 국제·투자금융 및 컨설팅서비스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 회사채 주선 및 인수,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 기업금융 지원
 - 시설자금(일반시설자금, 특별시설자금)
 - 운영자금(일반운영자금, 중소기업 전용 특별운영자금, 단기운영자금)
 -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특별지원
 - 리스크관리형 상품(통화전환옵션부 대출, 자유자재금리전환대출 등)
 - 수출입금융(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
 - 보증 및 재정·기금
- 국제·투자금융 지원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국제금융 주선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M&A 업무,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PE업무
 - 파생금융상품,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등
- 컨설팅서비스 지원
 -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경영진단 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등

대출조건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계획사업의 성격, 투자회수기간, 고객요청 등을 감안하여 통상 8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결정(최장 10년)
 - 운영자금은 3년(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로 운용되며,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 대출금리
 - 수시 고시되는 자금별, 통화별, 금리변동주기별 기준금리에 일정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실행금리 결정
 - 스프레드는 고객의 신용도, 거래기여도, 담보가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통화
 - 원화, US\$, ¥, 유로화(EUR)중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
 - 중소기업의 대출에는 통화전환옵션이 자동 부여되고, 일정 수수료 부담후 통화전환 가능

여신거래 절차



문의처

- 기업금융 지원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 국제·투자금융 지원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발행시장실
 - 국제금융 주선 : 발행시장실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 발행시장실
 - M&A 업무 : M&A실
 -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 벤처금융실
 - Private Equity 업무 : 사모펀드1실
 - 파생금융상품 : 금융공학실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 금융공학실
- 컨설팅서비스 지원 : 컨설팅실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참고]

한국산업은행 주요 상품안내

I. 기업금융상품

1. 시설자금 상품

□ 일반시설자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설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토지 및 건물 구입자금 ▸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 기존시설의 개보수 자금 ▸ 타금융기관 상환용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 특수용도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직접투자자금 ▸ 공장(사업장) 인수자금(경락자금 포함) ▸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인수자금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형식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출 : 최장 10년 이내 ▷ 사모사채인수 : 최장 5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스프레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 CD 또는 산금채유통수익률 ▸ US\$, ¥, Euro : LIBOR

2. 운영자금 상품

□ 일반운영자금

대출대상	▷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 ▸ 단,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인수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전 소요자금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타금융기관 운영자금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 단, B° 이상 중소기업은 추정매출액의 40% 적용가능

□ 중소기업전용 특별운영자금 ('13년기준)

구 분		대 출 대 상	기간	통화	금 리
중소기업 우대운영 자 금	성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 BB-이상 ▷ kdb Venture Star ▷ kdb Global Star ▷ 경영혁신기업 ▷ 기술혁신기업 ▷ 수출중소기업 	3년 이내	원화 US\$ ¥ Euro	원화 △0.50%P이내, 외화 △0.25%P이내
	신규거래기업 및 상생협력기업	▷ 신규거래중소기업 및 ·중소 기업 상생협력기업	2년 이내		
	녹색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업 ▷ 고용창출기업 			

□ 단기운영자금

구 분	약 정 기 간 (개별대출기간)	대 출 대 상
당좌대월	2년 이내	▷ 신용 및 거래상태가 양호한 당좌예금 거래고객
어음할인	2년 이내 (대기업 180일, 중소기업 1년이내)	▷ 실제상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약속어음 또는 인수필 환어음
기업구매자금 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 거래중 사업목적에 부합 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고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판매기업(협력기업)
통장식외화 한도대출	1년 또는 2년	▷ 수출입거래 등으로 정상적인 외화수요가 있는 당행 신용 평가등급 B ^o 이상 기업
미래채권 담보대출	2년이내 (180일이내)	▷ 구매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물품납품 이전에 생산 자금을 지원
다모아 플러스대출	2년 이내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다모아 기업예금(연결계좌)에 수시 인출·상환이 가능한 원화 한도대출 연계
단기한도대출	1년이내 (1,2,3,4,5,6개월)	▷ 단기간(6개월내에서 월단위)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 (인터넷을 통한 신규 및 연장 가능)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비교

구 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래채권담보대출
차 주	협력기업	좌동
지원자금	납품자금	생산자금
용자시기	납품완료시	발주시
용자금액	매출채권 범위내	발주금액의 80%이내
담 보	확정매출채권	신보서(장래 매출채권)

3. 특별자금

구 분	대 상 기 업	지원방법	기 타
기술평가기반 기술금융 프로그램 - 기술평가기반 신용대출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펀드 - IP기반 신용대출 - 우수기술사업화펀드 - 기술기업 성장지원펀드	▶ 일정수준이상 TCB기술등급을 획득한 기술력 우수기업	대출 및 투자	(금리우대) TCB기술등급 T1 획득시 $\Delta 0.1\%P$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 미래선도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 지식경제부 고시 신성장 동력산업 17개 부문	대출 및 투자	(금리우대) 시설 원화 $\Delta 0.6\%P$, 외화 $\Delta 0.3\%P$, 운영 $\Delta 0.3\%P$ 차감
동반성장대출	▶ 대기업 협력 중소·중견기업 (해당 대기업과 은행이 추천)	시설·운영대출	(금리우대) $\Delta 0.2\%P$ 내외 차감
리더스론	▶ 신용등급 BB+이상인 중견·중소기업	시설·운영대출	(금리우대) 시설 $\Delta 0.5\%P$, 운영 $\Delta 0.3\%P$ 차감
공장부지분양대금 특별대출	▶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시설자금대출	(금리우대) 원가수준 금리우대
전략산업대출	▶ KDB선정 6개 전략부문 해당기업 ▶ 녹색산업육성, 성장동력확충, 서비스산업지원, 경쟁력강화지원,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산업지원	시설자금대출	(금리우대) 원화 $\Delta 0.3\%P$, 외화 $\Delta 0.15\%P$ 차감
설비투자펀드 - 2차중소중견설비투자펀드 - 지역설비투자펀드 - 안전설비투자펀드	▶ 설비투자자금·연구개발소요자금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	대출 및 투자	(금리우대) $\Delta 1.0\%P$ 차감

4.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특별지원

구 분	대 상 기 업	지원방법	기 타
기술·경영혁신기업 우대대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Imo-Biz) 기업 또는 경영혁신형(Main-Biz) 기업 으로 인증받은 기업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 우대 통화전환수수료면제
대출전환옵션부 전환사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향후 기업가치 증대가 기대되는 기업	전환사채인수	지원한도 : 100억원
혁신형중소기업 전용 채권 인수	신평사 2개로부터 BB-, BB°, BB+ 등급을 받은 기업	50억원 이내 공모채인수	채권만기 : 3년 이내 최소발행액 30억원
kdb Venture Star	당행 신용등급 BB-이상으로 - 외부회계감사의견 적정 -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금리우대
kdb Global Star	당행 신용등급 BB-이상으로 -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협력업체 - 해외시장에서 자체브랜드 보유기업 -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기업	시설·운영자금 주식(주식관련채) 인수	금리우대 외국환 수수료 우대

5. 리스크관리형 상품

	통화전환옵션부 대출	자유자재금리전환대출
내 용	고객의 환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 부여	기준금리를 변동에서 고정 고정에서 변동 으로 횡수 제한 없이 전환
적용여신	시설 및 운영자금대출	산업시설자금대출
대 상	제한 없음	신용평가등급 B° 이상 중소기업
수 수 료	중소기업 0.15%, 대기업 0.3%	0.05%

	금리상하한부대출	금리상한부대출
내 용	기준금리 변동폭을 상·하 일정밴드로 한정	기준금리 상한을 설정
적용여신	만기 3년 이내 CD연동 운영자금	만기 3년 이내 CD연동 운영자금
대 상	신용평가등급 B° 이상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 중소기업
수 수 료	없 음	매월 고시

	조기상환부 시설자금대출	연장조건부 단기시설자금대출
내 용	대출기간 1/3 경과후 기한전상환수수료 없이 기한전 상환할 수 있는 옵션부여	계획시설의 내용연수, 자금 용도 등을 감안하여 1년, 2년, 3년 단위로 최장 10년 까지 연장 가능
적용여신	시설자금대출	원화 및 외화 시설자금대출
대 상	신용평가등급 A 이상 중소기업	제한 없음
수 수 료	없 음	없 음

6. 보증 상품

원화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보증 ▶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 당행이 그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사채보증 ▶ 고객이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지급보증 ▶ 상기 보증이외의 원화 관련 지급보증
외화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외화지급보증 ▶ 차관지급보증, 신용장개설을 제외한 모든 외화지급보증 ▶ 차관지급보증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차관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kdb가 외국차관선(또는 그 지정인) 앞 대외외화표시지급보증
해외건설 보증 (이행성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 입찰보증(Bid Bond)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유가증권 대여	▶ 고객이 담보 등의 용도로 유가증권이 필요한 경우 당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주로 상장된 유가증권)을 고객 앞 대여하는 업무
보증료율 (대여료율)	▶ 기준보증료율 + 스프레드 (보증상품, 고객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7. 재정·기금 상품

기 금 명	차 입 처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 원 부 문
재 정 자 금	기획재정부	10~20 (5)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복합화물터미널건설,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등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10 (1~5)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경영안전자금, 사업전화자금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4~12 (2~5)	관광숙박시설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은행	5(2)	응용기술개발지원(일반,기술담보)
정보통신기반조성자금	중소기업은행	5(2)	IT설비투자, 초고속공중망구축 등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자치단체	3~8 (1~3)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은행	8(3)	자본재개발, 첨단기술제품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에너지관리공단	4~15 (2~8)	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공급,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석유사업기금	한국석유공사	15(5)	도시가스배관
환경개선지원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3)	오염방지시설설치, 유해화학물질처리시설
산업재해예방기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3)	산업재해 예방사업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10 (2~3)	재활용산업, 폐기물지원화, 기술개발, 유통판매 지원
가스안전관리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4~8 (1~3)	도시가스시설개선, 가스유통구조 개선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10(5)	직업훈련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	천연가스공급시설
전력산업기반기금	한전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터	8~35 (3~5)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축산발전기금	농협중앙회축산 발전기금사무국	1~10 (1~5)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 등
방위산업육성기금	방위사업청	3~7(2)	방산시설의 도입 설치 비축용원자재의 확보 등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1)	장애인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폐광지역대체 산업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10(5)	시설 및 운영
환경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7 (2~3)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국정밀화학 산업진흥회	8(3)	시설자금

8. 수출입금융 상품

수입 신용장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 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용장 발행 ▷ 일람불, 기한부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개설 ▷ 특수신용장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물 수입용 증기(2~3년) 분할지급 신용장 :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내기업(GSM-102 프로그램) · 자본재 수입용 증장기(3~6년) 분할지급 신용장 : 미국·독일 등 OECD 국가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수출 환어음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 수출계약서(D/P, D/A조건 등)에 따라 선적 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할인하여 매입(추심) 및 내도 수출신용장 관련 서비스 ▷ 수출(내국신용장 포함)환어음 매입(추심) ▷ 수출신용장의 통지, 양도, 확인
무역어음 대출 및 할인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D/P, D/A조건 등)에 의해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고객께 선적전금융 지원
위안화(RMB) 무역결제 서비스	▷ 무역거래가 증명되는 중국지정기업 및 PBOC(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중국기업과의 송금 및 수출입 거래
KDB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B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선호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임 ▷ 양질의 Credit Line과 Global Network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기한부신용장 개설지원 ▷ 저리의 Nego 자원 확보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 맞춤서비스와 함께 고객위주의 다양한 Merit System 제공 ▷ 거액 및 우수고객에 대한 수수료 및 금리 우대 [중소기업고객은 거래실적(약정물량 포함) 1백만불 이상시 우대] ▷ Nego 및 결제대전의 F/X Deal 연계 또는 환율우대 서비스 제공 ▷ 수출입통합한도 운용을 통해 수입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출거래 및 수출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입거래 가능 ▷ 당일 접수된 신용장개설 신청건은 당일중 대외 전문발송

II. 국제·투자금융상품

1.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공모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 기업의 신인도 제고

- 신용평가회사의 공인된 평가등급이 필요한 공모회사채 발행은 발행자체로 금융시장에서 고객위상이 올라가게 됨.

- 거액의 장기자금을 시장금리로 조달
 -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발행은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로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
- 자금의 용도와 만기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
 - 고객의 필요에 따라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등의 자금용도와 만기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음
- 최적의 자금조달을 위한 맞춤발행이 가능
 - 시장여건을 감안, 다양한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발행구조의 선택이 가능함

□ 공모회사채 발행 절차

발행절차	관계법규	담당	시기
주관회사 선정 및 사전협의		고객/당행	D이전
이사회 결의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통보)	상법 제469조	고객	D이전
인수단 구성,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당행	D
사채모집위탁계약 체결		당행	D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금융위 앞)	자본시장법 제119,123~4조	당행	D
상장신청 (한국거래소 앞)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조	당행	D
발행 공고		당행	D+4~8
신고서 효력발생	자본시장법 제120조, 동법 규칙 제12조	금감원	D+4~8
투자설명서 제출 (금융위 앞)	자본시장법 제123~124조	고객	D+4~8
청약·납입	상법 474~476조	인수단	D+5~9
채권등록 (증권예탁원 앞)	공사채등록법 4조	고객	D+5~9
사채납입금 인출		고객	D+5~9
발행실적 보고 (금융위 앞)	자본시장법 제128조 외	고객	D+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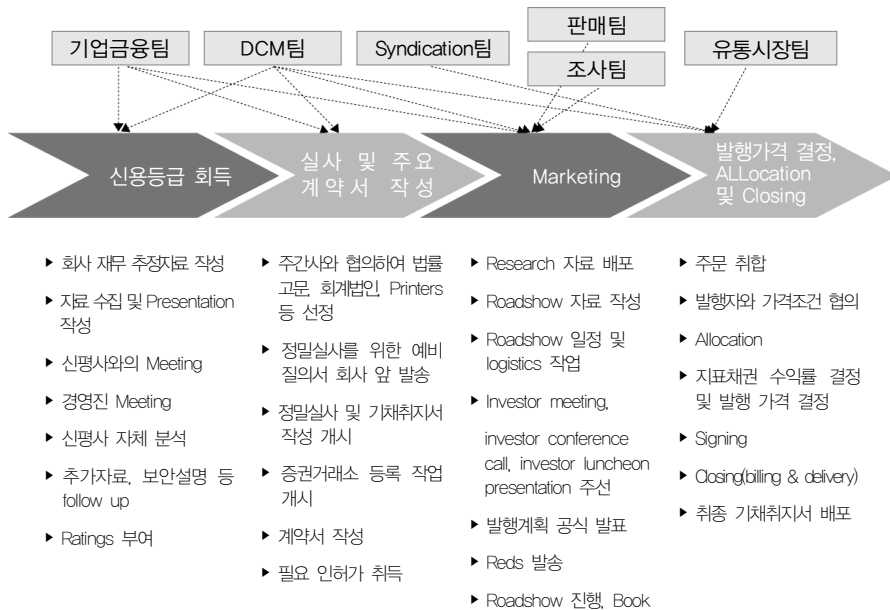
2. 해외공모외화채권 주선 및 인수

□ 해외공모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 장기자금 조달 용이
 - 해외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형태로 발행(국내채권 : 만기 3년)
- 투자자 Base의 확대
 - 한정된 국내채권 투자자들에 비해 국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효율적 자금 조달 가능
- 대규모 자금 조달이 원활
 -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발행의 기재금액은 대부분 1억불 이상
- 국내 신용등급 향상에 긍정적 영향
 - 국제채권발행을 통해 국내·외 인지도 향상, 자금력 확충, 차입원 다각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효과 유발 가능

[문의 : 발행시장실]

□ 국제금융 주선 절차



□ 해외직접투자 절차



3. ABS 발행 및 신용공여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고객)가 보유자산(유동화자산)을 모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후 SP가 이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하는 것으로, 당행은 ABS 발행시 주관회사, 신용공여자, 업무수탁자의 역할 수행 ▶ 유동화 대상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의 창출 및 시장평가가 가능하고 SP 앞 양도할 수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일반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임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의 현금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 ▶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 절감 ▶ 부채증가 없는 자금조달로 재무구조 개선 										
ABS발행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보유자산 분석/타당성 조사 (고객/kdb) ▶ ABS 발행구조 설계 (kdb,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 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 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 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 신용공여 및 Trustee 업무 계약 (k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공여 : 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상환 재원을 보강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Trustee 업무 : 채권 원리금상환 등 SP 업무 대행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5px;">1개월 정도 소요</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금감원 앞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kdb)</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5px;">D-1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금감원 앞 자산양도등록 및 ABS 발행신고서 제출(kdb) ▶ ABS채권 인수 또는 매출 (kdb)</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5px;">D</td> </tr> <tr> <td style="padding: 5px;">▶ ABS 발행</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5px;">D+6</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 </td> <td></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보유자산 분석/타당성 조사 (고객/kdb) ▶ ABS 발행구조 설계 (kdb,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 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 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 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 신용공여 및 Trustee 업무 계약 (k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공여 : 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상환 재원을 보강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Trustee 업무 : 채권 원리금상환 등 SP 업무 대행 	1개월 정도 소요	▶ 금감원 앞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kdb)	D-10	▶ 금감원 앞 자산양도등록 및 ABS 발행신고서 제출(kdb) ▶ ABS채권 인수 또는 매출 (kdb)	D	▶ ABS 발행	D+6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보유자산 분석/타당성 조사 (고객/kdb) ▶ ABS 발행구조 설계 (kdb,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 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 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 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 신용공여 및 Trustee 업무 계약 (k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공여 : 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상환 재원을 보강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Trustee 업무 : 채권 원리금상환 등 SP 업무 대행 	1개월 정도 소요										
▶ 금감원 앞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kdb)	D-10										
▶ 금감원 앞 자산양도등록 및 ABS 발행신고서 제출(kdb) ▶ ABS채권 인수 또는 매출 (kdb)	D										
▶ ABS 발행	D+6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 											
발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발행 만기구조, 금리 및 신용공여약정 기간, 금리 등의 조건은 발행구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동화계획 등록전 고객과 협의 결정 										

[문의 : 발행시장실]

4. M&A 업무

<p>M&A 주요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관련 자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작사업 등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 M&A 관련 금융추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의 목적과 형태,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금융추선 서비스 제공
<p>M&A 특 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성장전략 및 구조조정전략으로 활용 ▷ 인수자의 신규시장 진입시간 단축 ▷ 피인수기업의 인력, 기술, Know-How를 단시간 내에 습득 ▷ 한계기업의 퇴출전략 등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기업가치의 평가, 협상전략의 수립, 법률문제의 검토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용역 병행 필요
<p>M&A 절 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의뢰 : 절차 및 수수료 협의, 자문계약 체결 ▷ M&A전략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목표 및 전략의 규명 ▶ 업계 현황분석 및 M&A 타당성 검토 ▶ M&A 전략수립, 세부 실행계획 작성 ▷ 목표기업의 선정 및 접촉과 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가치 평가, 가능성 타진 ▷ 기본의향서 교환 : 거래조건, 가격결정방법 등 ▷ 정밀실사 ▷ 협상 및 계약체결 ▷ 대금지급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대금 수수 및 정부 인허가 등 법적절차 완료 ▶ Post M&A 업무수행 등 사후관리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주로 회사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관련)

[문의 : M&A실]

5.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에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기업 ▷ M&A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 기업 ▷ 프로젝트 형태의 단위 사업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투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투자 ▷ 주식관련채권 ▷ 프로젝트투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주/우선주 등 ▪ CB, BW, EB 등 ▪ 특정 사업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투자계약증권 형태 ▪ 투자대상별로 최적화된 별도의 구조화 투자상품 제공
투자조건	▷ 투자대상별 개별 합의

[문의 : 벤처금융실]

6. Private Equity 업무

개요	▷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
PEF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v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능력이 충분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비공개) 자금 모집 ▪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회피 가능, 다양한 펀드 구조 설계가능 ▷ Equ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하여 주로 비상장 기업의 자본증권 등에 투자가 이루어짐 ▷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 고도의 전문기에 의한 투자로써 성과보수체계 채택 등을 통해 운용자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해소
PEF 업무 F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설립 ▷ 투자대상 발굴 (다양한 Network를 통한 Deal Sourcing, 예비검토 및 투자 여부 잠정결정) ▷ 투자승인 및 실행 (실사(회계, 법률 등), Valuation, Deal Structuring, 투자승인, 계약체결, 실행) ▷ 기업가치 제고 (경영진 선임(최소 1명의 이사), 투자계약서에 의한 사후관리, 기업가치 제고 컨설팅,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실행) ▷ 투자회수 (M&A, IPO, Secondary Sale, Tag Along, Put Option 등) ▷ 펀드청산 (회수금 분배 및 법인 청산절차 진행)

[문의 : 사모펀드1실]

7. 대고객 외환거래

<p>거래 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결제자금의 매매 ▷ 해외송금 및 수취자금의 매매 ▷ 해외 직·간접 금융을 통한 외화자금의 조달 및 상환 관련 외환매매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외환의 매매 등
<p>거래 방식</p>	<p>【 현물환거래 Spot Transaction 】 외환매매거래일(deal date)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고객이 원할 경우 거래일 당일 또는 거래일 익영업일 결제거래로 스왑마진(자금비용)을 반영하여 거래 가능</p> <p>【 선물환거래 Forward Transaction 】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Value Spot)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외환매매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정산 또는 조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환 거래를 한 고객은 결제일에 인수도(delivery) 정산하거나, 반대거래를 통해 차액 정산할 수 있음 · 선물환거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그 시점에서 정산 수수하여야 함 <p>【 외환스왑거래 FX Swap Transaction 】 특정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만기일에 원래 통화로 재교환하는 외환매매거래(두 통화간 일시적 과부족을 외환 스왑거래를 통해 해소)</p>
<p>이용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달러, 원화대 기타 통화간 거래 : 09:00 ~ 15:00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24시간 거래 가능 ▷ 거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거래계약 체결 :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 선물환거래와 외환스왑거래는 거래실행전 한도승인 절차 필요 · 외환매매거래 실행 : 전화요청 및 거래환율 결정 · 외환거래확인 : 확인서(Confirmation Slip) 교부 및 확인 · 결제일에 거래대금 수수
<p>기타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 수출입 결제대금에 대해서도 우대환율 적용 ▷ 일일 외환시장 동향과 전망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www.kdb.co.kr)

[문의 : 금융공학실]

8.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실시간 시장환율 기준으로 시장가 또는 지정가 방식으로 현물환 거래를 하는 시스템 <li style="padding-left: 20px;">: 거래수수료의 대폭인하로 소액의 외환거래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거래 가능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시간 : 09:00 ~ 14:3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거래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대 외화간 거래 : USD/KRW, JPY/KRW, EUR/KRW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USD/JPY, EUR/USD ▷ 거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D기준 1,000불이상 100만불 이하 ▷ 거래수수료 (1 US\$당) <table border="1" data-bbox="350 730 617 1084" style="margin-left: 20px; width: 100%;"> <thead> <tr> <th>거래금액 (US\$)</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1천~1만</td> <td>2.1원</td> </tr> <tr> <td>1만~5만</td> <td>1.8원</td> </tr> <tr> <td>5만~10만</td> <td>1.4원</td> </tr> <tr> <td>10만~20만</td> <td>1.1원</td> </tr> <tr> <td>20만~30만</td> <td>0.7원</td> </tr> <tr> <td>30만~50만</td> <td>0.5원</td> </tr> <tr> <td>50만~100만</td> <td>0.4원</td> </tr> </tbody> </table> ▷ 거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터넷외환거래서비스 이용 신청 ▷ 거래한도 부여 ▷ 이용약관 체결 (전자서명) ▷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실행 ▷ 현금인출시 인출 수수료 1% 추가 * 거래 금액 및 수수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거래금액 (US\$)	수수료	1천~1만	2.1원	1만~5만	1.8원	5만~10만	1.4원	10만~20만	1.1원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거래금액 (US\$)	수수료																
1천~1만	2.1원																
1만~5만	1.8원																
5만~10만	1.4원																
10만~20만	1.1원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기 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스왑, 통화옵션 등 파생상품의 주요 거래조건과 거래효과 등 상세정보 제공 및 파생상품 계산기를 이용한 모의거래 기능 제공 ▷ 고객의 환리스크를 분석해주고 모의거래를 통한 환리스크 헷지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환위험관리시스템 제공 																

[문의 : 금융공학실]

9. 파생금융상품

주요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환리스크 헤지 ▸ 원자재, 원유 등 상품가격의 변동리스크 헤지 ▷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 차입시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 원화 차입시 금리리스크 헤지 및 금리절감 ▷ 기관투자자(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 채권 및 예금을 통한 Yield Pick-Up (금리, 환율, 지수 및 상품연동 채권 및 예금) ▸ 보유중인 외화자산의 금리 및 환리스크 헤지 ▸ 보유중인 주식의 주기변동 리스크 헤지
기본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선물환 (Long-Term Forward) ▸ 통화스왑 (Cross Currency Interest Rate Swap) ▸ 통화옵션 (Vanilla Option, Exotic Option) ▷ 금리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왑(IRS) ▸ 금리옵션 (Cap/Floor, Swaption) ▷ 개별주식(주가지수)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주식(주가지수)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Equity Linked Swap ▷ 상품(Commodity)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원유, 금속 등)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Commodity Linked Swap
구조화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환보다 유리한 조건의 환리스크 헤지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nge Forward, Enhanced Forward 등 Zero Cost 상품 ▷ Yield Pick-Up을 위한 투자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 산금채, 예금 판매 (Callable, CMS 등) ▸ 구조화채권 발행기관 및 투자자 대상 헤지상품 판매 ▷ 주식을 활용한 Equity Finance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주식매각, EB/CB/BW 발행을 통한 Financing ▸ 주식관련채의 주식과 채권부분 strip 및 매매 ▷ 상품(Commodity)가격 리스크의 헤지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금리 등과 연계한 헤지상품

[문의 : 금융공학실]

Ⅲ. 컨설팅 서비스

1.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및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 제품/사업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기업 운영방안 및 기업발전 전략(조직, 인사, 프로세스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수립 ▶ Pre M&A, 전략적 실사, PMI 등 M&A 관련 컨설팅 ▶ 자산·부채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 채무재조정 방안, Work-out Plan 수립 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사 인수금융 관련 재무전략 수립 ▶ A사 대출 및 주식인수 관련 컨설팅 ▶ G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 ▶ D건설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 B공사 자금조달 전략 컨설팅 ▶ P사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 D사 구매절차 및 내부감사시스템 개선 컨설팅 외 다수

2. 신규사업 타당성 컨설팅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 시장분석 및 시장진입전략 수립 ▶ 자금계획 등 재무전략 수립 ▶ ABS, PF 등 복합금융기법을 이용한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제공 ▶ 금융주선 및 자본유치 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성 검토 ▶ D사 공장신축을 통한 신사업진출 가능성 검토 ▶ T사 호텔 인수에 대한 사업성 검토 ▶ E사 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 B사 선박 신조 등에 대한 사업성 검토 ▶ N사 외국기업 2차전지 사업부 인수타당성 검토 외 다수

[문의 : 컨설팅실]

3. 공공 및 부동산 개발 컨설팅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 사업의 개발계획/실행 방안 수립 및 타당성 분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민자 유치방안 수립 ▷ 공기업 경영전략 및 민영화 추진 계획 수립 ▷ 기술사업화 및 IP보유기업에 대한 KDB Techno-Banking 지원 ▷ 지역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 사업성 검토 ▷ 산업입지,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성 검토 ▷ 부동산개발사업 최적금융방안 수립 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컨설팅 ▷ Y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컨설팅 ▷ D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리파이낸싱 컨설팅 ▷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 ▷ H사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성 검토 ▷ U시 도시개발 사업 컨설팅 ▷ 선진국 도시철도 PPP사례 연구 ▷ 경상북도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청계천 S구역 복합타운 개발계획 수립 외 다수

4. 성장단계별 컨설팅

□ KDB Start-Up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단계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당 기업의 조기안정화 및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멘토 개념의 무료 컨설팅프로그램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경영전략 : 내부역량분석, 시장진입전략, 성장전략 등 ▷ 자금조달전략 : 자금수지분석,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적정성 분석 등 ▷ 경영환경분석 : 산업분석, 경쟁자분석, 관련제도 및 정책분석 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7년 이내 당행거래 벤처 · 중소기업 ▷ KDB 테크노뱅킹 지원 대상 기업 ▷ 정부주관 성장사다리펀드(스타트업 펀드) 투자기업 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사 초기경영전략 컨설팅 ▷ J사 자금조달전략 컨설팅 ▷ S사 포항테크노파크 연계 『창조기업육성 프로그램』 관련 컨설팅 외 다수

[문의 : 컨설팅실]

□ KDB Jump-Up 컨설팅

내 용	▷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Jump-Up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서비스 영 역	▷ 경영전략 : 중장기 성장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등 ▷ 재무전략 : 재무진단, 자금조달 및 운용전략 등
대 상	▷ 중소·중견기업 중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이 필요한 기업
사 례	▷ J사 재무전략 컨설팅 외 다수 ▷ H사 경영전략 컨설팅 외 다수

※ 『KDB 성장단계별 무료 컨설팅』 대상은 영업점 RM과 협의하여 선정

□ KDB Global Highway 컨설팅

내 용	▷ 기업의 해외 신사업 진출 및 글로벌 전략 수립 지원 유료 컨설팅
서비스 영 역	▷ 해외진출 전략 : 시장진입 전략, 성장전략 등 ▷ 해외 사업타당성 검토 : 산업분석, 내부역량분석, 재무분석 등
대 상	▷ 영업점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컨설팅 수행 * 중기청 주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포함
사 례	▷ 한국형 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사우디 현지 Financing전략 수립 ▷ N사 2차전지 관련 해외사업인수 컨설팅 ▷ K사 중국 진출 관련 사업성 검토 ▷ N사 중국 진출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컨설팅 ▷ A사 미안마 목재사업 컨설팅 ▷ 뉴욕 A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컨설팅 ▷ S사 카자흐스탄 유전광구 탐사사업 타당성 검토 외 다수

※ 『KDB Global Highway 컨설팅』은 유료이며, 중기청 선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대상 기업은 수수료 50% 이내에서 정부지원

[문의 : 컨설팅실]

[참고]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 국내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7-4000	
본점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6-8503	02)787-5791
가산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가산동, STX V타워)	02)2081-3500	02)857-7598~9
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8 (삼성동)	02)560-0300	02)553-8359
개포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 남서울중앙교회 1층	02)2183-8100	02)2183-8199
금천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8 (독산동)	02)3282-8900	02)852-7214
남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1	02)2149-2400	02)2149-2499
노원지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1~2층 (상계동, 교보생명빌딩)	02)950-9500	02)934-7709
논현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POBA강남타워 2층	02)519-0700	02)519-0799
대치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대원빌딩 5층	02)2193-4100	02)2193-4198~9
도곡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4, 2층 (도곡동, 이카데미스위트)	02)3498-3800	02)579-0249
마포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서교동)	02)3140-0400	02)338-0479
명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개양빌딩 5층	02)773-1150	02)773-1196
반포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중심상가 5층)	02)3488-8500	02)594-7990
서소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5 한신빌딩1층	02)398-9500	02)398-9599
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초동)	02)3488-7500	02)581-1036~7
선릉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금융프라자2층	02)2192-7100	02)564-4398~9
성동지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20길 3 세종빌딩 2,3층	02)3408-9600	02)3408-9697
신문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우건설빌딩1층	02)398-9600	02)398-9699
신천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45 리센츠상가 2층	02)2240-8300	02)2240-8398~9
압구정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1층 (신사동 중산빌딩)	02)3218-0900	02)548-7409
여의도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02)2000-0600	02)782-8321
이수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동주빌딩 2층	02)2182-8700	02)2182-8798~9
이촌지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한석빌딩 1층	02)2125-8000	02)798-0080
종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관철동, 삼일빌딩)	02)398-6700	02)735-0136
잠실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층	02)2240-8200	02)415-9022
잠원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65 미래빌딩 2층	02)2240-1500	02)2240-1598~9
중계지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19 법성프라자 1층	02)2092-3100	02)2092-3198~9
청담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트리니티빌딩 5층	02)2258-9000	02)2258-9098~9
충정로지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1,2층	02)2127-8600	02)2127-8698~9
한티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DMARK 빌딩	02)3469-2300	02)3469-2398~9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 경기지역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5, 1~2층 (감정동, 청담메디컬센터)	031)980-8800	031)997-5112
남부평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1 금남빌딩 5층	032)502-2180	032)502-2196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1 인창프라자 2층	031)350-1200	031)350-1298-9
부천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상동)	032)620-1200	032)325-4761~2
부평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주로 635, 201호 (삼산동, 엘림타워)	032)363-5300	032)361-1198~9
분당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서현동)	031)789-1500	031)707-4152~3
송도기업 금융영업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층 (송도동, 미추홀타워)	032)833-8161~5	032)833-7798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1~2층 (인계동, 경기도새마을회빌딩)	031)220-7300	031)226-7330
시화지점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정왕동)	031)496-4400	031)498-2924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고잔동)	031)412-0600	031)487-6942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42 (관양동)	031)380-0900	031)388-0551~2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 2층 (중동, 벤틀스타빌딩)	031)280-6100	031)280-6197~8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8(교보생명빌딩 2층)	031)872-0750	031)872-0757
인천지점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07 (주안동)	032)450-3400	032)437-6028~9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1 (징향동) 1,2층	031)920-4000	031)920-4088
정자동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93 (두산위브퍼빌리온B동 2층)	031)789-4900	031)789-4998~9
판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6번길 128 마크시티 그린빌딩 2층	031)779-8100	031)779-8198~9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39, 1층 (합정동 쌍용대산빌딩)	031)659-0500	031)654-8198
호계지점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466 화일빌딩 2층	031)420-9500	031)420-9598~9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7, 2층 (태성프라자)	031)350-3700	031)8059-0599
◎ 충청, 강원지역			
당진지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로 211-15 (읍내동 266), 1층 (서해빌딩)	041)359-2600	041)356-3699
대덕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05 (관평동)	042)939-8600	042)939-8698~9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둔산동)	042)600-6200	042)489-7494-5
아산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 234번길 2 메디포스빌딩 2층	041)537-2300	041)537-2398~9
천안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신부동)	041)559-2600	041)562-8364
청주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6 (북문로1가)	043)229-2900	043)255-9001
충주지점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1층 (봉방동)	043)850-7700	043)852-2194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2 (단구동)	033)760-3800	033)765-1897~8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 호남, 제주지역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1 (우산동)	062)958-1000	062)953-7984~5
금남로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대우증권빌딩 2층	062)232-1460	062)232-1467
목포지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6 (상동)	061)280-5400	061)285-0353~4
여수지점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학동)	061)690-8500	061)682-0165
군산지점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길 18 (장미동)	063)440-3600	063)442-5245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8 (경원동1가)	063)230-6600	063)230-6666
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일도일동)	064)720-1700	064)759-9015
◎ 영남지역			
거제지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아주비즈니스텔 3층	065)688-3721	065)688-4636
경산지점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 도륜빌딩 1층 (중방동)	053)819-1900	053)819-1998~9
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송정동)	054)450-4700	054)457-4644
금정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구서동)	051)510-4700	051)510-4798~9
김해지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81, 2층 (내동 동화선프라자)	055)310-2220~3	055)310-2299
녹산지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단지335로 12-5, 4층 (송정동 J빌딩)	051)974-4100	051)941-6199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1~2층 (동인동2가, 호수빌딩)	053)606-2500	053)255-1460
동래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225(수안동)	051)553-3980	051)553-3997
범일지점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29(범일동) 대우증권빌딩 2층	051)632-2460	051)632-2471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중앙동2가)	051)240-1600	051)240-1677~9
사하지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삼성전자빌딩 2층	051)205-1970	051)205-1978
성서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월암동)	053)605-4600	053)584-6871~2
양산지점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6길 9 BYC빌딩 2층	055)380-8500	055)380-8598~9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6 (신정동)	052)270-4900	052)271-0484~5
진주지점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3, 201호 (평안동 롯데인벤스)	055)749-4300	055)743-9110
창원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상남동)	055)268-2700	055)285-0187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6 1층 (죽도동)	054)288-4500	054)272-1655~6
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대우월드마크센텀상가 2층)	051)749-8300	051)746-1797

□ 국외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토쿄지점 (KDB Tokyo Branch)	GranTokyo North Tower 36F 1-9-1,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6736, Japan	81-3)3214-4541	81-3)3214-6933
오사카출장소 (KDB Osaka Sub-Branch)	12F NM Plaza Midosuzi, 3-6-3 Awazi-cho, Chuo-ku, Osaka, Japan	81-6)6233-3008	81-6)6233-3009
베이징지점 (KDB Beijing Branch)	27th Floor, West Tower, Twin Towers,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PRC	86-10)6568-8858	86-10)6568-6978
상하이지점 (KDB Shanghai Branch)	Room 3810, 38th Floor, 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No.100, Century Avenue, Pudong New Area, Shanghai 200120, PRC	86-21)6887-1234	86-21)6877-5556
광저우지점 (KDB Guangzhou Branch)	Suite 1702, 17th Floor, International Finance Place, No.8 Huaxia Road, Pearl River New Town, Guangzhou 510623, PRC	86-20)8550-6008	86-20-8550-6010
선양지점 (KDB Shenyang Branch)	31F, CR Building, No.286 Qingnian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Province 110004, PRC	86-24)3125-9988	86-24)3125-5096
싱가폴지점 (KDB Singapore Branch)	8 Shenton Way #07-01, Temasek Tower, Singapore 068811	65)6224-8188	65)6225-6540
런던지점 (KDB London Branch)	16th Floor,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44-20)7426-3550	44-20)7426-3555
뉴욕지점 (KDB New York Branch)	320 Park Ave. 32nd Floor, New York, NY 10022	1-212)688-7686	1-212)758-3296
KDB홍콩 (KDB Asia Limited)	Suite 2005-09,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2524-7011	852)2810-4447
KDB01아일랜드 (KDB Ireland Limited)	Ground Floor, Russell House, Stokes Place, St. Stephen's Green, Dublin 2, Ireland	353-1)4753-644	353-1)4753-658
KDB유럽 (KDB Bank Europe Limited)	H-1054 Budapest V., Bajcsy-Zsilinszky ut 42-46,	36-1)374-9903	36-1)328-5454
KDB브라질 (Banco KDB do Brasil S.A.)	Av.Brigadeiro Faria Lima, 3400 Ed. Faria Lima Financial Center 15 andar Conj.152 Itaim Bld, Sao Paulo, SP, Brasil CEP:04538-132	55-11)2138-0000	55-11)2138-0150
KDB우즈베키스탄 (KDB Bank Uzbekistan)	32, Oybek Street, Tashkent 100015, Uzbekistan	998-71)120-8000	998-71)120-6970
프랑크푸르트사무소 (KDB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Bockenheimer Landstrasse 51-53,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49-69)920713-00	49-69)920713-99
호치민사무소 (KDB Hochiminh)	Unit 604, Kuntro Asiana Plaza Saigon, 39 Le Duan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84-8)6291-7871	84-8)6291-7672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Representative Office)			
아부다비사무소 (KDB Abu Dhabi Representative Office)	Unit 1302, Etihad Towers 3, Abu Dhabi, U.A.E, PO Box 63057	971-2)666-3374/ 971-2)666-7173	-
양곤사무소 (KDB Yangon Representative Office)	#1808 18th Floor, Sakura Tower, No. 339 Bo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Myanmar	95-1)255150~1	95-1)255152
모스크바사무소 (KDB Moscow Representative Office)	Office 804, Entrance 3, World Trade Center, Krasnopresnenskaya nab. 12, 123610, Moscow, Russia	7-495)669-4405	7-495)669-4405
방콕사무소 (KDB Bangkok Representative Office)	15th 5L Athenee Tower, 63 Wireless Road (Withayu), Lumpini,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66-2-168-8499/ 66-92-730-0748 (c)	66-2-168-8500
마닐라사무소 (KDB Manila Representative Office)	the 18th Level, Tower 1, The Enterprise Center, 6766 Ayala Ave., Paseo de Roxas, Legaspi Village, Makati City, Philippines	63-2-556-2267	63-2-556-0912

□ 관계회사

구 분	주 소	대표전화
KDB캐피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KDB캐피탈	02)6330-0114
KDB대우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대우증권 빌딩	02)768-3355
KDB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층	02)6333-3500
KDB생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서소문동 135번지) 올리브타워 1층/10층~14층	02)6303-5000

09

한국수출입은행

- 9-1 2015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410
- 9-2 수출초보기업 육성프로그램 / 411
- 9-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412
- 9-4 기술금융 프로그램 / 415
- 9-5 상생금융 프로그램 ① / 417
- 9-6 상생금융 프로그램 ② / 419
- 9-7 상생금융 프로그램 ③ / 421
- 9-8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424
- 9-9 수출금융① - 수출촉진자금 / 426
- 9-10 수출금융② - 수출성장자금 / 429
- 9-11 수출금융③ - 수출이행자금 / 431
- 9-12 해외투자금융 / 433
- 9-13 수입금융 - 수입자금 / 436
- 9-14 이행성보증 / 439
- 9-15 무역금융 / 441

9-1

2015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 수출초보기업 육성프로그램
-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 * 기술금융 프로그램
- * 상생금융 프로그램
- * 환위험관리 지원프로그램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야		상품명
대출	수출관련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입관련	수입자금
	해외사업관련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보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할인	수출관련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9-2

수출초보기업 육성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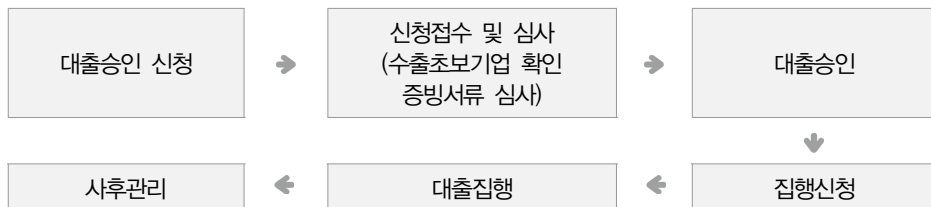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금리우대, 대출한도확대 등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지원등의 비금융서비스 제공

| 우대사항 |

- 대출금리 : 최대 0.5%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 절차**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중소기업기획팀 : 02-6255-5332

9-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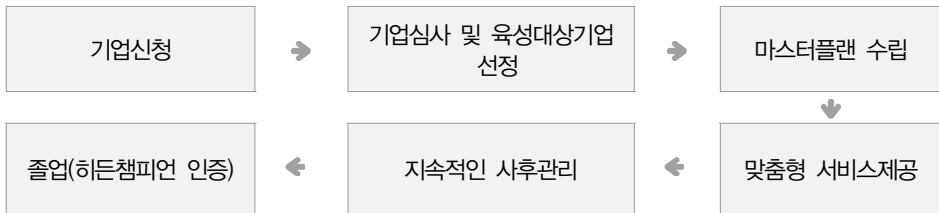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중견 기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실행 절차



• 기업신청

- 신청자격 :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SW개발·공급 기업 및 SI기업 등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14개 중소여신부점 및 출장소
- 선정기간 : 매년 당행 홈페이지 게시

- 심사 및 육성대상기업 선정
 - 선정기준 : 한국형히든챔피언 적합도(80%) + 재무안정성(20%)
 - 선정절차 : 1차심사(60점) → 2차심사(40점)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히든챔피언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 최종 선정 기업이 제출한 중장기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기업의 니즈(Needs)와 역량에 맞추어 수출입은행이 제공할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플랜을 수립

- 맞춤형 서비스제공
 - 금융서비스
 - “제품개발 → 생산 → 해외판매”에 이르는 기업의 글로벌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범위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제공
 -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한도 확대
 - 맞춤형 패키지금융* ·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등 특별지원제도 운용
 - * 맞춤형 패키지금융 : 중장기사업계획상 전략과제 실행에 필요한 여러 자금을 일괄승인
 - **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 기업별 여러 자금을 통합해 연간 회전한도 설정후 한도범위 내에서 개별여신 승인
 - 비금융서비스
 -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제공
 - 히든챔피언 잡포털(기업-청년구직자간 잡매칭), 히든챔피언 카페, 히든챔피언 아카데미, 성장전략코칭, 환위험컨설팅, 국제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산학협력 등

- 지속적인 사후관리
 - 매년 육성대상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서는 마스터 플랜수정 또는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 취소

- 졸업(히든챔피언 인증)

- 히든챔피언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히든 챔피언으로 인증(우대지원 5년간 유지)

* 육성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원대상기업 중 ①수출 1억불 이상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제품을 보유하거나, ②수출 3억불 이상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제품을 보유하거나, ③매출 1조원 이상이고 수출 비중 50% 이상인 글로벌 중견기업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히든챔피언팀 : 02-3779-5293

9-4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을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한 뒤 이를 반영한 신용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및 기술보증기금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14.11월 기준 :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수출성장자금대출 방식 납품협력 중소기업 지원'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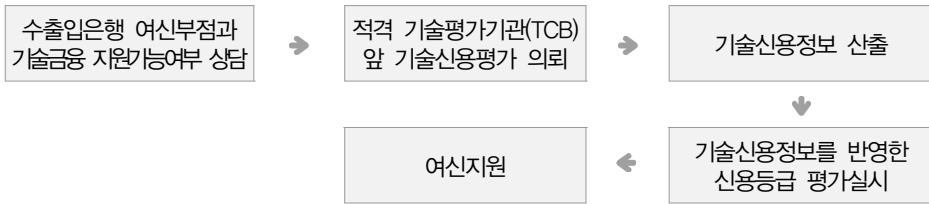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5%p)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시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점

지원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중소기업팀 : 02-6255-5332
- 중소기업금융부 : 02-6255-5308, 5283
- 미래산업금융실 : 02-6255-5265

| 지점 |

- 중소기업금융부 : 02-6255-5308, 5283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청주지점 : 043-237-0475
- 미래산업금융실 : 02-6255-5265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구지점 : 053-260-41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인천지점 : 032-235-6114
- 전주지점 : 063-271-6134

9-5

상생금융 프로그램 ①

|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추천을 받아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동반진출 중소기업

지원 내용

① 직접 지원

• 개요

- 상생협약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이 직접 해당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맞춤형 또는 패키지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지 공장 및 설비 증설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현지 생산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현지 대기업 앞 납품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 등으로 지원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 및 고객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해외투자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운영자금 : 3년 이내
- 시설자금 : 30년 이내
- 수출팩토링 : 6개월 이내

② 간접 지원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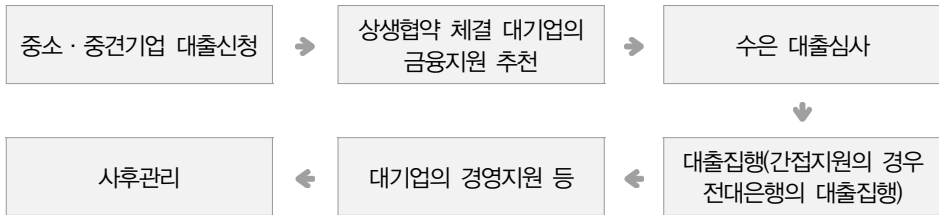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이 현지은행 앞으로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하고 현지은행이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에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은 현지은행 앞으로 Support Letter를 제공하는 등 협력기업에 대해 현지영업활동을 지원
- 현지영업활동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현지화로 제공하여 환위험관리 지원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기업성장지원부 중소기업팀, 중소기업금융부) 및 지점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중소기업팀 : 02-6255-5332
- 중소기업금융부 : 02-6255-5308

| 지점 |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7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9-6

상생금융 프로그램 ②

| 상생자금대출 프로그램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이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상생대기업이 당행 여신지원을 추천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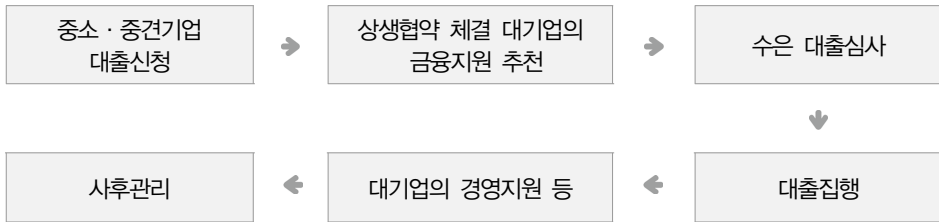
- 개요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 협력기업 앞으로 수출용 물품의 제작자금 또는 수출이행을 위한 이행성 보증을 지원
 - 대기업의 지원은 수출입은행과 체결하는 상생협력약정 내용에 따름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대기업앞 수출물자나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이 수출물자나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 및 고객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수출성장자금대출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이행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기업성장지원부 중소기업팀, 중소기업 금융부) 및 지점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중소기업팀 : 02-6255-5332
- 중소기업금융부 : 02-6255-5308

| 지점 |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7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9-7

상생금융 프로그램 ③

| 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을 차주로 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앞으로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즉시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을 대신하여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대기업으로써 수출 및 외화가득효과가 큰 업종을 영위하며 국내 중소·중견협력기업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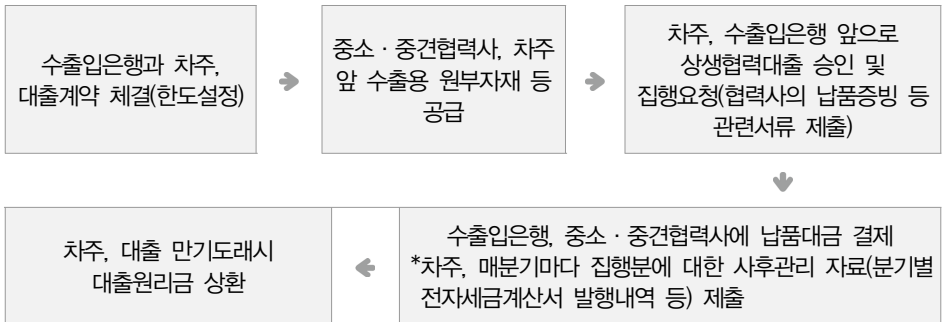
지원 내용

- 개요
 - 원청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을 중소·중견협력기업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신용도 및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중견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운용키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대출금액 : 중소기업·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건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기업성장지원부 중소기업팀, 중소기업중견금융부) 및 지점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중소기업팀 : 02-6255-5332
- 중소기업금융부 : 02-6255-5308

| 지점 |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7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 |

9-8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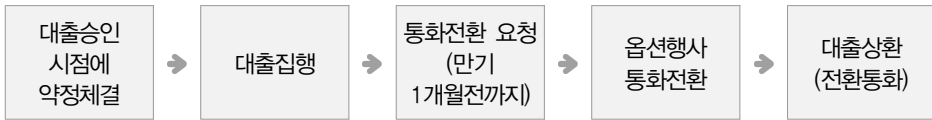
|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위한 각종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 제공

수출중소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관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서비스입니다.

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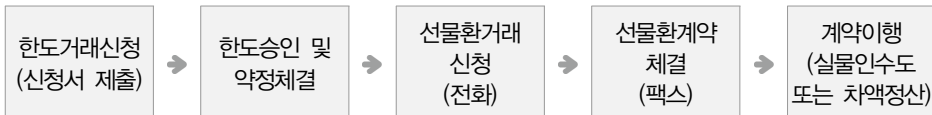
① 통화전화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② 선물환거래

- 개요 : 수출중소기업이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선물환 현재 시점에서 미리 확정하여 환율하락에 따라 외화의 가치하락을 방지하도록 지원
- 실행절차



비금융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고객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 관리 방안 제시
- 환위험관리 설명회 : 지방소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환위험관리 개요, 필요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 개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중소기업팀(02-6255-5332)

9-9

수출금융① -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자금용도 |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 해외시장개척활동
- 기타 수출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

| 대출금액 |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
 - 중소기업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그 외 기업 : 5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100억원)

| 대출기간 |

-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상환방법 |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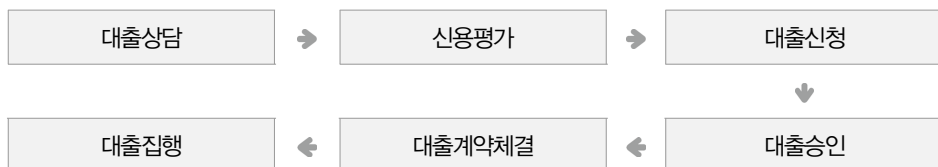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점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 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 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상단 '정보공개' → '서식 및 약관'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미래산업금융실 : 02-6255-5265
- 해양기업금융실 : 051-922-8872

| 지점 |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7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9-10

수출금융② -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물품 등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대출금액 |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60% 이내
 - 중소기업의 경우 70%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단, 기업별 대출한도 2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400억 원까지 증액가능

| 대출기간 |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 상환방법 |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점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상단 '정보공개' → '서식 및 약관'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미래산업금융실 : 02-6255-5265

| 지점 |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7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9-11

수출금융③ -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지원 내용

| 대출금액 |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창조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 대출기간 |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상환방법 |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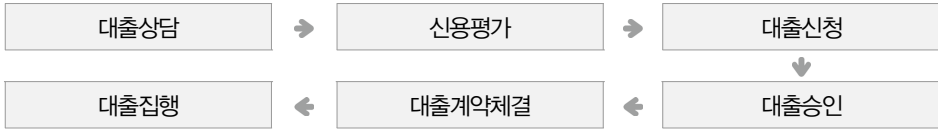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점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 용도별 증빙서류 등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상단 '정보공개' → '서식 및 약관'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미래산업금융실 : 02-6255-5265
- 해양기업금융실 : 051-922-8872

| 지점 |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7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9-12 해외투자금융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주요 자원 개발사업 등을 하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해외투자자금 :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금액 |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운영자금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상환방법 |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점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상단 ‘정보공개’ → ‘서식 및 약관’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미래산업금융실 : 02-6255-5265
- 해양기업금융실 : 051-922-8872

| 지점 |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7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9-13

수입금융 - 수입자금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나프타, 원목, 광물, LNG·LPG 등 주요 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물가안정, 내수활성화,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지원 내용

| 대출금액 |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대상물품 등에 대한 과거 수입실적(개발수입 및 시설재수입 실적 제외) 기반으로 지원 가능
 - 대출기간 6개월 : 수입실적의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 수입실적의 60% 이내

| 대출기간 |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시 : 6개월, 1년

| 상환방법 |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거치기간 3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시 : 만기 일시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점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상단 '정보공개' → '서식 및 약관'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미래산업금융실 : 02-6255-5265

| 지점 |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청주지점 : 043-237-0475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구지점 : 053-260-41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인천지점 : 032-235-6114
- 전주지점 : 063-271-6134

9-14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

보증 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처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처 또는 수입자 앞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시공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사완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할 것을 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보증금액(기간)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기간) 범위 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미래산업금융실 : 02-6255-5265
- 해양기업금융실 : 051-922-8872

| 지점 |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7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9-15 무역금융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거나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신용도가 양호한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 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기업

지원 내용

| 대상거래 |

- 수출환어음매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O/A)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방식)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당행 기준 일정 등급 이상 소재국가의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에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중계무역 포함)

| 대출금액 |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 대출기간 |

- 수출환어음매입 : 30일이상 2년미만(O/A방식에 따른 수출채권매입의 경우
에는 30일 이하도 가능)
- 포페이팅 : 30일이상 2년미만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및 지점

제출 서류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매입한도/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
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상단 ‘정보공개’ → ‘서식
및 약관’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468

| 지점 |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7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부서명	업무	전화번호(02)	팩스번호(02)
기업성장 지원부	수출초보기업, 하든챔피언사업, 기술금융 및 상생금융프로그램 지원	6255-5332	3779-6725
중소중견 금융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 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3779-6303, 6919 6255-5304	3779-6744
미래산업 금융실	친환경에너지신사업 및 창조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6255-5265	3779-6779
무역금융실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국환업무	3779-6468	3779-6764
해양기업 금융실	국내 조선·해운사 앞 금융지원	(051)922-8872	(051)922-8889
전대금융실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 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3779-6370	3779-6746
정책금융 지원센터	해외건설·플랜트사업 관련 정보제공 및 금융건설링	1800-5285	3779-6770



>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 TEL: (02)3779-6114 / FAX: (02)784-1030

〈국내지점〉

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천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구월동 1127) 씨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032)235-6114	032)442-6121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9층	031)259-6600	031)259-6609
중부권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둔산2동 931번지) 캐피탈타워 16층	042)489-9715	042)489-9716
	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6층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1 (부전2동 257-5) 우리투자증권빌딩 6층	051)817-5050	051)817-6060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신천3동 89-6) 대구무역회관 11층	053)260-4107	053)754-1020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층	055)287-6830	055)287-6831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달동 1358-8)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4층	052)274-5276	052)274-5278
호남권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금남로3가 9-2) SC은행빌딩 7층	062)232-6944	062)232-6946
	전주지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운고을로 1 (서신동 769-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063)271-6134	063)271-6139
출장소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054)462-7103	054)462-7105
	여수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 회의소 4층	061)643-7714	061)643-7716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033)748-0536	033)748-0538

10

한국무역보험공사

- 10-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447
- 10-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450
- 10-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452
- 10-4 단기수출보험 / 453
- 10-5 중소기업Plus+보험 / 457
- 10-6 환변동보험 / 458
- 10-7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 461
- 10-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462
- 10-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 464

10-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수입자 신용조사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수입자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원 대상 국외기업(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전 세계 70여개의 신용조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 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 유의사항 |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10년 1월부터 시행), 사이버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 신용조사료일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 조사보고서 종류(요약, Full Report 등)에 따라 신용조사 수수료가 달라짐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 부과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사이버영업점 가입

- ▷ www.ksure.or.kr 접속
-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 송부→ [승인]→회원가입

로그인

-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 절차

-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용-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공사 DB검색(최근 6개월 이내 조사된 자료 있을시 시간절약)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4주 소요)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청-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0-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중진공 수출지원자금/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 내용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보증 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 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 절차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0-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0-4 단기수출보험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 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 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 내용

| 가입대상 거래 |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운영방식 |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 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 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 위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 보험료 |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 수출자 평가 |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 수입자 신용평가 |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0-5

중소중견Plus+보험

| 중소기업 전용상품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 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로 1년간 최대 2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기업 30만불, 중견기업 50만불까지 손실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
책임한도	기본	중소기업 최대 30만불, 중견기업 최대 50만불 (필수가입)
	선택	최대 1백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중소기업 5백만불, 중견기업 30백만불 이하이고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기업	
수 입 자	공사 신용등급 R급 제외, 보험가입 수입자수 최대 20개사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 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거래수입자 등록 → 책임금액 선택 보험료 납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0-6 환변동보험

|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기업, 수입기업, 해외투자기업중 신용상 문제가 없는 중소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수출형 기준)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선물환 (Forward) (수출형 기준)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신청 서류

- 인수한도 책정신청서(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및 헤지수요 조사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www.ksure.or.kr, 재무제표 제출센터에서 파일 업로드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최근 1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
 - * 대표이사 공사 내방하여 약정 체결(약정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중)
- 파생상품잔액내역서(은행연합회 또는 은행 발급) 등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 필요시 공사양식(공사홈페이지 <http://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이용, 팩스 신청 가능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헤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 ☞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 ☞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용어설명

- 환헤지 :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환율을 확정하여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사전에 고정시키는 것

10-7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동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생산한 제품

지원 내용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지원 분야

보증책임, 회수비용 및 배상책임 및 기업휴지(삭제) 등 위험을 종합 담보

위험유형	담 보 내 용
제조물 보증책임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제조물 회수비용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제조물 배상책임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로 생긴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기업휴지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제 3자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실이익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0-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수입거래 지원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 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지원품목 |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의 주요자원
-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첨단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관세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등 관세감면대상물품
 -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수입 보험지원물품조회

| 보상 한도 |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 100%(중견 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원금(지급보증) + 약정이자

지원 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준비 서류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신청서류 → 보험·보증 청약관련 → 기타보험 : 수입보험

처리 절차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0-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 해외 미수채권 회수

무역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도모하고자 해외채권추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회수된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회수 대행

| 유의사항 |

-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하며 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 20%(성공수수료) 내외 수준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서류 및 참고자료(공사 홈페이지-신청서류-채권추심 참고)

채권추심 절차

- 채권추심 신청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수 → 채권추심 진행상황 조회 → 채권추심(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1-1 수출 애로 상담 센터 / 466
- 11-2 ICT-SW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 / 468
- 11-3 이동 KOTRA / 470
- 11-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 472
- 11-5 수출상담회 / 473
- 11-6 무역사절단 / 475
- 11-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 477
- 11-8 세계 일류 한국상품전 / 479
- 11-9 해외 시장 조사 / 480
- 11-10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 482
- 11-11 KOTRA Global Brand / 484
- 11-12 대전국제농업기술전(TAMAS) / 486
- 11-13 대전국제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TAMAS) / 488
- 11-14 buyKOREA / 490
- 11-15 수출첫걸음지원사업(Export Gateway) / 492
- 11-16 지사화사업 / 494
- 11-17 월드챔프 / 495
- 11-18 세계 일류 상품 육성 사업 / 497
- 11-19 K-TECH / 499
- 11-20 서비스 문두스(Service Mundus) / 501
- 11-21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 502
- 11-22 메디스타 이니셔티브(Medi-Star Initiative) / 503
- 11-23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파트너링 / 504
- 11-24 마-EU 정부 조달 선도기업 육성 / 505
- 11-25 국제기구 조달 선도기업 육성 / 506
- 11-26 Global Partnering / 507
- 11-27 해외 시장 설명회 / 508
- 11-28 Trade Doctor / 510
- 11-29 열린무역관 / 512
- 11-30 수출인큐베이터 / 514
- 11-31 해외 IT 지원 센터 / 516
- 11-32 자동차부품 공동 사무소 / 518
- 11-33 공동 물류 지원 / 520
- 11-34 해외 투자 진출 상담 / 522
- 11-35 투자 진출 기업 현지 지원 / 524
- 11-36 해외 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 525
- 11-37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526
- 11-38 국내복귀기업 지원 / 528
- 11-39 글로벌 M&A 지원 / 530

11-1 수출 애로 상담 센터

전화, 온라인, 내방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문의 및 애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용료

- 무료

상담내용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바이어찾기) 정보 문의
-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검사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계약 위반 및 클레임
- 해외투자 및 통/번역, 경영지원 등

진행절차

- 1) 대표전화(1600-7119) ARS에서 2번(수출 컨설팅) 선택 → 해당 전문위원 즉시 연결

- 2)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tradedoctor.kotra.or.kr)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 3) FAX(02-3460-7928) 및 내방상담 (KOTRA 본사 1층 수출애로상담센터)

문의처

- 고객안내센터(1600-7119)에서 2번 수출 컨설팅 선택 시 바로 연결

11-2

ICT-SW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ICT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 대상 전문 상담 센터로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진출국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ICT(정보통신기술) 수출기업 및 IT 융합
 - * 하드웨어(컴퓨터, 통신기기), 전자 부품, 기타 디바이스
 - * 소프트웨어(솔루션, 모바일앱), 콘텐츠, 게임
 - * IT 서비스, 산업별(공공, 금융, 제조, 유통) SI 프로젝트

이용료

- 무료

상담내용

- 1) 해외 ICT 시장 진출 단계별 애로 해결 및 컨설팅
 - ①의사결정 → ②시험판매 → ③영업거점 설립 → ④채널계약 → ⑤계약체결
- 2) 해외 ICT 시장 진출국가에서의 성장 단계별 애로사항 해결
 - ①기업 및 제품의 현지화 → ②전략적 제휴(유통/자본/R&D) → ③M&A건 발굴 → ④계약서 작성 → ⑤IPO 등
- 3) 외부자문위원단 활용
 - 해외 진출 관련 관세, 법률, 지적권, 금융 등 전문 분야 자문

진행절차

- 1) ICT-SW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전화상담
하드웨어(02-3460-7752), 소프트웨어(02-3460-7753), IT 서비스(02-3460-7754)
- 2)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tradedoctor.kotra.or.kr)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 3) ICT-SW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내방상담 (KOTRA 본사 6층 IT사업단 내 상담센터)
- 4) 고객안내센터(1600-7119)에서 1번 사업 안내 선택 → ICT-SW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연결 요청 → 접수 및 상근위원 상담 → 필요시 외부 자문단 연결 → 사후 관리

문 의 처

- IT사업단 : 02-3460-7752, 7753, 7754

11-3 이동 KOTRA

|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등 원스톱 지원

'이동 KOTRA'는 지방에 소재한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무료로 방문 상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기업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서울 및 수도권 포함)

이용료

- 무료

상담내용

-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KOTRA 이외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수출금융, R&D 등)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이동 KOTRA' 사업신청 → 글로벌역량진단 실시 → 기업 정보 및 상담요청사항 등록 → 방문상담

지역	소속	연락처
서울, 경기, 인천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02-3460-7103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KOTRA지원단	051-740-4153
대구, 경북	대경권KOTRA지원단	053-659-2254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호남권KOTRA지원단	062-369-9054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KOTRA지원단	042-862-8313
강원, 경기북부	강원권KOTRA지원단	033-261-5315

* ARS 2번 수출 컨설팅 선택 시 바로 연결

11-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Global Competence Level Test(GCL Test)'는 기업의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제안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이용료

- 무료

상담내용

-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8가지 세부역량 진단
(중장기 전략·비전, 수출인프라, 전문인력·자금, 글로벌 의사소통, 판촉·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전략, 제품)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 추천
(KOTRA 52개 서비스 및 유관기관 115개 서비스)
- 1:1 유선컨설팅 및 현장방문상담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글로벌역량진단사업' 신청 → GCL Test 설문답변 → 성장단계 및 영역별 점수 확인 → 1차 유선컨설팅(KOTRA 수출전문위원) → 2차 방문컨설팅(필요시)

문의처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02-3460-7774, 7776

11-5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

-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KOTRA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품목과 일치하는 중소기업

참가비

- 무료
 - * 사업비는 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지원

지원 내용

-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절차

- KOTRA 및 지자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해당품목 바이어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주선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02-3460-7487, 7473

11-6 무역사절단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대상기업

-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참가비

- 항공임(50%내외), 숙박비 및 개인경비 참가업체 부담

지원 내용

-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참가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수출희망 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 파견기관에서 참가업체 선정 및 사절단 파견 → 해외무역관에서 준비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추진 → 해외무역관 후속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02-3460-7487, 7488

11-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립니다.

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선정 시 우대)

참가비

- 전시회별, 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 참가비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상한 범위 내 지원
- 행정서비스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전시회장 출입증, 주최 측 디렉토리 신청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사후관리

진행절차

- 글로벌 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업무협약→ 사전 마케팅 지원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 ※ 2015년도 해외전시회는 총 130회로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 일정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및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외전시팀 : 02-3460-7675, 7256

11-8 세계 일류 한국상품전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입니다. 한국의 세계일류 상품과 브랜드, 디자인 홍보와 함께 필요한 경우 문화 및 CSR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기준

- 현지 시장성이 우수한 세계일류상품 기업

참가비

- 전시회별, 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 전시장 임차 및 장치비
- 전시품 운송, 통관수수료(해상 단체 편도운송, 1CBM 한도)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진행절차

-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 선정 여부 통보 → 참가비 납부 → 분야별 대행사 실무 지원 → 전시회 참가

문의처

- 전시총괄팀 : 02-3460-7679

11-9 해외 시장 조사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지역의 정보를 의뢰하면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래선, 현지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기준

- 인터넷으로 신청 후 10일 이내 해외무역관에서 조사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

참가비

서비스 유형	수수료(VAT 포함)
바이어 찾기	150,000원
맞춤형 시장조사	110,000원/항목
바이어 연락처 확인	무료(연간 6회만 무료로 제공)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220,000원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바이어 찾기	수출 희망 품목 유관 수입처 발굴
맞춤형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품질인증제도 등
바이어 연락처 확인	해외바이어의 실제 존재여부, Contact Point 등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수입 희망 품목의 잠재 공급선 발굴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사업’ 신청 → 해외 무역관에서 조사가능여부 검토(10일 소요) → 조사 가능시 고객에게 견적서 송부 → 고객 수수료 입금 → 조사완료 및 결과보고서 고객송부 (3주 소요) → 보고서 확인 및 A/S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02-3460-7737, 7388, 7383

11-10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해외 비즈니스 출장 상담 지원 요청 시 출장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기준

- 인터넷으로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수수료

- 300,000~500,000원 (VAT포함) (* 해외무역관별 수수료내역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상담주선 · 일정주선(호텔 및 차량예약,통역알선) ·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투자환경브리핑 ·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 (호텔 및 차량예약,통역알선)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사업’ 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여부 검토 → 출장지원 가능시 고객에게 견적서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 → 출장시행

참고사항

- 출장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 : 119개 무역관
- 공항 출영송 지원 가능 대상 : 29개 무역관
 - * 하기 무역관 외 공항출영송 미지원

지역	공항출영송 지원 무역관
동남아대양주	수리비아
서남아시아	방갈로르
중남미	과테말라, 산토도밍고, 리우데자네이루, 아순시온
유럽	부쿠레슈티, 브뤼셀, 자그레브
CIS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알마티, 노보시비르스크, 민스크
중동/아프리카	무스카트, 알제, 라고스, 아디스아바바, 아크라, 카르툼, 두알라, 킌사사
중국	선양, 시안, 우한, 창사, 청두, 항저우, 울란바토르

※ 공항 출영소 수수료는 해당 무역관 출장지원서비스 수수료에 포함

문의처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02-3460-7738

11-11 KOTRA Global Brand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이 KOTRA의 해외인지도를 활용하여 수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품질 및 기술경쟁력, 해외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KOTRA 글로벌브랜드를 부여합니다.

대상기업

- 신규신청 기업은 연간 수출액 1천만불 이하 기업
- 수출실적과 증가율에 따라 승급가능

구분	블루	실버	골드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신청 기업 - 수출 1천만달러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참여 3년 이상 -수출 1천만달러 이상 -또는 수출증가율 50%이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참여 3년 이상 -수출 2천만불 이상 -또는 수출증가율 100%이상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선정연도로부터 4년(선정연도표시)		
원부자재공급 선조사	3년		

* 우대 지원기간 : KOTRA 지사화, 전시회 참가비 할인 및 유관기관 연계지원 적용기간

참가비

- 무료

선정기준

- 재무건전성 : 기업 신용등급에 의하여 평가
- 수출실적 및 성장성(연간 수출성장률)
- 제품관련 인증 및 특허 보유 여부
- 브랜드 마케팅 기대성과 및 지원타당성 등

지원 내용

구분	세부사항
로고 사용	- 등급별 KOTRA 글로벌브랜드 로고를 해외마케팅 홍보물에 사용 * 기업홍보 카탈로그, 이메일, 명함, 인보이스 등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상담회 홍보관 내 제품 전시 및 해외바이어 매칭상담 진행 - 신시장(미수출지역)으로의 수출 성약 지원
선정기업 홍보	- 수출상품전문지 및 온라인 채널에 선정기업 및 제품 홍보
KOTRA 사업 참가 우대	- 지사화 사업(연 3개 지역 한) 참가비 할인(10%) - KOTRA 단독주관 해외전시회 참가비 할인(10%)
유관기관 연계지원	- 무역보험공사 보험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 지원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사업 공고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문의처

- 디자인브랜드팀 : 02-3460-7297

11-12 대전국제농업기술전(TAMAS)

‘TAMAS(The Agricultural Machinery Show)’는 1995년 최초 개최 이래 국내 농업분야 업체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B2B 전문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품목군은 농기자재, 종자종묘, 원예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기업

- 식품업체 및 식품관련 기기 분야

시기·장소

- 2015.5.12-15/ KINTEX

참가비

- 독립식 부스 : 2,420,000원 / 조립식 부스 : 2,860,000원 (* VAT 포함)
* 조기신청 시 / 부스규모별 / 소상공인(4인 미만 사업장)
참가비 할인
* 자세한 내용은 SEOUL FOOD 공식홈페이지(www.seoulfood.or.kr) 참고

선정기준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신청금 납부
- 임차면적 소진 시 마감

진행절차

-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www.seoulfood.or.kr)를 통해 ID, PW 입력 후 신청
→ 1차 마감(추후 일정 통보)/ 참가비 완납 → 2차 마감(추후 일정 통보)/
참가비 완납 → 전시회 참가

문 의 처

- 전시총괄팀 : 02-3460-7269

11-13

대전국제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TAMAS)

‘TAMAS(The Agricultural Machinery And Seeds Show)’는 1995년 최초 개최 이래 국내 농업분야 업체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B2B 전문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품목군은 농기자재, 종자종묘, 원예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기업

- 농기자재, 종자종묘, 원예시설

시기·장소

- 2015.11.3.-6 / 대전무역전시장
- * 격년으로 개최

참가비

- 독립식 부스 : 1,200,000원/ 조립식 부스 : 1,400,000만원 (* VAT 포함)
- * 조기신청 시 / 부스규모별 / 기 참가업체의 경우 참가비 할인
- *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tamas.or.kr) 참고

선정기준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신청금 납부
- 임차면적 소진 시 마감

진행절차

-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www.tamas.or.kr)를 통해 ID, PW 입력 후 신청 → 1차 마감(추후 일정 통보) / 참가비 완납 → 2차 마감(추후 일정 통보) / 참가비 완납 → 전시회 참가

문 의 처

- 전시총괄팀 : 02-3460-7267

11-14 buyKOREA

buyKOREA.org는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 가운데 최초로 유일하게 한국 상품 해외 홍보, 해외 구매 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 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용방법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기업회원 ID로 buyKOREA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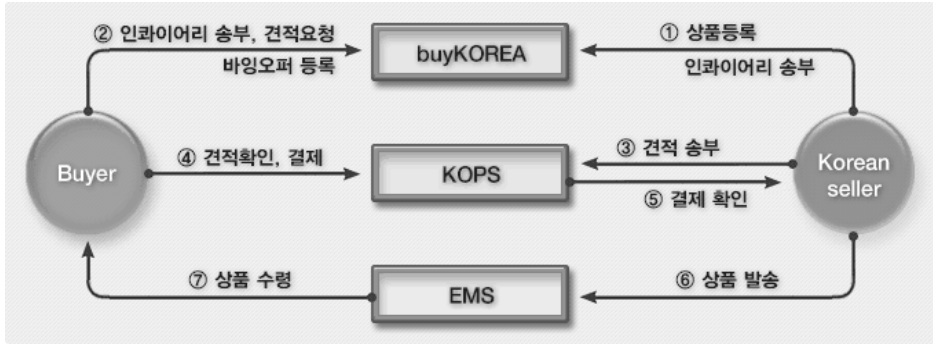
이용료

- 무료

제공정보

구분	주요 내용
수출상품 등록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까지 등록 가능
바이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 조회 및 인콰이어리 수발신
인콰이어리 발송, 수신	바이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메일 발송 가능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메일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KOPS 서비스 가입을 통해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신용카드 결제 수취 가능
수출상품 발송	EMS 배송신청 기능을 통해 수출상품 발송 (할인율 최대 15%)
화상미팅	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 가능
해외기업정보	기업당(연간 1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

거래 프로세스



문의처

- 수출첫걸음지원팀 : 02-3460-7150

11-15 수출첫걸음지원사업(Export Gateway)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50만달러 이상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기업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 수출실적 50만 달러 미만, 단 기계부품은 100만달러까지 가능

선정 기준

- GCL Test, 해외시장성평가, 신청기업 방문 심사 등 소정의 심사 절차 통과 기업

참가비

- 무료

지원기간

- 1년

지원 내용

-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신청 → 신청 심사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 종합컨설팅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 → 수출 기업화 및 졸업

문 의 처

- 수출첫걸음지원팀 : 02-3460-7565

11-16 지사화사업

시장 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참가비

- 2,500,000원 - 3,500,000원 (* 물류패키지 신청시 30만원 추가)
* 무역관별 참가비는 표 참조

지원내용

- 현지 시장정보, 신규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지원, 해외 출장지원등
- ※ 단, 계약체결 대행, 무역 클레임 해결 및 법적 분쟁 등 KOTRA와 해외무역관의 법적 성격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지원불가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지사화사업’ 신청 → 현지 무역관 시장성 검토 → 참가비 납부 → 협약서 체결 → 지사화사업 시행 → A/S 제도

문의처

- 수출유망기업팀 : 02-3460-7454

11-17 월드챔프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의 해외 마케팅 지원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수준의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중소기업청 선정)

선정기준

- 연 매출액 4백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 평균 2% 이상
 -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성장률 15% 이상 기업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포털 참고

지원 내용

-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자문, 마케팅 계획 수립
-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장조사, 영업망 구축, IR행사, 로드쇼, 전시회 등)

지원 규모

- 참가기업(50)과 정부(50)의 매칭펀드로 총 1억원의 사업비 조성

지원 기간

- 1년 단위로 최대 5년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KOTRA 이외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수출금융, R&D 등)

진행절차

- 월드클래스 300 모집공고(중소기업청, 1-2월) → 월드클래스 300 선정(4~5월)
→ 선정기업 대상 월드챔프 참가업체 신청(5~6월) → 기업별 로드맵 수립(6월)
→ 사업개시(7~12월)

문의처

- 글로벌전문기업팀 : 02-3460-7275

11-18 세계 일류 상품 육성 사업

국가 수출을 이끄는 1,000개의 핵심 제품 육성을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 (5년 이내 진입가능 품목 포함)을 선정하여 생산기업의 종합 해외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구분	선정 기준
현재일류상품	(제조업)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달러 이상,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이거나, -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달러 이상인 상품 (서비스)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거나, 연간 수출규모가 5백만불 이상인 서비스
차세대일류상품	(제조업) 향후 5년 이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진입가능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신성장동력 산업 상품 (서비스) 향후 5년 이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진입가능 또는 연간 500만불 이상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 또는 수출액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제조업)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 최근 3년 이내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서비스)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 최근 3년 이내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거나 서비스 부문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참가비 없음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직접 지원	<p>KOTRA가 직접 지원하는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사업</p> <p>(해외마케팅 자금지원) 현재일류상품은 우수사업안 공모하여 최대 2,000만원, 차세대일류상품은 전시회 참가/KOTRA 정형화 서비스 참가비용 최대 1,500만원 지원</p> <p>(자가브랜드 수출지원사업)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의 브랜드 역량강화 지원 - 참가 희망기업 모집하여 3년간 해외시장 타겟 브랜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p> <p>(기타) 바이어 초청 상담회(연 1회),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비제조업 및 협력사업 지원 등</p>
간접 지원	<p>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우대 혜택</p> <p>(참여기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달청, 중기청, IBK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p>

* 지원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 절차 연 1회 실시

- 산업부 신규선정 공고 → 참가신청 → (간사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간사기관이 접수, (간사기관 없는 경우) KOTRA가 접수 → KOTRA/업종별 간사기관 심의 → KOTRA/업종별 추천위 추천 →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

문의처

- 디자인브랜드팀 : 02-3460-7833, 7272

11-19 K-TECH

‘K-TECH’는 ICT 사절단 해외전략지역 파견 등 중소 ICT 기업의 해외 주요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상담회, 세미나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기업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바일, 정보보안, IT서비스 분야 국내 중소기업 및 Start-up 기업

선정기준

- 내부 심사

일시/장소

행사명	일시	장 소	국내기업
K-TECH Middle East	3월	테헤란	14
K-TECH East Asia	6월	방콕	20
K-TECH Silicon Valley	9월	실리콘밸리	40
K-TECH China	11월	베이징	50

※ 상기 일정 및 지역은 국내기업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사항

- ICT 관련 복합사업 추진
 - * 무역(수출상담회), 투자(투자유치 IR), 정보(세미나), 기술(기술 로드쇼), M&A(M&A상담회), 인재·창업(채용 박람회, 창업지원 세미나)
- 사업계획 수립, 참가기업 수요 분석하여 맞춤형 후속 지원
 - * “수요 발굴 → 업체 매칭 → MoU·F/S →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시장 직결형 사업 지원
-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수출상담회’ 신청 → 신청서 작성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1:1 상담신청 → 상담주선 → 최종스케줄 확인 및 상담 준비

문의처

- IT사업단 : 02-3460-7740

11-20

서비스 문두스(Service Mundus)

‘서비스문두스’는 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 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해외 진출지원 등 기업별 조사, 마케팅, 해외 진출 활동을 종합 지원해 드리는 지식서비스 분야 대표사업입니다.

* Service Mundus : 라틴어로 세계, 우주를 의미. 우리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본격화 지원을 뜻함.

수행시기 연중

참가비 무료

대상기업

- 스마트 콘텐츠 · 게임 · 애니메이션 · 캐릭터 · 디자인 · 방송 및 음악 · 이터닝 ·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주요 분야 중소 · 중견기업

지원 내용

- 기본 서비스 (해외 시장 진출 로드맵, 해외 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 지원)
- 선택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지적권 보호, 기업 역량 구축 사업, 글로벌 기업과 제휴 지원 등)

진행절차

- 사업 공고 →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기업별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해외진출전략 도출 → 개별 맞춤형 해외진출지원 서비스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문두스 홈페이지(www.servicemundus.or.kr) 참고

문의처

- 지식서비스사업단 : 02-3460-7424

11-21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한류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경제한류의 파급 효과를 국내 유망 제조 및 서비스업에 적용하고 경제한류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신규 해외 수출 및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한류 박람회, 한류 연계 특화 마케팅 사업, 한류 심층조사를 추진하여 경제한류 분야 해외마케팅을 선도적으로 지원합니다.

수행시기

연중

대상기업

- 방송콘텐츠, K-Pop, 스마트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 뮤지컬, 게임, 문화와 산업(IT기술) 융복합, 패션, 미용, 한류스타 MD상품 등

지원 내용

-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KBEE, 한류박람회)' 개최를 통한 경제 한류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개최지 : 북미 예정)
 - 한류스타(연예기획사)와 중소중견기업(서비스, 제조업)간 브랜드 매칭 사업
 - 한류·CSR 연계형 수출마케팅 사업
 - '글로벌 한류 동향 및 진출 전략' 정보조사 자료 발간
- ※ 자세한 내용은 KBEE 홈페이지(<http://kbee.kotra.or.kr>) 참고

문의처

- 지식서비스사업단 : 02-3460-7421

11-22

메디스타 이니셔티브(Medi-Star Initiative)

‘메디스타 이니셔티브(Medi-Star Initiative)’는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수행시기

연중

대상기업

-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수출 유망기업

지원 내용

-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해외바이어 및 현지 협력기관 발굴, 지사화사업 및 기타 마케팅사업을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진행절차

-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참가기업 선정 → 설명회 →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점검 및 평가

문의처

- 지식서비스사업단 : 02-3460-7344

11-23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파트너링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간 파트너링을 집중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기업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서울 및 수도권 포함)

수행시기

연중

파트너링 기업

- (국내) 국내 유망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중 글로벌 기업과 협력 희망 기업
- (해외)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TOP 30위권 기업

지원 내용

-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제품공급, 기술협력, 공동R&D 등 파트너링 중점 지원

문의처

- 지식서비스사업단 : 02-3460-7344

11-24

미·EU 정부 조달 선도기업 육성

미국과 EU 정부조달 시장 조사 및 정부조달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각 정부조달 시장의 적합성에 맞는 품목과 해외영업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보유품목 : 시장적합성(25), 제품경쟁력(20)
- 경영관리 : 경영진 의지(10), 재무건전성(10)
- 해외영업 : 현지화 수준(20), 본사 해외영업력(15)

참가비

- 워싱턴(4,100,000원), LA(4,765,000)원, 바르샤바(3,160,000원)

지원 내용

- 미국과 EU의 컨설팅 전문업체 활용, 조달에 적합한 업체 확보 후 조달 입찰 정보에 응찰 준비 지원
- 조달시장조사, 진출전략 수립, 파트너 발굴 및 지원, 입찰정보 입수 및 준비 지원, 정부조달 교육

진행절차

- 사업공고 → 컨설팅사 선정 → 참가기업 선정 → 사업개시 → 평가

문의처

- 글로벌전문기업팀 : 02-3460-7724

11-25

국제기구 조달 선도기업 육성

UN,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조달시장진출 300개사 육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수출이력증명서(3년치)를 제출할 수 있는 해외영업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해외마케팅 능력(60%) + 재정건전성(40%)

참가비

무료

지원 내용

- 벤더등록,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입찰서 작성 지원, 조달관 파트너 발굴 등 현지 지원
- One-stop 사업 플랫폼 구축에 따른 벤더등록, 맞춤형 입찰정보와 컨설팅 제공, 금융지원, 성과창출

진행절차

- 진출 준비(시장동향, 벤더등록) → 입찰공고 → 응찰(입찰서작성) → 낙찰(조달관 접촉) → 수행

문의처

- 글로벌전문기업팀 : 02-3460-7888

11-26 Global Partnering

Global Partnering 사업은 R&D 기반의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기업

- 글로벌 기업의 제품 개발 의뢰에 대응 가능한 부품소재 (중간재) 강소 중견 기업

선정기준

- 필요 시 전문가 협의체 및 글로벌기업을 통한 사전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 선정

참가비

무료

지원 내용

- 글로벌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공장방문, 심층상담 등)
- 글로벌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토탈 솔루션 제공(정부 R&D 자금지원, 기술 교육 등)
- GP Korea(글로벌파트너링 수요발굴 상담회)개최
 - * 일시 / 장소 : 10월 / 서울
 - * 글로벌기업 60개사, 한국기업 300개사 참가

진행절차

-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국내 기업 조사 → 제휴 및 매칭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플랫폼운영

문의처

- 글로벌파트너링팀 : 02-3460-7845

11-27 해외 시장 설명회

KOTRA는 설명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2015 세계시장 진출전략

- 연초 세계시장 조망, KOTRA 해외지역본부장의 권역별 이슈 점검, 수출 유망 분야 제시
- 지방 설명회 동시 개최로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수립 지원

구분	서울 설명회	주요 산업/지역 비즈니스 포럼	지방 설명회
일자	2015. 1.6(화)	2015. 1.7(수)	2015. 1.8(목)
장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B1 하모니볼룸	KOTRA 본사 및 IKP 회의실	추후 공지 예정
대상기업	2015년 해외시장진출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 유관기관(산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관계자		
주요 프로그램	세계경제전망 및 권역별 진출전략소개	유망 산업 및 지역별 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권역별 진출전략
참가비	100,000원 (*조기신청고객,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참가비 할인)	추후 공지 예정	무료
신청방법	2014.12월부터 KOTRA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2015 해외시장 설명회

- 한·일 산업협력 포럼 및 플라자(5월) - 산업협력포럼, 파트너링 상담회, 채용박람회 개최
 - 유럽 비즈니스 주간(2분기) - 유로존 경기회복 및 신한류 활용 사업 전개
 - 신흥시장포럼(2분기) - 지방사업단과 협업하여 지자체별 특화사업 진출방안 제시
 - 한·중 미래협력 플라자 - 新내수시장(내륙, 신산업) 진출 지원 및 조사강화
 - 미국투자진출전략 설명회(3분기) -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신통상포럼(3분기) - 신통상정책 및 해외 비관세장벽사례 대응방안 제시
- ※ 상기 일정은 잠정으로, 확정된 내용은 추후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부3.0추진팀 : 02-3460-7333

11-28 Trade Doctor

‘Trade Doctor’는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관련 문의를 해결해주는 온라인 상담센터입니다.

이용료 무료

제공정보 및 서비스

- 기업 수요가 높은 해외 거래선, 상품, 국가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무역투자정보 제공
 -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Trade Map(세계 무역 DB) 서비스 제공

진행절차

- Trade Doctor 포털사이트 (tradedoctor.kotra.or.kr) 접속 → ‘KOTRA 무역 투자정보 검색 → 애로 컨설팅 → 지원사업 정보 찾기

| 주요 제공정보 |

	구분	세부 유형
상품 · 산업	유망상품 · 산업	국별 유망상품, 상품 · 산업트렌드, 국별 유망산업 가이드
	해외거래선	해외기업정보, 주요국 기업검색사이트, 수입오퍼
	규격인증	해외인증DB, 인증취득대행컨설팅사 DB
	전시회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참가기, 국별 전시회 참가가이드
국가 · 지역	국별 종합 비즈니스 정보	국가정보, 동영상 국가정보(Biz Guide), 해외출장자료,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등
	경제 · 통상	경제동향, 통상정보
	해외투자	해외 투자속보, 투자실무가이드

- 컨설팅 : 온라인 Trade Doctor 상담 서비스과 글로벌 지역 전문가 컨설팅 기능을 동시에 제공
 - * 온라인 Trade Doctor(무역투자상담센터) : 수출전문위원, 본사 및 무역관 직원이 고객 문의 응답
 - * 지역전문가 맞춤형컨설팅 : 국내외 전문가('14년 1,000명)가 기업에 대해 해외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지원사업 :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내역 및 활용방안 종합 제공

문 의 처

- 정부3.0추진팀 : 02-3460-7584

11-29 열린무역관

‘열린무역관’은 국내기업이 해외출장 시 필요한 사무공간을 전 세계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

선정기준

- 2개 이상 업체가 동일지역 및 일정에 신청하는 경우 선착순 배정

이용료 무료

지원사항

-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 무역관 별 분기당 1회만 가능)
* 통역 지원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분류	세부지원 사항
사무공간	책상(컴퓨터 포함), 전화/ 팩스, 인터넷, 회의실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열린무역관’ 사업 신청 → 신청서 작성 → 일정검토 후 고객 통지 → 출장시행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

참고사항

-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기간 : 출장 2주전 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02-3460-7106

11-30 수출인큐베이터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수출유망품목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21	멕시코	멕시코시티	10
	상하이	26	인도	뉴델리	16
	광저우	14	미국	뉴욕	23
	청두	10		LA	23
	시안	7		워싱턴	12
베트남	호치민	12		시카고	18
	하노이	11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5	러시아	모스크바	10
싱가포르	싱가포르	10	UAE	두바이	6
브라질	상파울루	10			

참가비 무료**상담내용**

- 입주보증금 : 500만원
- 월 임차료(사용면적에 따라 부과)
 -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업체 실비 부담

입주기한 최장 4년**지원 사항**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행정지원
- 생활정착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

진행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참가 신청 (연중 수시)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KOTRA·중진공) → 업체 선정통보 (약 1~1.5개월 소요) → 입주협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준비 및 인큐베이터 입주

문의처

- 수출유망기업팀 : 02-3460-7452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 02-769-6779

11-31 해외 IT 지원 센터

국내 ICT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ICT 거점지역(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에 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입주 기업별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일시·장소

- 연중/ 베이징, 도쿄, 실리콘밸리

대상기업

- 진출희망지역 ICT분야 수출 역량 보유 중소벤처기업

참가비

- 센터 입주 분담금 (센터별 상이)

지원 내용

- 1, 2차 서류 심사 요건 통과(기업에 한해 현지전문가 심사 실시 후 선정)
- 독자 임차시보다 저렴한 입주비용으로 거점 및 시설 지원
- 현지 ICT 바이어 발굴 및 소개, 각종 ICT 전문 세미나, 상담회 등에 참가 기회 제공
- 국내·외 ICT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정보 제공 등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IT지원센터사업’신청 → 1차 서류심사 (ICT분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IT분야 중소, 중견기업) → 2차 심사 (기술력, 제품성, 시장성 등을 기준, 현지 전문가 심사) → 최종 선정 및 입주 계약사후관리

문의처

- IT사업단 : 02-3460-7626

11-32 자동차부품 공동 사무소

‘Korea Autoparts Park(KAPP)’는 글로벌 완성차 거점지역에 공동 사무공간을 운영하여 현지 전담 마케팅 등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기업 · 선정기준

- 글로벌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현지 즉시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요구 받은 기업
- 해당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를 고려 중인 기업
- 현지법인/지사 설립은 되어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해 KOTRA와의 협업이 필요한 기업

* 단,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참가비 (지역별 상이)

- 디트로이트 : 1인실 연 4,200,000원, 2인실 연 7,000,000원
- 나고야 : 1인실 연 6,000,000원, 2인실 연 9,600,000원
- 프랑크푸르트 : 1인실 연 6,600,000원, 2인실 연 9,900,000원

지원사항

- 직접 지원 서비스
 -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사무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전담직원을 통해 지사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 간접 지원 서비스 (물류, 정착지원, 기타)
 - * 초기 셋업 : 입주업체 신규 법인/지사 설립/비자발급 등 지원
 - * 세일즈렙 활용 : 입주업체 세일즈렙 활용 희망시 업체선정 등 지원
 - * 물류서비스 지원 : 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서비스
 - * 현지 전시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

진행절차

- 참가신청서 개별 접수 (관심기업 -> 본사 또는 무역관) → 무역관의 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 확정 통보 → 입주계약 체결 및 참가비 입금 →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입주

문의처

- FTA사업팀 : 02-3460-7838

11-33

공동 물류 지원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업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A/S(일부지역)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제조·유통·무역 수출영위 중소중견 기업 우선

참가비

- 1,500,000원 (* 지사화물류패키지 신청시 30만원)

지원사항

- 물류위탁 계약 체결 및 애로사항 해결
- 현지 물류전문업체 소개,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재고관리 등 물류 관련 업무 아웃소싱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 신청 -> 현지 무역관 시장성 검토 및 수출준비상태 검토 -> 참가비 납부 -> 협약서 체결 -> 지사화사업 시행 -> 무역관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평가 -> A/S 제도

공동물류센터 운영무역관 (22개국 42개소)

연번	국가	해외 무역관	연번	국가	해외 무역관
1	영국	런던	22	인도	뉴델리
2	헝가리	부다페스트	23	태국	방콕
3	벨기에	브뤼셀	24	케냐	나이로비
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5	이집트	카이로
5	독일	프랑크푸르트	26	중국	광저우
6		함부르크	27		다롄
7	체코	프라하	28		베이징
8	미국	뉴욕	29		상하이
9		디트로이트	30		시안
10		로스앤젤레스	31		우한
11		마이애미	32		청두
12		시카고	33		충칭
13	캐나다	밴쿠버	34		칭다오
14		토론토	35		창샤
15	호주	멜버른	36		정저우
16	일본	후쿠오카	37	파나마	파나마
17		오사카	38	브라질	상파울루
18		나고야	3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		도쿄	40	칠레	산티아고
20	싱가포르	싱가포르	41	러시아	모스크바
21	베트남	호치민	42		블라디보스톡

문의처

- 수출유망기업팀 : 02-3460-7452, 7367

11-34 해외 투자 진출 상담

국가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이용방법

- 유선 또는 내방상담
- ※ 내방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이용료

무료

지원 내용

- 국가별 상담

지 역 · 국 가	상담 전화	
중국 및 중화권	대표전화 1600-7119(#3)	내선 1번
아세안 10개국		내선 2번
북미, 중남미, 유럽, CIS		내선 3번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기타		내선 4번

● 분야별 상담

분 야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 전화
금융	해외투자 정책금융	수출입은행	02-3460-7472
	해외투자 상업금융	외환은행	02-3460-7478
보험	해외투자 보험	무역보험공사	02-3460-7477
법률	중국법률 자문 (매주 화, 목 13:00~17:00)※	법무법인 광장·지평 (중국변호사)	02-3460-7548
지원 제도	해외투자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02-3460-7475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02-3460-7476

※ 중국변호사 자문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 의 처

- 해외투자상담팀 : 02-3460-7481

11-35

투자 진출 기업 현지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에 15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 * 해외진출 우리기업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 현지 내수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 지원
 -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현황

국가·지역		연락처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
	상하이	+86-21-5108-8771
	칭다오	+86-532-8388-7931
	광저우	+86-20-2208-1604
	다롄	+86-411-8253-0051/3
	시안	+86-29-8883-1060
베트남	호치민	+84-8-3822-3944
	하노이	+84-4-3946-051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1-574-1522
필리핀	마닐라	+63-2-893-1183/3244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
캄보디아	프놈펜	+855-23-999-099
폴란드	바르샤바	+48-22-520-6230
미얀마	양곤	+95-1-255-453/6
브라질	상파울루	+55-11-3175-3030

문의처

-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65

11-36

해외 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OPS(Overseas investment Premium Service)’는 해외투자진출을 준비하는 국내기업이 KOTRA 무역관을 통해 법인설립 관련 지원을 제공받는 고객맞춤형 유료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 해외투자진출을 고려중인 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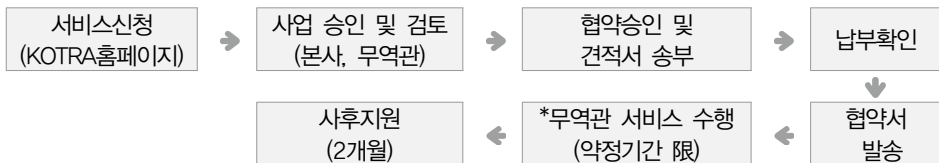
지원 내용

- 해외법인(공장) 설립 정보제공, 현지출장 및 계약체결 지원 등

참고사항

- 해외투자진출 프리미엄 서비스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사업내용 및 기간은 고객과 해외무역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 차등 책정

진행절차



※ 서비스 개시는 참가비 입금 즉시 이루어 짐
(참가비 미입금시 협약기간과 상관없이 서비스 개시 불가)

문의처

-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68

11-37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5개국에 10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확보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재산 보호 지원

구분	세부지원사업
권리확보지원	-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지원(행정지원) -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 제공 - 지재산 애로 상담 지원 등
보호 지원	-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 이동식 IP-DESK, 지재산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 현지 유관기관 · 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등

*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운영조직 (5개국 10개소)

미국	
LA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IP-DESK의 비용

구분	지원비율
상표 · 디자인 출원, 등록	- 현지 소요 비용의 50%지원(1社당 4건 이내) * 중국, 베트남 : 300 \$ /건 이내 * 태국 : 500 \$ /건 이내 * 미국, 독일 : 600 \$/건(상표), 1,000 \$/건(디자인) 이내
피침해 실태 조사 및 행정 구제	- 현지 소요 비용의 70% 지원 (1社당 1건) * 3,000 \$ (행정단속시 5,000\$) 이내
세관 지재권 등록	-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 (1社당 4건 이내) * 중국, 베트남 : 300 \$ /건 이내 * 태국 : 500 \$ /건 이내 * 미국, 독일 : 1,000 \$/건 이내

문의처

-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52

11-38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진출기업 중 해외 제조 사업장을 완전, 부분 철수 또는 유지하고, 국내복귀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복귀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복귀 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선정기준

-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 해외사업장 철수(완전/부분)
 - *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해외-신 · 증설 국내 사업장 동일 업종 운영
- 해외-국내 사업장의 최대 지분 보유자(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할 것

지원 내용

- 중국진출기업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 기업당 5만 위안 한도 최대 50~60% 지원 (청산, 매각, 지분양도, 축소 등 포함)
-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내용 상담
- 국내복귀기업 등록제도 운영
- 국내복귀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사후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유관기관 및 지자체 지원협의회 운영

해외 U턴기업지원데스크

- (본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베이징 데스크, 상하이 데스크, 칭다오 데스크, 광저우 데스크, 선양 데스크, 추후 개소

문 의 처

-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49, 7357

11-39

글로벌 M&A 지원

M&A를 활용,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범위 : ① 지분인수 ② 사업부문 인수(Spin-off) ③ 유무형 자산인수
④ 해외 판로개척 목적의 조인트벤처 설립(단, JV는 실행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M&A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원방식·범위 설계
- ① (전략수립) 센터 전문가 면담으로 M&A 전략 구체화(지역, 품목 등) 지원
 - ② (시장파악) M&A 관련 정보조사, 현장정보 확인
 - ③ (딜소싱) 현지 딜 소싱 부티크 알선 및 타깃매물 발굴·분석 지원
 - ④ (딜실행) 타깃기업 Pre-valuation (단, 소형 딜에 한함), 실사결과 검토 지원, 타깃기업 실사 동행지원, 국내외 인수금융 알선, 현지 계약지원 등
 - * 기업평가(Valuation), 기업실사(Due Dilligence)는 민간 전문기관 알선
 - * M&A 진행 현황 심사 후 실행비용(초기 착수금, 실사비용) 일부 지원
 - ⑤ (사후지원)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 등

진행절차 국가별 상담

- 참가신청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양식 송부) → M&A센터 전문가와 개별면담으로 지원내용 수립 → 사업신청서·비밀유지협약 체결 → 연간 딜 지원 → 사후관리

문 의 처

- 글로벌 M&A 지원센터 : 02-3497-1110

12

한국무역협회

- 12-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 533
- 12-2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 534
- 12-3 TradeSOS 해외마케팅 자문 / 535
- 12-4 TradeSOS 통번역 지원 서비스 / 537
- 12-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539
- 12-6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 541
- 12-7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543
- 12-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 545
- 12-9 Kmall24를 통한 B2C해외직판 지원사업 / 547
- 12-10 K+(K plus) 인증 제도 / 550
- 12-11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553
- 12-12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ABTC) 발급 / 555
- 12-13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558
- 12-14 무역기금 융자 / 560
- 12-15 특허청 공동 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 / 562
- 12-16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 565

12-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해소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무역애로건의 DB를 통해 기존 접수된 애로사항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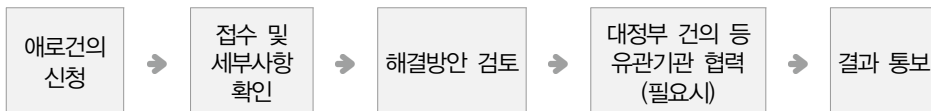
지원 내용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신청, 접수, 검토, 완료 등 업무처리 과정을 무역업계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애로건의 처리 단계별로 업체 측에 이메일, 문자 등 통보
-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 구축
 - 무역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검색을 통해 업무에 활용 가능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애로건의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2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 전문분야별 무역상담 온/오프라인 지원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특허, 해외인증, 국제계약, 세무 및 회계 등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상담을 실시합니다.

지원 분야

- 무역실무, 통관절차/HS품목분류, 국제계약/클레임, 국제특허, 해외인증, 세무/회계, 환율/외환, 중국의 수출입절차(인증, 통관,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상담
- 전화상담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분야	상담요일	상담시간	컨설턴트
무역실무	월~금	09:00-18:00	전문상담역
통관절차/HS품목분류	월~금		관세사
국제계약/클레임	화/목		변호사
국제특허	월	13:00-18:00	변리사
해외인증	화	09:00-18:00	인증전문가
세무 및 회계	수	09:00-18:00	공인회계사
환율/외환	목	09:00-18:00	외환전문가
중국 수출입 제도	수	09:00-18:00	중국무역 전문가
중국인증	금	09:00-18:00	중국인증 전문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3

TradeSOS 해외마케팅 자문

| 업체방문을 통한 맞춤형 해외마케팅컨설팅 지원

품목 및 지역별 무역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해외마케팅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개요

- 종합상사 및 대기업 · 중견기업 출신의 무역 분야 20년, 해외영업분야 10년 이상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해외마케팅 전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무료로 자문 제공
- 규모 및 활동지역
 - 총 34명, 무역협회 각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자문서비스 제공

지원 분야

-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거래선 발굴 및 유지관리 등 해외시장진출 및 지속적인 거래선 유지를 위한 종합 컨설팅 및 멘토링
- 해외시장 진출관련 무역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통합 안내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무역실무 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해외마케팅 자문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4

TradeSOS 통번역 지원 서비스

| 18개 언어 통번역 지원

외국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출초기업을 위해 무역서신, 계약서, 매뉴얼 등 수출 관련 문서의 번역과 바이어 통역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역

- 18개 언어에 대한 통번역을 업체당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
 - 100만원까지 무료, 100만원 초과시 30% 이용업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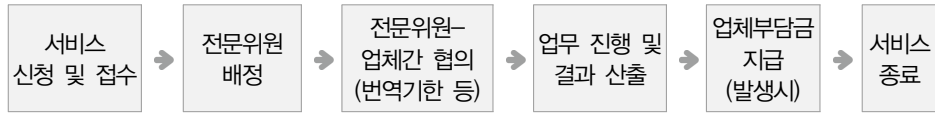
지원 대상

- 연간 수출실적 200만 달러 미만(직전년도)의 수출중소기업
 - 수출실적 2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 이용가능

지원 분야

- 수출관련 무역거래와 관련된 업무로 발생하는 문서의 번역 및 통역
 - 통역 : 내방 바이어 상담(국내 상담에 한함)
 - 번역 : 무역서신 및 통신문, 수출계약서,수출을 위한 제품 카탈로그
- 대상언어(18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란어, 인니말레이어

처리 절차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통번역 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만 가능)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최대 50%, 장치비 최대 50% 지원

홍콩보석전, 라스베가스 보안기기전 등 10개 해외전시회에 대한 한국관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시장 수출증진과 시장 다변화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부스이미지 고급화를 통한 한국관 브랜드이미지 제고

지원 규모

- 10개 해외전시회, 270개 업체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 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회명	시기	모집업체	공동수행기관	비고
1	홍콩춘계보석전	3.5~3.9	25	중기중	
2	중국광동미용전	3.9~3.11	40	중기중	
3	라스베가스보안기기전	4.14~4.16	30	코트라	
4	태국국제식품박람회	5.20~5.24	50	무역협회	
5	북경한류명품대전	7.2~7.4	50	중기중	
6	말레이시아 이미용전	7.6~7.9	15	중기중	
7	상해모바일엑스포	7.15~7.17	10	중기중	
8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조선기자재전	8.11~8.13	15	경상남도	
9	동경국제선물용품전	9.4~9.6	16	중기중	
10	홍콩메가쇼	10.20~10.30	19	중기중	

* 총 10개 전시회 270여개사 지원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의 50% 이내로 전시회당 업체평균지원금액 3백만원 예정 (홍보 및 관리비 제외)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직접경비의 최대 50% 지급(전시회별 지원을 다름)
 - 부스 임차료(최대 50%) 및 장치비(최대 50%) 지원
 -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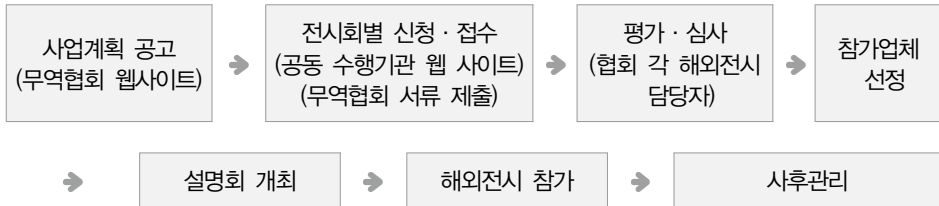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제출(우편)
 - * 공동 수행기관 웹 사이트
 - 중소기업청 공동 수행 전시회 : www.sme-expo.go.kr,
 - 지식경제부 공동 수행 전시회 : www.gep.or.kr

제출 서류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특허관련증명서, 해외수출규격인증서, 포상 실적 증명서, 해외 및 국내전시회 참가 증명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해외마케팅지원본부 마케팅협력실

- 한국 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2-6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 글로벌 바이어 셀러 매칭

전세계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1:1 종합무역상담회 개최

지원 규모

- 13개 무역상담회, 650개 바이어 초청 지원

* 개최 상담회 및 초청 바이어수 변동 가능

	상담회명	시기	초청 바이어	비고
1	SIPREMIUM 2015(한국유통소비재 마케팅대전) 수출 상담회	3.25~3.26	50개사	
2	BIO Expoo Korea 수출상담회	4.8~4.9	40개사	
3	2015년 동경 한국우수상품전시상담회	4.15~4.16	100개사	
4	C-Festival(한류 상품&서비스 마케팅대전) 수출상담회	4.30~5.1	40개사	
5	Premium INDIA/ASEAN - 수출상담회	5.11~5.13	30개사	
6	World IT Show 2015 수출상담회	5.27~5.28	50개사	
7	인도네시아 한국우수상품전시상담회	6월	50개사	
8	글로벌 콘텐츠/의료서비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7.15~7.19	40개사	
9	Marine Week 2015 수출상담회	10.20~10.23	미정	
10	2015 베트남 호치민 한국우수상품전	10.30~11.1	50개사	
11	Beauty&Cosmetic Korea 2015 수출상담회	10월	50개사	
12	인도 한국우수상품전시상담회	11월	50개사	
13	Korea Grand Sourcing Fair 2015 수출상담회	12.1~12.4	100개사	

지원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해당 권역 진출희망 국내 기업

지원 내용

- 글로벌 빅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기업들과의 상담 주선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세미나 및 포럼 등의 부대행사 동시 진행
- ※ KITA 글로벌 빅바이어 클럽 활용, 상시 거래지원 등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제출 서류

상담회 신청서, 자사제품 영문 카탈로그/제품정보 등

- ※ 무역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해당 권역별 담당부서
 - 중동/아프리카 : 마케팅협력실
 - 아세안/호주 : 아주실
 - 미주/남미 : 미주실
 - 중화권 : 중국실
 - 유럽/러시아 : 유라시아실

12-7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전략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지원 규모

	상담회명	시기	파견 규모	비고
1	한/중동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3.2~3.10	20개사	
2	SVC Start-Up CEO 해외전시회참관단	6.16~6.18	10개사	
3	중동아 서비스산업 사절단 (한-이랍카리반 사절단)	10월	미정	

지원 내용

- 개별기업 항공임 및 체제비(숙박비 등)를 제외한 통역비, 파견국 내 차량임차비, 각종 행사비 등 공통경비 전액 지원

지원 대상 대상국가 진출 관심기업

주요 행사

- 1:1 비즈니스 상담회
- 현지 투자환경 세미나
- 산업시찰 및 주요기업/기관 방문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제출 서류 신청서, 자사제품 카탈로그/제품정보(수출업체)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2-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 바이어-셀러 매칭 및 미니사이트 제작 지원

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 tradeKorea.com을 기반으로, 바이어 검색부터 거래제약서 작성/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바이어DB 타겟 마케팅을 비롯하여, 관심바이어 발굴, 빅바이어와의 상시 거래알선, 미니사이트 제작 등 해외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거래알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tradeKorea.com 국내 기업 회원이면 누구나

* tradeKorea 기업회원 : 기업의 영문정보(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취급품목 등)를 입력한 회원 등급

지원 내용

- 무역협회 바이어DB 활용 Self-타겟마케팅
- 무역협회 해외지부/마케팅오피스 활용 관심바이어 발굴 서비스
- 글로벌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프로그램
-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미니사이트 제작 지원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제공 서비스 등
- 세부사업 내역

서비스명	세부 내용
바이어DB 타겟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이 직접 무역협회 바이어DB에서 바이어 검색 • 관심바이어 대상 C/L(거래제약서) 작성 및 발송(C/L 자동제작 지원) ※ 매년 1개사당 200 Credit(1Credit당 1건의 바이어) 지급 및 tradeKorea 활동에 따라 지속 부여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해외지부(미국,중국,일본 등) 및 마케팅오피스(러시아,인니 등) 소재 지역 대상, 신청기업 대신 해외에서 직접 제품홍보를 통해 발굴된 관심 바이어 정보 제공 ※ 1회 신청 시, 1개 지역 서비스를 원칙(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

글로벌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빅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상시 거래알선 지원
미니사이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제품을 홍보하고 인콰이어리 내도가 가능한 영문 홈페이지인 미니 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Korea로 보낸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피 게재 (매일 업데이트) 및 관심 바이어와의 거래알선 지원

신청·접수

상시 온라인 접수

- tradeKorea 홈페이지(kr.trade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e-거래알선센터 : 02-6000-5219
- tradeKorea 서비스센터 : 02-6000-4416
- tradeKorea 홈페이지 : kr.tradekorea.com

12-9

Kmall24를 통한 B2C해외직판 지원사업

| 한국 강소제품 해외판매 전문 B2C Mall, Kmall2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를 기반으로 B2C 해외직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이며, 영/중/일 Kmall24, 모바일, 아마존, 티몰, 라쿠텐 등을 통한 해외 판매지원과 B2B 매칭서비스 지원을 통해 B2C거래를 통한 B2B대량거래 성사를 지원합니다. Kmall24를 통해 최근 전세계 트렌드인 Cross-Border e-commerce시장을 선점해보세요.

지원 규모

- 1000개사 · 10,000개 상품 입점 지원

지원 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이어야 하며, 해외판매와 배송이 가능한 B2C상품 판매 적합업체일 것

지원이 안되는 기업

- B2C해외판매 부적합 상품(예. 중장비, 의약품 및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류 등)

지원 내용

- 상품DB화 지원
 - 업체당 상품10개 번역, 촬영 서비스 지원
 - * 당해연도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불가



궁금해요! 중기맨

- 아마존, 티몰 등 해외오픈마켓에 입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아마존, 티몰에 입점 대상상품은 Kmall24에 기 입점한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오픈마켓 입점을 위해서는 Kmall24에 먼저 상품등록이 완료된 후 담당 MD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 B2C 해외판매는 처음입니다.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 한국무역협회는 B2C해외판매 인식전환 및 수준별 전국순회 교육을 통해 초보 판매자분들도 무리없이 입점·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Kmall24.co.kr이나 KITA.net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12-10 K+(K plus) 인증 제도

| 한국 대표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 인증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을 발굴하여, 무역협회가 K+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뿐만 아니라 코리안 프리미엄 정착에 기여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사(예정)

- '14년 지원현황 : 100개사, 170여개 제품

지원 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업 및 유통업**
 - 독자 브랜드와 디자인을 보유한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 제조업체 혹은 유통업체
 - * 유통사의 경우 공급사와의 독점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한함
- **우대사항**
 - 신청 상품의 가격경쟁력, 시장성, 기능성 등 제품 경쟁력을 갖춘 제품
 - 한국산 원산지(부품, 소재 등) 비중이 높은 제품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이거나 tradeKorea.com 또는 Kmall24.com 상품 등록업체
 - 해외마케팅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업체
 - 해외 판매용 제품으로 생산되어, 제품 설명서/영문 브로셔 등을 보유한 업체
 - 자체 브랜드, 특허, 인증 등을 보유한 업체

지원 내용

- **K+ 인증마크 제공 및 온/오프라인 활용 지원**
 - (온라인) B2B01마켓플레이스, 자체 쇼핑몰 등에 게재된 K+ 인증제품 페이지 등
 - (오프라인) K+ 인증제품에 부착 또는 포장하는 재료, 홍보 브로셔 등
 - * K+ 인증이 부여된 제품에만 마크 사용 가능. 회사 전체소개서 등에는 사용 불가

- tradeKorea.com 활용 온라인 B2B 마케팅
 - tradeKorea 미니사이트 제작 지원
 - K+ 인증제품 온라인 전시관 운영을 통한 바이어 인콰이어리 응대 지원
 - tradeKorea 공식 SNS에 제품 홍보
 - tradeKorea 공식 뉴스레터/웹진에 홍보
- Kmall24.com 활용 온라인 B2C 마케팅
 - 상품DB 번역 : 상품 상세설명 영·중·일어로 번역(기업당 10개 제품)
 - 상품 촬영 : 전문 포토그래퍼의 제품 상세사진 촬영(1개 제품당 5컷, 10개 제품)
 - 해외오픈마켓(아마존, 티몰 글로벌) 우선 입점
- K+ 인증제품 온/오프라인 홍보
 - K+ 인증제품 전용 e-Book/리플렛 제작 및 홍보
 - 구글 등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 무역협회 사업 지원
 - ABTC 카드 발급비 환급
 - 무역아카데미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료 10% 환급
 - 맞춤형 해외시장 리포트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해외전시회/사절단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1:1 해외마케팅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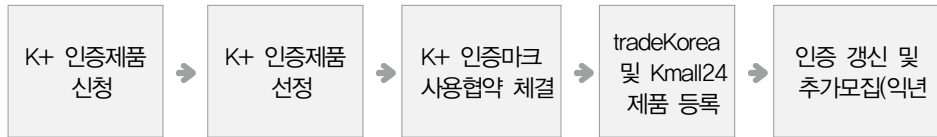
신청·접수

- 일시 : 2015년 7월~8월
- 방법 : KITA.net 공지사항 참조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사진 및 카탈로그, 수출실적 증빙자료, 한국산 원산지 비중 소요요소 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B2C지원팀 : 02-6000-5155
- KITA.net 혹은 tradeKorea.com의 영문 안내페이지 참조

12-11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중소기업 해외지사 설치 지원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해외지점설치인증추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0만불 이상인 업체, 5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외사무소설치인증추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30만불 이상인 업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 해외지사 또는 해외사무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추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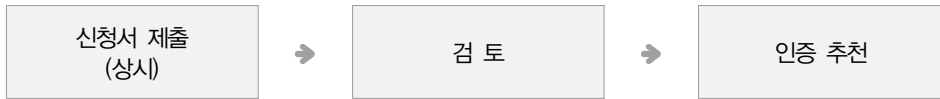
-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및 각 국내지부

제출 서류

-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란에서 다운로드
-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향후 1년)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사업배경 : 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수출계획 및 전망 등 수지개선 효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
- 판매사업계획 등

처리 절차



한국무역협회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궁금해요! 중기맨

- 신청에서 인증추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인증 추천 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12-12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ABTC) 발급

| 신속한 출입국 수속 지원

APEC 회원국 기업인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60~90일간 체류를 보장하는 출입국카드 발급을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
 - 무역업체 :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최소 6개월 이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 * 5명 미만 사업장은 무역업체만 신청되며 수출 또는 수입실적으로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2인 이하까지 신청 가능
 -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2년 이내 4회 이상)이 없는 개인

지원 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 ABTC 19개 가입국 |

-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페루, 칠레, 멕시코, 러시아(신규)
-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을 통한 신속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으로 입국 시 별도 비자가 필요함

| 카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신청 · 접수

-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업체 공통서류(각 1부)
 - 추천의뢰서(인감날인 필)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인감날인 필)
 - 소지자 명단(규정 양식-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한 달전, 인감날인, 매월/반기 체크 필)
-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세사실증명서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 해당 거래 은행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시공, 기성)실적증명서	해외건설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 개인서류(각 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하얀 배경의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1매 부착
(저화질, 훼손 또는 프린트 출력 접수불가), 굵은 펜을 이용한 자
필서명(반드시 여권서명과 동일)
- 여권사본 : 잔여 유효기간 최하 3년 이상(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한연장 확인란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필서명필)
- 서약서(규정양식) :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필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궁금해요! 중기맨

-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다만 각 국가별 승인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카드

12-13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외국인력 고용 촉진 지원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무역업체에 사증(VISA) 발급을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외국인 사증발급 추천 신청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함)는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무역업체이어야 함
 - 신청업체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원 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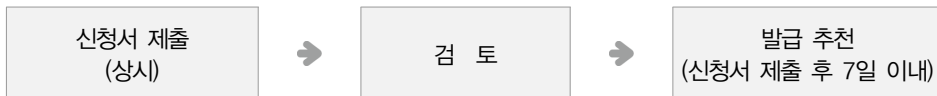
-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및 각 국내지역본부
 - 해당업체 방문 접수(우편,이메일을 통한 일체 접수,발급 불가)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서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로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신청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
- 회사소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궁금해요! 중기맨

- 신청에서 발급추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1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발급추천 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12-14 무역기금 융자

| 수출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700억원

지원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시 감점 처리)
 -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시중은행(9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기금사무국) 및 12개 국내지역본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유의 사항

-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업체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융자 조건

- 금리 : 연 3.5%(고정)

- 기간 : 3년(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 용자한도 : 최고 2억원(전년도 수출실적 \times 1/3)
 -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 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접수

-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2015년 3월부터 매월 초 신청(총 7~8회)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서류

- 기본서류
 - 무역기금 융자신청서
 - 무역기금 수출마케팅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자율양식)(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은행이 발급한 2014년도 및 2013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제출
 - * 단, 수출실적이 융자신청서의 14번 직수출(A)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수출실적법인 업체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의 15번~17번까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제출처 : 해당 국내지역본부(서울은 무역기금사무국)
 - 제출방법 : 우송 또는 직접제출(우송의 경우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에 문의
-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 : <http://fund.kita.net>

12-15

특허청 공동 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

|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지원

외국에 특허 출원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PCT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중간심사·보정료 및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1,400만원
 - PCT출원의 경우 국제단계 300만원, 지정국단계 700만원 이내
 - 개별국 출원의 경우 700만원 이내
 - 상표 출원 250만원 이내

선정 기준(발명진흥회 주관)

- 등록가능성 평가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신규성, 기술성 등)
- 기술성 평가(70%) : 기술의 경쟁력, 기술의 파급성·독창성
- 활용성 평가(30%) : 기술의 실용성, 상품의 시장성, 기술의 확산성 등

지원 대상

- 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중소기업 회원사
 - 세부 기준은 2015년도 사업 공고 확인(3월 예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출원비 지원전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내용(국가) 다른경우는 인정)
-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2년 이내 4회 이상)이 없는 개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접수(www.kita.net 공지사항 참조)
- 온라인 접수 후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제출
 - 접수처(직접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무역협회 해외특허권 확보지원사업 담당자 앞
 - *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신청 서류

신청기술이 2건 이상일 경우 서류를 각기 작성하여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범위확인결과서(소기업, 중기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범위내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화 활용계획서(특허, 디자인, 상표) 1부
 - 해외출원(예정) 현황 (특허, 디자인, 상표) 1부
 - 해외출원(번호통지)서 1부
 - 국내(한글)출원서 또는 양식 1부
- 우대사항 제출서류
 - 당해 연도 한국무역협회 회비완납 영수증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해당시)
 - 출원사실 및 등록 증명원 1식(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제출)

처리 절차

지원규모·대상 등 지원 세부내역은 2015년도 사업시행 공고 시 일부 변동가능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02-3459-2860

12-16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 서비스 무역 활성화 지원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지원 내용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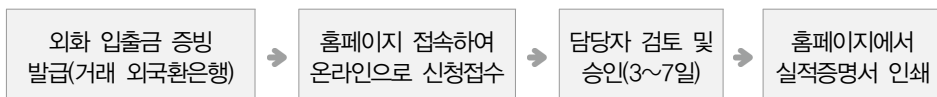
신청·접수

-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확인 대상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 동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등

처리 절차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참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궁금해요! 증기맨

-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3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1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 568

13-2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570

13-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 573

13-4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 576

13-1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기업-1차 협력사 또는 1차-2·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가절감형 과제(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제품 제작 등)를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0개사(전체 예산 21억원)

* '14년 지원현황 : 3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약 4,68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력사)간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1차 협력사)과 중소기업(2·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제품기획에서 시작품(pilot) 제작까지 원가절감 효과가 큰 분야(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작품 제작 등)의 개발비
- 지원한도 : 과제 수행 최대 5천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 지출항목 : 재료비, 테스트장비, 시제품제작비용 등
 - 기업부담금의 50% 이상은 대기업(1차 협력사)가 부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1차-2·3차협력사 전용 과제 신설(10개)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신청양식 이메일·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공고, 온라인 접수

| 심사·평가내용 |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추진의지, 재무구조 건전성, 기대효과 등 현장평가(20%) 및 대면평가(80%)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주관기업 경영현황표,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등

- * 신청양식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사업공고 시 첨부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4477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 : 02-368-8752/8791(www.win-win.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3-2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대·중소기업간 구매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기업(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협력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 800개사(전체 예산 2억원)
 - * '14년 지원현황 : 886개 중소기업, 1,671건 구매상담 지원(구매상담회 총 4회 개최)

지원 대상

국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과 납품(입점) 등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된 기업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지원 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중소기업이 대기업 구매상담 품목을 매치넷(www.matchnet.or.kr)에 사전 등록하여 참가 신청 후, 대기업이 상담대상 중소기업을 선정
- 공구매제도 및 기술세미나
 -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공구매제도 소개 및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기술세미나

● 개최일정(예정)

구 분	1회	2회	3회	4회
행 사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일 정	4월	6월	9월	11월

* 개최 장소는 미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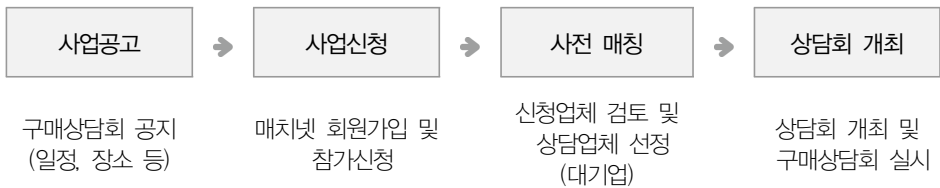
신청·접수

- 매치넷 홈페이지(www.matchnet.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구매상담회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매치넷에 회사 일반현황, 보유설비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해당 차수에 대한 구매상담회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4477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 : 02-368-8793
- 매치넷 홈페이지(www.matchnet.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구매상담회에 중소기업 참가기준(신규법인, 개인사업자 등), 비용 등이 있나요?
 - ☞ 구매상담회는 대기업과 납품(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 매치넷(www.matchnet.or.kr)이란?
 - ☞ 매치넷은 대중소기업간 구매상담을 위해 사전 정보 교환을 나누기 위해 구축된 홈페이지입니다.

13-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 대기업과 1·2·3차 협력기업간의 교류채널

수탁기업협의회는 대기업과 1·2·3차 협력기업간의 교류채널로,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기술·시장·경영정보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65개 협의회(전체 예산 6.4억원)

-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 60개, 3억원
- 협력과제 : 5개, 2억원
- 협력과제는 2·3차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한해 지원

* '14년 지원현황 : 85개 협의회(경영노하우전수교육 및 교류활동:80개, 협력과제 5개)

지원 대상 회원사를 5개 이상으로 구성하여 재단에 등록된 수탁기업협의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수탁기업협의회
- 상호출자제한그룹에 속한 계열사 기업 등을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로 구성한 경우

지원 내용

-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및 협력과제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한도
교류활동	· (경영노하우 전수교육) 회원사 대표, 실무진 등 계층별 교육 등 경영노하우를 협력사로 전수하는 교육지원 · (교류활동) 협의회 회원사간 실시되는 기술·시장·경영정보 교류활동 지원	협의회당 5백만원 (총소요비용의 70%)
협력과제 수행	· 회원사 간 교류활동을 통해 발굴한 협력과제 (시제품개발, 공정개선, 국산화 등) 비용 * 2·3차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만 신청 가능	과제당 35백만원 (총소요비용의 70%)

●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 운영

분야	지원 내용	수강료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	· (대상)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 및 실무진 · (내용) 동반성장이론, 상생법, 하도급법 등 법률, 동반성장 지원 정책 활용방법 등 · (시간) 전문가과정 2일, 입문과정 1일	무료

신청·접수 연중수시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통한 모집공고
- 신청서 온라인 접수(partners@win-win.or.kr)

| 심사·평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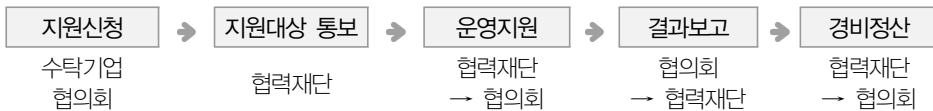
- (교류활동) 회원사 참여 비율, 2차 협력사 포함 구성여부, 교류활동 주요 내용 등
- (협력과제) 협력과제 수행 목표, 추진적합성, 시장성, 과제실용성, 수행업체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역할) 등

제출 서류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신고서,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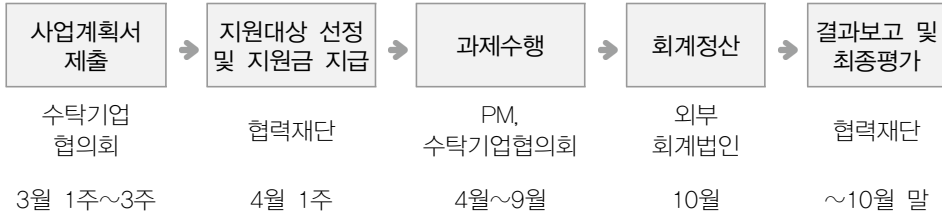
- 교류활동 지원 사업 신청 기업은 회원사 명단, 사업자등록번호, 교류활동 계획 등에 관한 정보 제출
- 협력과제 수행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 중복지원 검토서 등 서류 제출

처리 절차

-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및 교류활동 지원(수시)



● 협력과제 수행



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4477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 : 02-368-8795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2015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수탁기업협의회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의회 회원사는 5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수탁기업협의회 등록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탁기업협회를 결성하고, 활동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협의회 회칙, 회원사 선정기준, 교류활동 계획 등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탁기업협회가 동반성장의 교류채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어설명

- 수탁기업협의회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체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기업별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는 위탁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3-4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 법률자문, 분쟁조정 및 공정화 교육 지원

수탁·위탁 및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법률자문 200개사 내외, 공정화 교육 25개사 내외(예산 4.9억원)

* '14년 지원현황 : (분쟁조정 및 법률자문) 분쟁조정 96건 접수, 법률자문 89개사 지원
(공정화 교육) 22개사 지원

지원 대상

- (분쟁조정, 법률지원)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정화 교육)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준수해야 하는 공정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법률적 구제방안 안내 및 기업 대상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지원

- (분쟁조정)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분쟁발생 시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분쟁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법률지원) 수·위탁 및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법률적 구제방안 안내
 -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여부 검토,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등
 - 전문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지원금액 : 신청기업당 100만원 한도 이내
- (공정화교육) 대기업-협력사, 지역별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화 교육 지원(강사, 임차료, 교육책자 등)

신청·접수 '15. 1월 ~ '15. 12월, 연중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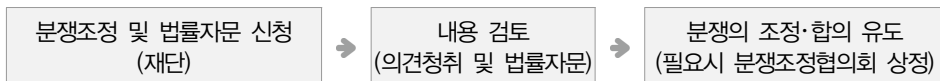
- 상담 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이메일 및 팩스, 우편 접수)
- 이메일 및 팩스, 우편 접수(상담 후 접수)
- 이메일 : center@win-win.or.kr, 팩스 : 02-368-8479
- 우 편 : (152-75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지원센터

신청 서류

- (분쟁조정, 법률지원) 법률자문 신청서 또는 수·위탁 사전 분쟁조정 신청서·사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예: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 (공정화 교육) 교육 신청서 1부.

처리 절차

- (분쟁조정, 법률지원) 전화 등 상담 후 신청을 통해 지원



- (공정화 교육) 신청서에 의한 교육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895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지원센터 : 1670-0808(center@win-win.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공정한 수·위탁거래를 위한 Tip이 있나요?
 - ☞ 통상적인 법원판례에서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례상 수탁·위탁기업 간 계약서 이외에 작성한 각서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 또한, 기존 계약과 변경(일정, 제작사양등)이 있을시 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보다 계약서를 변경 작성해두는 것이 사전 분쟁 방지에 유리
 -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품개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의 경우 회의록을 남겨 향후 분쟁에 대한 예방 필요



용어설명

- 수탁·위탁거래란?
 -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14

대한상공회의소

14-1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 580

14-2 중소기업경영자문단 / 584

14-3 원스탑경영상담센터 / 586

14-4 제조물책임보험(PL) 중소기업 지원 / 588

14-1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 생산제품의 불량감소, 품질향상 등을 통한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이 무결점, 무결함의 완전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 혁신시스템 구축 지도, 품질혁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싱글PPM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600개사(전체 예산 18억원)

* 지원실적 : '14년 품질혁신지도현황 602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참조)
- ②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2]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뿌리산업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뿌리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
-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품질혁신지도 (전문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요인 해소를 통한 품질향상 지도 • 작업표준화 및 작업환경개선 지도 • 싱글PPM, KS, ISO9001, 대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도 등 	업체당 20일 이내
품질혁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혁신 마인드 함양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교육 •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품질혁신 교육 등 	전액 정부지원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싱글PPM 품질인증획득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 	

신청·접수

‘15. 1. 10 ~ 11. 30(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수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 우편 또는 팩스
 - * (100-74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02-6050-3851~6, Fax 02-6050-3859
- 품질지도 예비진단 및 품질인증 현지심사 시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심사·평가내용 |

-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예비진단 시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과제 적합성 유무 확인
- 품질인증제 운영은 싱글PPM 품질달성 여부 등 25개 항목 및 불량률 현황 등

신청 서류

- 품질혁신지도·교육 : 신청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싱글PPM 품질인증 : 신청서(불량률 현황 자료 포함), 추천서(모기업이 있을 경우)



궁금해요! 중기맨

- 품질혁신지도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어느 시점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지도신청 후 예비진단 결과에 따라, 지도기업으로 선정협약체결 후 입금
- ☞ 품질인증제 운영의 심사비 납부는 현지심사 2일전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



용어설명

- 싱글PPM(Single Parts Per Million)이란 제품 백만개 중 불량품이 10개 미만의 무결점, 무결함의 완벽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4-2 중소기업경영자문단

|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출신 전문경영인이 현장밀착형 경영자문 제공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법률·회계,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 자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연간 약 400개사 대상, 자문 2,000회 실시

* '14년 자문현황 : 412개사 대상 2,005회 실시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상공회의소 비회원사 중 1년간 자문 지원을 받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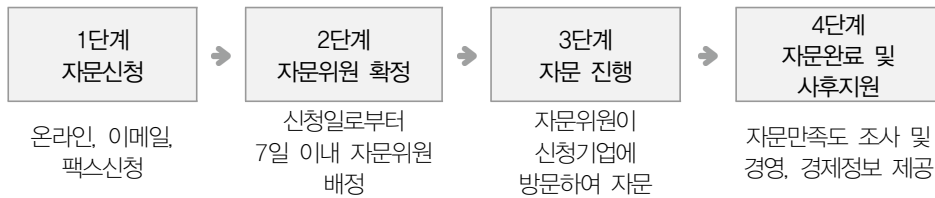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세부사업 내역

자문 서비스	내 용	자문분야
원포인트 경영자문	특정 분야의 경영애로 해소가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 분야에 대한 집중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전략 • 마케팅/유통 • 해외진출 • 인사/노무 • 생산/품질관리 • 재무/자금 • 기술개발 • IT • 특허/법률 • 세무/회계
종합경영자문	성장 도약을 위한 종합 점검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해법제시	
경영멘토링	장기간 밀착 자문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전담 위원이 맞춤형 자문 제공	

신청·접수 '15. 1. 1 ~ 12. 31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경영자문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경영자문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무국으로 이메일, 팩스 신청
- 홈페이지 : <http://consulting.korcham.net>
- 이메일 : consulting@korcham.net
- ☎ 02-6050-3151~2, Fax 02-6050-3157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사무국 : 02-6050-3151~2

**궁금해요! 증기맨**

-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1년간 12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는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 기업부담액은 전혀 없음.
경영자문단은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하는데 가치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14-3 원스탑경영상담센터

|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즉시상담 제공

법률/법무, 무역/관세, 인사/노무, 특허, 세무/회계, 창업/경영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는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연간 약 2,500건 이상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 '14년 원스탑경영상담 현황 2,952 건 (12/18 현재)

지원 대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세부사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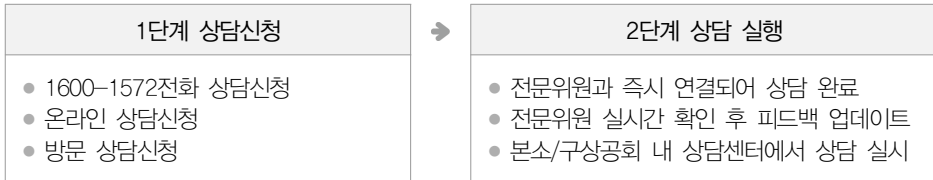
경영상담 서비스	내 용	상담분야
전화 상담 (1600-1572)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연결 및 상담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법무 • 무역/관세 • 인사/노무 • 특허 • 세무/회계 • 창업/경영
온라인 상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원스탑경영상담 게시판에 상담 신청이 가능함 (http://www.korcham.net/Consult/Onestop/DON01101L.asp)	
방문 상담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 내 구상공회에서 상담의뢰자가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상담이 가능함	

신청 · 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원스탑경영상담센터 1600-1572를 통해 즉시 상담 가능함 (업무시간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기업지원(원스탑경영상담) 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www.korcham.net>
- ☎ 02-6050-3458, Fax 02-6050-3459

처리 절차



문의처

- 회원사업본부 기업지원팀 : 02-6050-3458



궁금해요! 증기맨

-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로 상담이 가능함.
 단, 개인적인 애로사항인 경우 상담이 불가능함.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 기업부담액은 전혀 없음.
 각 분야 전문위원들은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 해주는 데 가치를 두고 있음.

14-4

제조물책임보험(PL) 중소기업 지원

| 보험료 할인혜택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에서 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 보다 보험료가 20%이상 저렴한 중소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 PL보험

- 단체보험 할인적용으로 20~30% 보험료 인하
- 인하된 보험료로 업체에서 손해보험사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효과
- 보험사를 상대로 한 유리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회원사 이익 극대화
- 회원사 대상 PL보험료 추가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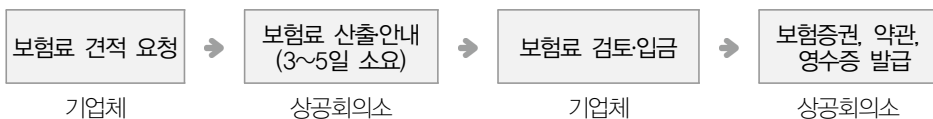
가입 대상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등
- 가입 가능한 서비스 용역
 - 승강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전기유지 보수작업 등

가입 지역

국내 및 해외(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가입 절차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지사), LIG손해보험사, MG손해보험사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63(代) / Fax. 02-6050-3869)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15

대한상사중재원

15-1 신속 · 공정한 분쟁해결제도, 중재 / 591

15-2 중재조항 작성 지원 / 594

15-3 분쟁해결 무료알선 / 596

15-4 분쟁예방을 위한 무료상담 / 598

15-5 분쟁예방을 위한 무료교육 / 600

15-1

신속 · 공정한 분쟁해결제도, 중재

| 법적 구속력을 갖는 중재제도로 신속 · 공정한 분쟁해결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법률 제 176호)에 의거하여 1966. 3. 22.에 설립된 상설 법정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의 정의

-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중재법 제3조)

중재의 장점

- 신속한 법적 해결
 - 단심제로 평균 국내일반절차 6개월, 신속절차 3개월 (소송1심 9개월 이상)
-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강제집행 가능
 - 뉴욕협약으로 150여 외국에서도 강제집행 보장
- 저렴한 중재비용
 - 2억원 이하 소송 대비 최대 55%까지 저렴, 변호사 선임의무 면제
- 전문가를 당사자의견에 따라 중재인으로 선임 가능
 - 전문분야 분쟁해결에 효율적
- 거래기밀유지, 당사자 명예손상방지
 - 중재절차 비공개
- 당사자합의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진행과 충분한 변론기회 제공

중재의 효력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

적합분야

- 건설, 금융, 합작투자, 방송정보통신, 지적재산권, 무역, 해운, 해외투자,
 - 남북교역, 라이선스, 광고, 부동산, M&A, 프랜차이즈, 금융, 인테리어, 등
- ※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간의 분쟁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비용

신청 금액	국내중재비용(천원)				국제중재비용(천원)			
	관리요금	중재인 수당	판정문 수당	합계액	관리요금	중재인수당 (평균)	신청요금	합계액
1천만원	45	0	0	45	45	0	0	45
2천만원	90	0	0	90	90	0	0	90
5천만원	225	0	0	225	225	100	0	325
8천만원	360	0	0	360	360	300	0	660
1억원	450	0	0	450	450	300	0	750
1.4억원	570	100	0	670	540	500	0	1,040
1.8억원	690	100	0	790	690	700	0	1,390
2억원	750	100	0	850	750	700	0	1,450
5억원	3,300	5,400	700	9,400	3,300	10,500	1,000	14,800
8억원	4,800	6,300	700	11,800	4,800	15,450	1,000	21,250
10억원	5,800	6,900	700	13,400	5,800	18,750	1,000	25,550

(※ 관리요금과 신청요금에는 부가가치세 10% 별도부과)

(※ 중재인 수는 국내는 2억원 초과시 3인, 국제는 10억원까지 1인 기준임)

중재 절차도



궁금해요! 중기맨

- 중재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나 별도 서면으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없으면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중재는 소송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또다시 소송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 중재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까?
 ☞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장을 법률이론에 맞게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유리할 뿐입니다.
- 중재조항이 있는 사건이 법원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중재합의가 있음을 주장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방소항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소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 재심이 가능합니까?
 ☞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재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중재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관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강제집행은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은 뉴욕협약에 따라 152개국에서 집행이 보장됩니다. 한국에서는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5-2

중재조항 작성 지원

| 분쟁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신속 공정한 중재제도로 이용할 때 필수 요소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우리 나라 당사자가 불리하지않고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절차를 약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당사자가 제시하는 중재절차 약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 당사자에게 유리한 중재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함.

중재합의 방식

- 사전 합의 : 계약체결시 계약서식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추천)
- 사후 합의 : 분쟁발생 후에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 간의 감정적 태로도 인해 중재합의 곤란 가능(비추천)

중재합의방식

-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중재법 제3조)

중재합의 요소

- 기본 합의요소
 - 중재지 : 중재절차 진행하는 국가(도시) 선택
 - 중재기관 : 중재절차 관리하는 상설중재기관 선택
 - 중재절차(준거법) : 중재절차 규율하는 법령 및 절차규정 선택
- 추가 합의요소
 -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법 - 3인(또는 1인), 당사자 직접선정(선정권자 지정)
 - 중재절차 언어
 - 중재비용의 범위와 부담자
 - 중재판정의 기한과 범위

표준중재조항

- 국내거래 표준중재조항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국제거래 표준중재조항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중재인의 수 [1/3]
 - 중재지 [도시/국가]
 - 중재에 사용될 언어 [언어]
 -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 three]
 -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ity / country]
 -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 다양한 중재조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무료 상담을 이용 바랍니다.

문의처

-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본부 : 02) 551-2000
-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 051) 441-7032
- 홈페이지 : www.kcab.or.kr

15-3

분쟁해결 무료알선

| 당사자간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 무료알선

각종 민·상사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분쟁해결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목적

- 중소기업이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부담없이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속한 해결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분쟁해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명량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분쟁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개입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과 권고를 통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임.

알선 대상

- 중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당사자의 국내외 각종 민·상사분쟁
- 무료로 소송, 중재에 앞서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분쟁금액이 소액이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알선의 유형

- 국내알선 - 양당사자가 국내의 개인,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인 사건
- 대외알선 - 국내의 당사자가 외국의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사건
- 대내알선 - 외국의 당사자가 국내의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사건

신청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 온라인신청서 작성
- 우편, 팩스 접수:
 - 서울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대한상사중재원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전화 : 02-551-2000 / 팩스 : 02-551-2113
 - 부산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76, 906호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초량동, 대한통운빌딩)
전화 : 051-441-7032 / 팩스 : 051-441-7039

알선신청서식

- 온라인 알선신청서 활용, 국제알선은 국문과 영문으로 별도 작성

알선신청서

- ① 제 기 자 : 상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② 피제기자 : 상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③ 거래경위 및 분쟁내용 : 쟁점위주로 요약
- ④ 희망하는 해결방안 : 청구금액(권리), 이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요약
- ⑤ 입증자료 : 거래 및 손실(청구)내역 자료와 증거목록 명시
- ⑥ 제기자 기명 날인(서명)

• 알선절차

- 2개월의 범위 내(국제알선 3개월 범위 내)에서 쟁점 확인 및 합의권유

• 알선 합의 성공률

- 국내알선 약 50%, 대내알선 약 40%, 대외알선 약 15% 수준임

15-4

분쟁예방을 위한 무료상담

|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각종 상거래 분쟁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 상담을 통하여 개인, 자영업자 및 기업,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거래 활성화 및 분쟁 관련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임.

이용 방법

- 전화 상담
 -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본부 : 02-551-2000
 -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 051-441-7036
- 내방상담
 - 서울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대한상사중재원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부산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76, 906호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초량동, 대한통운빌딩)
- 인터넷 상담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 상담신청 아이콘 클릭
- 상담 시간
 - 전화, 내방상담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24시간 이용가능 (통상 근무일 1일 이내 메일 회신)

● 상담 범위

-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및 정부, 공공기관 간의 국내 및 국제 상거래 분쟁관련 계약조항 및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및 분쟁해결제도 안내,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절차와 중재신청을 위한 중재합의요령과 중재절차 안내

● 상담 분야

- 국내 일반상거래,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건축, 조선·해운·물류, 특허, M&A 방송·정보·통신, 부동산개발, 재건축·재개발, 의료관광, 광고,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수리, 대리, 중개, 운송, 신탁, 보험, 외국인고용 등



궁금해요! 중기맨

- 계약서 작성을 위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 국내 및 국제 거래에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가이드를 국내와 국제로 나누어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요령과 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제공하나요?
 -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 다양한 유형의 표준계약서들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물품매매, 대리점, 지적재산권, 고용, 임대차, 용역, 합작투자, 해상운송 조선, 프랜차이즈 등 국제거래분야와 매매 납품, 건설,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거래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15-5

분쟁예방을 위한 무료교육

|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무료교육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각종 상거래 분쟁에 대한 상담을 위해 기업체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분쟁예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 기업체, 단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재제도에 관한 직무교육 희망시 현장 방문하여 중재제도와 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중재제도의 올바른 인식과 활용을 돕기 위한 사업임.

교육 대상

- 사업장별 10명 이상의 대표자 및 임직원 또는 주변의 다수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참석이 가능한 경우 1~2시간 강의를 위한 강사 파견 및 교재제공 무료 실시
- 강의 일시는 요청 사업장과 출장 강사의 사전협의로 조정 가능
- 교육 후 사업장의 활용 계약서 검토 및 발생분쟁에 대한 상담 가능

강사 추천

- 관공서, 경제단체 및 사회교육기관의 계약서 작성 및 분야별 분쟁사례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 추천
- CEO 대상의 교육과정 내지 CEO 소모임 특강 요청 적극 수용

무료교육 신청

- 중재제도 현장방문 교육신청서(공문)상 기재항목
 - 희망기업체명 및 주소
 - 참석 인원 수
 - 강의희망일시 및 시간
 - 강의 장소
 - 활용계약서 자문 및 분쟁상담 희망 여부
 - 담당자 직책, 성명 및 전화번호

- 교육신청서(공문)접수
 - 서울본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대한상사중재원 (삼성1동)
전화 : 02-551-2000 / 팩스 : 02-551-2113
 - 부산지부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76, 906호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초량동, 대한통운빌딩)
전화 : 054-441-7032 / 팩스 : 051-441-7039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 2015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4363

팩 스 : (042)472-7929

중소기업청



www.smba.go.kr